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류 승 훈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I. 序 言

인간의 삶이 영위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이유에 기한 것이든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분쟁을 가능하면 평화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분쟁해결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다. 19세기 이후의 서구사회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법재판제도에 의한 방식과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이라 하겠다.

전자의 경우는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법원칙에 따른 국가 통치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오늘날 분쟁해결을 위한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시비를 가리면서도 오히려 분쟁당사자에게 있어 평화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장래를 향해 공존의 가능성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분쟁해결방식이라 하겠다. 양자의 방식은 그 활용에 있어서 일장일단을 갖고 있는데,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제도에 대한 불만, 즉 재판의 지연, 과다한 소송비용, 재판과정의 기술적 어려움 및 사소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분쟁해결제도 역시 분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에 의해 대체 내지는 보완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경직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탈피하여 보다 원만하게 그리고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인간적 정리를 깨뜨리지 않는 민사분쟁 해결수단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고 하겠다.[1)]

결국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체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을 기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제도 이외의 또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소송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식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것이 향후의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보여 진다.

---

1) 류승훈, 민사소송법, 서울: 신화(2005), 10면.
2) 류승훈, 민사소송법, 10-11면.

오늘날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으로는 상담, 주선, 교섭, 조정, 화해 및 중재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2] 이들의 활용이 보다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 방식의 장 · 단점을 파악하고 실무상 드러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그간의 ADR의 발전과정과 찬반 논쟁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각각의 방법과 그 유용성 및 효용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ADR이 소송제도를 대체하는 독자적인 영역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ADR이 소송제도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보충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代替的 紛爭解決(ADR)이란

1. 意 義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이하 ADR이라 함)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의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라든가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3]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에 기초하여 다툼을 해결하기 때문에 분쟁처리의 원만성, 간이 · 신속성, 비용의 저렴성, 타당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그 실천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4]

대체적 분쟁해결(ADR)은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판결의 형태가 아닌 방식, 이른바 화해 · 조정 ·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혹은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2. ADR의 機能 및 特性

ADR의 기능으로서는, i) 소송당사자들의 법정에서의 부담과 비용의 경감 및 시간의 절약, ii) 법원의 부담과중으로 인한 분쟁해결의 지연방지, iii) 그로 인한 분쟁해결의 질적 저하의 방지, iv)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에 대한 신속한 안정, v) 사법적 시스템에 대한 공적 만족감의 충족, vi) 국민의 분쟁해결제도에

3) 반흥식,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9면.
4)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IV, 서울: 박영사(1993), 417-418면; 이명우, "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7면.

대한 접근의 용이함, vii)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패소에 의한 굴욕감의 완화 등을 들 수 있다.[5]

ADR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으로서는, i)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ii) 분쟁처리과정에서의 법원개입의 가급적 배제, iii) 당사자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 역할의 감소, iv)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 v) 공개적이거나 공공적이 아닌 사적인 절차진행, vi) 새로운 재판규범의 형성과 실체법에 대한 구속으로부터의 회피 등을 들 수 있다.[6]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과 함께 ADR의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i) 비공식화(informalization), ii) 비법화(delegalization), iii) 비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먼저 비공식화는 절차의 경직화, 형해화를 피함과 동시에 절차의 간략화로 인한 국민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차의 적정화 내지 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법화는 분쟁해결의 원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법보다는 조리 또는 상식에 의한 해결, 즉 국민의 감각 내지는 상식(common sense)을 이용하는 해결방식이라 하겠다. 비전문화는 직업법관이 아닌 비법률가인 시민에 의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전문가에 의해 그 분야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고 사회의 일반적 상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면이 부각된다.[7]

III. ADR 制度의 發展과 그의 存在意義에 관한 그간의 論議[8]

1. 各國에서의 ADR의 發展

1) 美國의 境遇

(1) 發展過程

ADR 발전의 역사는 미국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미국만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던 곳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문제제기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다양한 ADR이 분쟁해결을 위해 이용되면서 소위 ADR Movement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먼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손해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규범상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각종의 입법을 통한 법원에 의한 구제가능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제소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소송지연과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

5) Stephen B. Goldberg/ Frank E. 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2. Ed.(1992), p. 8; 류승훈, 민사소송법, 21면.
6) Burnet, "Question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62. Tulane L. Rev., pp. 11.
7) 류승훈, 민사소송법, 21면; 전병서, 민사소송법, 서울: 법문사(2002), 33면.
8) 각국에서의 ADR제도 개관에 대한 내용은, 류승훈, 민사소송법, 22면 이하 내용을 정리하여 인용함.

두 번째로는 소송절차에서의 과도한 형식성 및 번잡성, 변호사 보수의 고액화 및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이 분출케 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공동체구성원에 의한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가 성립케 되었고 이의 이용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ADR Movement는 Danzig, Lon Fuller 및 Sander교수[9] 등에 의해 주도되어 ADR이 사법제도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임이 역설되었다. 또한 1976년에는 미국변호사협회(ABA)가 ADR의 연구를 위한 '경미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후 동 위원회는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위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도적으로는 1964년에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비폭력적이고 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C.R.S.(The U.S. Community Relations Service)가 설립되었다. 또한 1969년에는 L.E.A.A.(Th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의 지원 하에 필라델피아 시립중재법정(The Philadelphia Municipal Court Arbitration Tribunal)이 설립되었고, 이후 각 지역에 L.E.A.A.의 지원을 받는 이웃분쟁해결센터(Community / Neighborhood Justice Center: NJC)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웃분쟁해결센터를 통한 분쟁해결의 속도는 법원에서의 처리기간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당사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법원 이용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분쟁,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웃 간의 분쟁, 친척 간의 분쟁 및 소액분쟁 등을 중심으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지속이 중요시되는 이른바 복잡성을 지닌 분쟁들에 있어서는 소송 외 분쟁해결기관을 통한 효과를 눈여겨봄직하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들어 AD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경제적 변화, 소송의 과도한 형식성에 대한 불만 등에서 기인

이러한 ADR Movement는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법원 내에도 각종의 ADR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982년 당시 연방대법원장이던 Warren Burger가 소송건수의 증가와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 · 중재 등의 ADR제도들이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하고, 결국 ADR이 소송절차에 대한 추가적 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대한 대체적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갈파하기에 이르렀다.[10] 이러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1983년의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개정 시 'ADR의 사용가능성'이 변론전 회합의 논의대상에 포함됨으로써 ADR에 의한 사건해결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나 결과물로서가 아닌 하나의 공인된 분쟁해결방식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11] 이후 1988년에는 '법원연계중재법'(Court-Annexed

9) Sander교수는 1976년 4월에 소집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요인에 관한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the 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에서 분쟁의 성격, 분쟁당사자의 관계, 소송물가액, 소송비용 및 재판속도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다양한 ADR절차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멀티도어 법원'(multi-door courthouse) 개념을 주창하였다.

10) W. Burger, "Isn't There a Better Way?", 68 A.B.A.J.(1982), p. 274.

11)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재판 전 화해방식의 활용에 의해 판결이라는 형식에서 오는 경직성을 유연한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법관의 사건관리의 강화 측면에서 법관의 재량이 강화되었는바,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촉진방안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Arbitration Act)이 제정되었고, 1990년에는 '민사사법개혁법' (Civil Just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이로 인한 영향으로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연방 제1심법원은 각종 형태의 ADR을 채택하고 있다.[12)]

미국에서의 ADR운동의 결과로는 첫째로, 종래의 사법제도 하에서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던 많은 시민들이 정의에 대한 접근이라는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ADR 프로그램이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결코 2류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ADR은 미국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13)]

⑵ 類 型

미국만큼 ADR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 실무적 접근이 행하여지고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ADR은 법원과 연계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법원과의 연계 없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약식배심재판(summary jury trial),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ENE), 사건평가(case valuation: michigan mediation), 간이재판(court minitrial), 판사 주재의 화해기일(judge-hosted settlement conferences), 화해주간(settlement week),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조정중재(Med-Arb), 최종제의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편면적 중재(One-Way Arbitration), 이웃분쟁해결센터(neigh- borhood justice center: NJC)등을 들 수 있다.[14)]

2) 獨逸의 境遇

⑴ 發展過程

독일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늦게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1977년의 'Alternative Konfliktregelungsformen' (대체적 분쟁해결형식)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민사재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79년의 독일법관회의에서 Emst Bender 판사와 Gerd Pfeiffer판사에 의한[15)] 이러한 대안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규

12) Michael Thompson/ 권순일(역), "ADR운동의 전개와 현대적 분석", 법조(1993. 9), 183면.
13) Michal L. Moffit & Robert C. Bordone, The Handbook of Dispute Resolution, Jossy-Bass(2005); Steffen J. W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Group(2001).
14) 특히 이웃분쟁해결센터의 경우는 최근의 추산으로는 이곳에서 연간 수십만 건의 분쟁이 처리되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분쟁도 개인간의 사소한 분쟁에서 공공기관과의 공공성을 지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ADR의 종류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흥식, 재판 외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45-91면; 오세훈, 미국재판의 허와 실, 서울: 박영사(2000), 169-189면.
15) 이들에 의한 문제제기는 독일에서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심이 쏠리게 된 원인을 법원의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명제시로 인하여 '민사재판의 대체'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16]

1980년대에 들어서도 민사재판의 대체성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바,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기대가능성 측면과 종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재판제도의 기능에 대한 재고의 측면이라 하겠다. 아마도 논의의 중점은 후자, 즉 재판제도의 기능제고에 따른 소송절차의 개선노력에로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17]

(2) 類 型

독일에서의 전통적인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로서는 화해제도를 들 수 있는데, 현재에는 변호사화해제도(Anwaltsvergleich)를 들 수 있다. 또한 조정이나 중재는 법원에 부설되어 운영되는 것 외에도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도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민사분쟁뿐만 아니라 상사, 노동, 소비자문제, 의료문제 등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소송 전에 그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8] 전자의 경우로는 종업원의 발명과 관련한 분쟁(종업원의 발명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하), 부정경쟁에서 비롯된 분쟁(부정경쟁방지법 제27a조), 직업교육에서 발생하는 도제분쟁(노동법원법 제111조), 사용자와 경영자협회와의 분쟁(경영조직법 제76조)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중재절차(민사소송법 제1025조 이하), 중개인제도, 상공회의소 · 수공업회의소 및 각종 동업조합에서의 조정제도(수공업법 제91조 제1항) 및 변호사 간 및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조정제도(변호사법 제73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송 전에 그 이용이 강제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영

3) 日本의 境遇

일본의 경우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상담, 고충처리,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16) Vgl. Astrid Stadler, "Aussergerichtliche obligatorische Streitschlichtung – Chance oder Illusion?", NJW 1998(Heft 34), pp. 2479–2487; Blankenburg/Rottleuthner(Hrsg.), Alternative Rechtsformen und Alternativen zum Recht, Jahrbuch fue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Bd. VI, Opladen(1980); Blankenburg/ Gottwald(Hrsg.), Alternativen in der Ziviljustiz, Koeln(1982); Gerhard Wagner, "Obligatorische Streitschlichtung im Zivilprozess: Kosten, Nutzen, Alternativen", JZ 17(1998), pp. 836–846; Hanns Pruetting, "Schlichten statt Richter?", JZ(1985), pp. 261.

17) 양병회, "ADR과 화해제도의 활성화", 민사소송법의 제 문제(김홍규박사 화갑기념논문), 서울; 삼영사(1992), 400면; v. Hoffman 교수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를 소송제도의 의무적 사전절차로서 제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법원의 부담경감을 촉진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에 있어 재판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는 이해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항이고 재판에 앞서 이를 도입한다면 헌법상의 법적 심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재판제도의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로의 대체가 아닌 각각의 제도가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Hanns Pruetting, Schlichten statt Richter?, pp 61.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들은 법원 내에서 혹은 법원 외의 경우는 행정기관 혹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법원 내의 경우로는 재판상 화해와 조정을 들 수 있다. 법원 외의 경우로는 상담, 고충처리, 알선, 중재 및 재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분쟁해결기관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설치되어 있느냐(행정형) 또는 공익법인이나 업계에 의해 설치된 경우이냐(민간형)로 나눌 수 있다. 행정형의 경우로는 노동위원회, 공해등조정위원회, 건설공사분쟁심사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국민생활 · 소비생활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민간형의 경우로는 국제상사중재협회, 일본해운집회소,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 교통사고상담센터, 의료분쟁처리위원회, 세탁배상문제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2. ADR의 存在意義와 關聯한 그간의 論議

ADR에 대해서는 그의 존재의의와 관련하여 그간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의 찬반논의가 있어 왔다.

1) 肯定論의 立場

ADR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아마도 기존의 '법', '법률가' 그리고 '재판제도'에 대한 실망 내지는 불신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시각에서 ADR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로서는 Jethro K. Liberman과 James F. Henry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ADR의 장점으로는 먼저, ADR이 승패판정이라는 재판의 생래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당사자들이 법률가의 법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이 자신들의 문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의 대응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관련 사안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률가를 중립적 주재자로 선택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그가 판단해 주는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19]

Judith Resnik 또한 ADR이 사건 적체와 고액수임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재판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평가 역시 '사건의 간편한 해결방법' 정도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재판보다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제도' 로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

2) 批判論의 立場

ADR의 활용과 관련한 이론적 비판과 관련하여, 그 대표적 비판론자로는 Owen M. Fiss를 들 수 있

19) Jethro K. Li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vement, 53 Chi. L. R.,(1986), pp. 429-431.

20) Judith Resnik, Many Doors? Closing Door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judication, 10 Ohio St. J. on Dispute Resolution(1995), p. 211.

다. Fiss는 소송 외적 방법을 통한 분쟁해결은 마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타협과 같은 것으로, 이는 결국 대량사회의 조건에의 적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1] Fiss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ADR은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 외적 타결을 강요받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로, ADR은 분쟁의 당사자를 개인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회사나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그 조직체의 구성원인 주주나 노조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셋째로, ADR은 소송이 갖고 있는 시정적인 면모를 약화시키고 단지 판결 자체가 그 과정의 종착역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DR이 여전히 분쟁해결의 결과를 집행하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방안일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ADR은 우선 분쟁을 해결하여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소송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이에 구현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적인 면에서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고 한다. 다섯째로, 일상적인 사건은 ADR로 다루고 보다 심각한 분쟁은 소송을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구별할 만한 기준도 존재치 않으며 이러한 구분론 자체가 ADR의 취약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22]

ADR에 대한 비판으로는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간과, 당사자가 조직체일 경우 조직체 구성원의 이익 희생 가능성, 소송이 갖는 시정적인 면모 약화 등이 거론

또한 절차상 드러나는 ADR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ADR이 효과적인 증거발견절차를 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발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ADR이 생생한 증거의 제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ADR이 소송과 같이 상세하게 세부적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호신문 내지 선서 하의 증언, 증거법칙의 적용 등 통상의 소송절차를 결하고 있으므로 진실발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둘째로, ADR절차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법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ADR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대리가 없이도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변호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23] 넷째로, ADR은 공적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는 ADR에 의해 얻은 결과는 당사자가 반드시 증거에 기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개인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유지함으로 인한 공적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21) Owen M. Fiss, "Against Settlement", 93 Yale L.J.(1984), p. 1075.
22) Owen M. Fiss, Against Settlement, pp. 1076-1090.
23) Edward Brunet, "Questioning the Quality of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62 Tulane L. Rev., pp. 31-47.

IV. 우리나라에서의 ADR 制度

ADR은 각각의 나라의 법률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그 모습만큼 종류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ADR을 정형적으로 유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상담 · 알선,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ADR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4]

1. 相談 및 斡旋

상담이란 행정기관, 소비자보호단체 등 각종의 공 · 사 단체가 국민이나 소비자 등으로부터 받은 고충을 관계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가 가진 행정력 내지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민원상담,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해결상담 등을 들 수 있다.[25]

알선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또는 양해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직 · 간접적인 지원노력을 말한다. 이는 합의의 주선 · 고취 · 중재 · 자문 · 감정 · 쟁점의 정리 · 당사자의 감정이나 분위기의 절제 등의 노력을 말하며,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식 중 가장 비법률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제3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자는 어떤 해답에 상응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게 된다. 분쟁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이나 중재와 구별된다.[26]

2. 調 停

조정이란 제3자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서, 당사자가 이 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정이 성립케 되고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 자유가 최종단계에서 인정되는 자주적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조정제도가 갖는 기능으로서는 소송보충적(訴訟補充的) 기능,[27] 간이재판적(簡易裁判的) 기능,[28]

---

24) 강현중, 민사소송법, 서울: 박영사(2004), 50면 이하; 김용진, 민사소송법, 서울: 신영사(2004), 13면 이하 김홍규, 민사소송법, 서울: 삼영사(2003), 20면 이하; 류승훈, 민사소송법, 20면 이하;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서울: 박영사(2008), 15면 이하; 전병서, 민사소송법, 29면 이하;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서울: 법 (2005), 8면 이하; 호문혁, 민사소송법, 서울: 법문사(2005), 5면 이하.

25) 류승훈, 민사소송법, 27면;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8면 이하.

26) 반흥식,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12면; 류승훈, 민사소송법, 27면.

27)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을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간이 ·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해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8) 법규에 입각한 엄격한 절차규제에 의해서가 아닌 조리재판(條理裁判)에 의한 자유로운 간이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것이다.

거래중개적(去來仲介的) 기능,[29] 사건선별적(事件選別的) 기능,[30] 법창조적(法創造的) 기능[31] 및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기능을[32] 들 수 있다.

조정은 사법기구에 의한 조정, 행정기구에 의한 조정 그리고 민간기구에 의한 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기구, 즉 법원에 의한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그리고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을 들 수 있다. 먼저 민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은 민사분쟁에 관하여 조정기관이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여 호양에 따른 합의에 이르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도모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민사조정은 조리에 맞고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해결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조리와 실정에 부합하는지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기관은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도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 시 직권에 의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조정신청 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33]

〈표 1: 민사조정 통계〉

	2007	2008
민사조정 신청건수	접수건수: 6,848건 처리건수: 6,750건 조정성공률: 31.4%	접수건수: 5,800건 처리건수: 5,580건 조정성공률: 35.9%
민사조정 회부사건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건수 3,125건 수소법원 처리건수: 53,004건 조정처리비율: 5.2%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건수: 2,970건 수소법원 처리건수: 47,846건 조정처리비율: 5.2%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결과 중 조정화해 처리비율(소액 사건 제외)	12.8%	9.7%
민사조정처리기간	1월 이내: 2,117건(21.4%) 2월 이내: 3,487건(35.3%) 3월 이내: 1,826건(18.25%)	1월 이내: 1,690건(20.2%) 2월 이내: 3,115건(37.1%) 3월 이내: 1,801건(21.5%)

29)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분쟁해결이라는 의미와 함께 당사자 만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사적 거래에서의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개, 알선 및 원조에 의해 해결함을 말한다.

30) 정말로 재판제도를 거쳐야만 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법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사건은 다른 방식에 의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1) 실정법규의 고정화 내지 현실과의 괴리를 형평의 이념에 의하여 보완하고 수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법을 만들어 감을 말한다.

32) 조정위원이라는 민간인을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민사사법에의 국민참여라는 사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함을 말한다.

33) 2007년도 사법통계(www.scourt.go.kr/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i) 민사조정신청으로 6,848건이 접수되어 6,750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31.4%였다. ii) 조정회부사건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3,125건, 수소법원처리건수는 53,004건이었고, 민사본안사건 중 조정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5.2%였다. 소액사건을 제외한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결과 중 조정 및 화해로 처리되는 비율은 12.8%였다.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은, 1월 이내가 2,117 건으로 21.4%, 2월 이내가 3,487 건으로 35. 3%, 3월 이내가 1,826 건으로 18.5%였다.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의 처리기간이 전체의 75.2%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제1심 합의부가 10.1월, 단독판사가 5.6월, 소액사건이 4.2월이 소요되었다.
2006년도에는 i) 민사조정신청으로 5,800건이 접수되어 5,580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35.9%였다. ii) 조정회부사건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970건, 수소법원처리건수는 47,846건이었고, 민사본안사건 중 조정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5.2%였다. 민사본안 사건 중 조정, 화해처리비율(33,299건/ 342,950건)은 9.7%였다.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은, 1월 이내가

가사조정은 가정에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의 평화와 건전한 친족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사자를 알선하여 공정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가사조정은 1991년 시행된 가사소송법에 의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34]

〈표 2 : 가사조정 통계〉

	2007	2008
가사조정 신청건수	접수건수: 1,861건 처리건수: 1,873건 조정성공률: 73.6%	접수건수: 1,665건 처리건수: 1,555건 조정성공률: 70.6%
가사조정 회부사건	조정담당 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건수: 2,534건 수소법원 처리건수: 8,541건 조정처리비율: 30.2%	조정담당 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건수: 2,024건 수소법원 처리건수: 7,371건 조정처리비율: 23.72%
가사조정처리기간	1월 이내: 2,117건(21.4%) 2월 이내: 3,487건(35.3%) 3월 이내: 1,826건(18.25%)	1월 이내: 426건(11.9%) 2월 이내: 1,070건(29.9%) 3월 이내: 729건(20.4%)

2009년 이후에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는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은 조정제도를 확대 · 강화하기 위해 '법원조정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조직인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2009년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09년 초까지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2009년 말까지 전국 각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조정전담판사 · 조정위원회와 병렬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조정사건은 조정센터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센터는 센터장과 8-10명의 상임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민 신뢰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이상의 '중량급' 법조 경력자를 상임조정위원으로 임명하고 변호사 업무 등 겸직을 금지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특히 상임조정위원 전속 조정부를 편성해 조정부별로 의료 · 건설 · 노동 등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활성화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건이 크게 줄어 집중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행정부 산하 조정위원회[35] 및 민간기구에 의한 조정으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업

1,690 건으로 20.2%, 2월 이내가 3,115 건으로 37.1%, 3월 이내가 1,801 건으로 21.5%였다.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의 처리기간이 전체의 78.8%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제1심 합의부가 10.1월, 단독판사가 5.6월, 소액사건이 4.1월이 소요되었다.

34) 2007년도 사법통계(www.scourt.go.kr/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경우, i) 가사조정신청으로 1,861건이 접수되어 1,873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73.6%였다. ii) 조정회부사건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534건, 수소법원처리건수는 8,541건이었고, 가사본안사건 중 조정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30.2%였다. 가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은, 1월 이내가 903 건으로 20.5%, 2월 이내가 1,176 건으로 26.7%, 3월 이내가 878 건으로 19.9%였다.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의 처리기간이 전체의 67.1%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가사소송사건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7.5월이었다.
2006년의 경우, i) 가사조정신청으로 1,665건이 접수되어 1,555건이 처리되었고, 조정성공률은 70.6%였다. ii) 조정회부사건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024건, 수소법원처리건수는 7,371건이었고, 가사본안사건 중 조정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3.72%였다. 가사소송사건 중 조정, 화해처리비율(10,385건/ 43,841건)은 23.7%였다. 가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은, 1월 이내가 426건으로 11.9%, 2월 이내가 1,070건으로 29.9%, 3월 이내가 729건으로 20.4%였다.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의 처리기간이 전체의 62.2%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가사소송사건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7.1월이었다.

3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환경분쟁조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용역경비업법, 부동산중개업법, 보험업법, 소비자기본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에 근거한 분쟁조정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분쟁조정위원회의 ADR 운용 통계자료이다.

〈표 3 : 전자거래분쟁조정〉[36]

연 도	분쟁상담(건)	분쟁조정처리(건)
2000	308	83
2001	1,310	457
2002	2,987	857
2003	3,362	1,151
2004	7,774	1,032
2005	12,034	1,750
2006	11,054	1,991
2007	11,067	2,668

〈표 4 : 소비자분쟁조정〉[37]

연 도	개최횟수(회)	처리건수(건)
2002	58	632
2003	59	893
2004	55	1,125
2005	56	987
2006	56	1,026
2007	61	1,003

3. 和 解

화해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한 호양(互讓)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즉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합의가 이루어 질 때 다툼을 그만두게 되는 제도이다. 오늘날 소송사건의 폭발적 증가와 분쟁의 다양성으로 인한 소송지연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화해의 이점 또한 경시될 수 없을 것이다. 분쟁발생 시 제1차적 단계부터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all or nothing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표 5: 환경분쟁조정〉[38]

구 분	접수현황(건)			처리현황(건)				자진철회(건)	처리중(이월)(건)
	계	접수	전년이월	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		
합계	–	2,104	–	1,750	908	42	800	264	90
'07	275	196	79	172	126	3	43	13	(90)
'06	276	202	74	165	83	2	80	32	(79)
'05	266	166	100	174	100	4	70	18	(74)
'04	372	195	177	223	101	1	121	49	(100)
'03	550	350	200	292	87	–	205	81	(177)
'02	493	440	53	263	118	2	143	30	(200)
'01	184	154	30	121	68	7	46	10	(53)
'00	100	70	30	60	39	3	18	10	(30)
'99	119	82	37	79	35	1	43	10	(30)
'98이전	249	249		201	151	19	31	11	(37)

36)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 2007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p.10 – 15.
3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www.kca.go.kr/ 소개마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8)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자료: 200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p.1,049.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사건에 따라서는 소송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안, 즉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39]

화해는 실체법상으로는 민법상의 계약의 형태로도 인정되고 있고 소송법상으로는 제소전 화해와 재판상 화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는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화해계약은 실제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른바 합의라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제소특약(不提訴特約) 내지 권리포기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케 되고 상대방은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민법 제732조)이 생김으로써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를 다툴 수 없게 되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소송상 화해는 소송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자주적으로 종료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에 의해 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이상의 다툼은 끝나게 된다.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의 단계에서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화해를 하고 이를 조서화하여 분쟁을 종료케 하는 행위이다. 화해의 성립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는 후일의 동일한 분쟁의 재연을 막기 위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4. 仲 裁

중재란 사적자치의 원칙 하에 사인 간에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배제하고 사인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비소송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사적인 재판이라고도 한다. 사법재판제도가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고 재판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해, 중재제도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시비를 가리면서도 분쟁당사자에게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장래를 향하여 공존의 가능성을 찾는 데 그 중점을 두는 분쟁해결방식이라 하겠다.[40] 중재는 분쟁사건의 부탁사항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상사중재, 해사중재, 노동쟁의중재 등으로

---

39) 류승훈,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제7집), 한국외대 법학연구소(1999), 428면.

40) 오늘날 중재제도는 다음의 점 등에서 소송 등의 다른 분쟁해결제도와 구별되고 있다. 첫째, 당사자 간의 중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리 중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인의 판정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중재인의 판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의해 행하여지며 법률의 준수가 반드시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중재판정이 보다 탄력적인 선과 형평에 의해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중재판정이거나 외국중재판정이거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써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집행력이 생기게 된다. 넷째, 중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므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신청, 재심사 및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중재는 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재판정의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내막이나 영업의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고,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분류되기도 하고, 당사자가 국내에 또는 국외에 영업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가의 여하에 따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별되기도 하며, 상설중재기관의 사전지정 여부에 따라 제도적 중재와 임시적 중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중재에 관한 기본법으로 중재법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가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41]

중재는 민사분쟁 특히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자체를 그 직접대상으로 하는 해결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분쟁도 하나의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어서 일단 위기에 빠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도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그 판정의 기준으로 '법' 이라는 엄격한 기준에만 따르기보다는 '선과 형평'에 따라 당사자가 신뢰하는 동일업계의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주도하는 절차에 의해 비공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하겠다. 중재는 중재판정에 의해 그 절차가 종결되는데,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말한다. 당사자는 이 판정에 구속되며,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대한 철회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표 6: 언론중재 등〉[42]

연 도	조정접수(건)	조정처리(건)
2000	607	387
2001	659	411
2002	511	319
2003	724	492
2004	759	504
2005	883	551
2006	1,087	659
2007	1,043	676

연 도	중재접수(건)	중재처리(건)
2006	7	7
2007	14	14

〈표7 : 상사중재〉[43]

연 도	접 수(건)	처 리(건)
2007	233	207
2008	262	261

향후 중재제도가 더욱 그 활용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중재제도가 갖는 장점[44] 이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재제도의 단점 내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의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중재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조리가 판단주체의 자의 내지는 주관과 믹스됨으로써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중재판정의 경우는 법과 선례에의 구속에 의해서가 아닌 중재인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에 의하는 만큼 중재인의 개인차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법적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중재인의 경우 분쟁사안의 쟁점에

41) 2005. 7. 28. 언론중재법에 의해 중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는 실질적으로는 조정의 의미라 하겠다.
42)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온라인자료실/ 각종통계 및 현황.
43)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 2008년 사업보고서 pp.7-16
44)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그의 장점으로서 내세우는 것이, i) 소송에 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ii) 분쟁해결 상의 당사자 간의 감정적 응어리를 덜 남긴다는 점, iii) 분쟁해결의 사안적합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및 iv) 국가주권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대한 법률적 파악에 미숙하여 중요부분을 빠뜨릴 수도 있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운용상의 제도적 개선방안도 중요하겠으나, 오히려 '좋은 중재인'의 존재가 그 기본 전제라 보여 진다. 이러한 중재인의 존재가 결국 중재제도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중재제도가 상사분쟁 등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상사분야 이외에 건설 · 의료 · 교통 · 환경 · 보험 · 금융 · 증권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ADR의 有用性 및 效用性 確保를 위한 具體的 方案의 提示와 關聯하여

1. ADR의 有用性과 關聯하여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식이 반드시 소송보다 나은, 우월한 제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그 자체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식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갖는 제도라 하겠다. 즉 재판절차에 대한 사전절차로서의 의미가 아님을 의미한다. ADR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장점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쟁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쟁해결비용의 절감 및 재판부담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법규와 같은 외부적 판단기준보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정의관념에 치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는 단지 양측의 자주적인 교섭에 대한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화와 직업화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제도상의 형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절차는 거의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 나라의 법원의 재판권의 범위를 뛰어 넘는 국제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더 유용할 수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의 비밀유지가 가능하고 사안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이 고려된 합목적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통해 현대사회의 국민적 법의식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의 활용을 도모하여 법원의 업무경감은 물론 재판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를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는 경우의 문제점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분쟁을 비권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적 권리의식을 배척하고 의리나 인정에 의한 해결에 집착하게 하는 풍조를 조장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아울러 당사자의 호양(互讓) 및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이 강조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분쟁해결 역할의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국가의 분쟁해결제도 개선의 노력을 태만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결국 소비자인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제도상 이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점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재판만이 시간적,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여 사회적 타당성

이 있는 해결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양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ADR과 소송과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결코 소송제도를 대신하는 대체적 제도로서 극단적으로 파악되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결국 ADR도 나름의 독자적 의미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ADR은 각종의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서 ADR이 소송제도를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용성 문제는 현실에서의 ADR의 활용도를 기초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용과 관련하여 만약 그 효용성이 높다면 이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고, 만약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현실적 문제점을 찾아 내 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ADR의 效用性 確保를 위한 具體的 方案과 關聯하여

재판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에 의할 것인지는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며, 제도는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점에 중심을 두어야

앞서 살펴 본 ADR의 효용성 내지 유용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제 ADR이 과연 분쟁해결을 위해 유용한 제도인가의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유용한 분쟁해결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단계로 이전되었다고 하겠다. 어떠한 제도가 더 우월한 제도이냐는 그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몇몇 사람들의 찬반논쟁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이제는 바야흐로 이러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의 문제에로 그 논의의 비중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개개의 분쟁마다 사건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절차가 효율적인 사건관리에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는 사건에의 ADR 적합성, 효율성 그리고 시간적 및 비용적 측면에서의 경제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요소 외에도 당사자 간의 관계 즉,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의 교섭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소요되는 경비를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 양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양 당사자가 분쟁결과에 대한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ADR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DR의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점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먼저, 어떻게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과 ADR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의 구별 기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떠한 종류의 분쟁이 어떠한 유형의 ADR에 적합할 것인지를 가려내는 문제일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양각색의 분쟁마다 그 구체적인 분쟁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적

특성중의 하나로 거론되어 지는 것으로 경제성, 저렴성, 신속성 그리고 간편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단지 피상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고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과 주변 사정에 의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당사자의 수 · 상호관계 · 경제력, 원고의 사건해결의 긴급성과 필요성, 주장의 성격, 증거의 성격과 입증가능성, 재판의 지연가능성 그리고 정식재판의 예상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45]

둘째로, 소송에 의하지 않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본래 가능한 한 비공식절차를 통해 법률전문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합목적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법률가들에 의한 개입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본연의 장점은 퇴색되고 재판제도에 유사한 분쟁해결방식으로 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의 본질을 합의를 그 본체로 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의 자치권과 임의절차성을 보장해 주려는 데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소송에 유사한 절차진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조리를 적용하여 좀 더 장래 희망적으로 또는 후견적 또는 합목적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46] 이를 위해서는 ADR을 주재하는 자가 앞서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협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배양하는 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법학적 교수방식을 지양하고 실무적 기술이나 협상능력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교육방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소송 외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분쟁의 종국적 해결의 의미를 넘어 합의도출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주체적인 의사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분쟁해결기관이 분쟁의 해결만을 위한 차원에서 분쟁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기나 강박 혹은 과실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도출되는 합의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ADR을 도입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용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이 제도에 의해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본 제도의 존재 의의를 살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강제적으로 이용케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소송의 비용이 증가될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여 상대방을 합법적으로 교섭에 응하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리인인 변호사 등이 보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수행을 하려는 것을 견제할 수도

---

45) Jethro K. Li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ltemative Dispute Resolution Movement, p. 424.

46) 특히 집단 간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원배심제도는 대구시 수성구가 집단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수성구청장의 예규 제 143호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인 제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제3자인 일반 국민 중에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배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민원사안이 중대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을 공개적 · 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이해당사자 간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또는 중재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억지를 꾀할 수 있고 주민 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DR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ADR이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요구될 수 있고 관료에 의한 의례적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분쟁당사자가 희생될 가능성도 많다 하겠다. 또한 광범위한 의무적 제도이용은 사건을 부적당한 절차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과 노력의 도로화(徒勞化)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해결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47] 결국 이 제도를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의 선택에 맡길 것이냐의 문제는, 어느 한 측면의 극단적 강조보다는 양자의 조율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권의 보장과 법관에 의한 본 제도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DR이 당사자에 의한 절차지연 등으로 인하여 오 · 남용되었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해 ADR의 이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일정한 룰에 의하여 운용되는 만큼 본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의 고려사항에 유념하여 ADR을 운용해 나간다면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방식의 활용을 통해 본래 의도하였던 바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7) 미국의 경우, ADR을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선택에 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적으로 ADR에 의하도록 하는 방법,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이에 따라 ADR에 의할 것을 결정하는 방법, ADR에 회부한 후 일정한 이의기간을 부여하는 방법 및 ADR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후 그 결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건유형에 따른 강제적이거나 자동적인 ADR 회부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건이 ADR에 적합한지의 여부의 판단을 판사와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미국 민사재판의 허와 실, 158-159면.

2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함 영 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조사위원

Ⅰ. ADR 분류체계와 행정형 ADR에 대한 이해

1. 행정형 ADR의 의의

행정형 ADR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행정형 ADR은 ADR을 주관하는 기구 또는 그 기구를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사법형 ADR,[1] 행정형 ADR,[2] 민간형 ADR[3] 중의 행정형 ADR을 말한다.[4]

2. 행정형 ADR 분류의 체계에 대한 검토

그런데 이처럼 ADR을 주관으로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분은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하던 기준을 차용하고 입법을 민간으로 대치한 것은 편의에 의한 분류일 뿐 이에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행정형 ADR,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 자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행하는 ADR은 이 분류에 의하면 행정형 ADR이지만 실제 운영되는 원리나 분쟁해결의 내용은 민간 ADR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 행정, 민간으로 구분되는 ADR은 최초로 그 ADR을 구성한 기관 또는 그 ADR을 주관하는 기구가 편재상 어디에 속하느냐는 구분에 불과한 것이지 기존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또는 사법과 행정의 관계에 그대로 대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5] 특히 이 행정형 ADR은 후술하는 행정사건에서

---

1) 민사조정, 가사조정, 재판상 화해, 제소전 화해 등이 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기관 부속의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등이 있다.
3) 대한상사중재원 및 각종 민간상담기구가 있다.
4) 이와 달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각 제도의 성격을 중심으로 협상, 조정, 중재, 화해, 알선, 상담으로 나누기도 한다.
5) 이러한 관점에 선 탓인지 미국의 문헌에서는 민사 분야의 ADR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행정 분야의 ADR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설명(Jacqueline M. Nolan-Hale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2nd Ed.), West Group, 2001, 8면)은 있어도 이들의 성격이 상호 대립되거나 대비된다는 식으로 서술하거나 분류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의 ADR과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 행정형 ADR의 발전배경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특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형 ADR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후술하듯이 다양한 분야에 각종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중 몇 개의 행정위원회는 상당한 사건수를 처리하였음은 물론 새로운 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DR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6] [7]

이처럼 행정형 ADR이 다양하게 설치되고 활발히 활용되는 배경에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관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법원에 의하지 않고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구체적 분쟁상황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 행정정책실현의 수준을 높인다는 점,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빈도 · 당사자 · 제3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행정명령이나 지도에서 빠진 부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또 행정형 ADR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등의 행정상의 제재가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증대되며 이 분쟁해결 시스템은 개별 분쟁의 해결을 넘어 이와 관련이 있는 행정정책의 실현에도 유용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유사한 분쟁 유형의 재발이나 소재를 예상하고 예방적 정책을 세움으로써 법령상의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8]

행정형 ADR이 다양하게 설치되고 활용되는 배경에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관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법원에 의하지 않고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구체적 분쟁상황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존재

4. 우리나라 분쟁해결방식의 단계별 구분 중 행정형 ADR의 위치

1) 우리나라 전체 분쟁해결절차에서 행정형 ADR의 위치

ADR로 구분하는 분류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국가의 운영이나 사회의 형성에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에서의 ADR은 주로 각 제도의 성격을 중심으로 협상, 조정, 중재, 법원의 절차를 활용한 ADR, 복합적 ADR 방법론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Jacqueline M. Nolan-Haley, id at 30-235; 山本和彦/山田 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19面.

6)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행정위원회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7)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언론중재위원회가 한 해 동안 처리하고 있는 언론분쟁 케이스는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1,000여 건에 이른다. 반면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처리된 사건은 지난 3년간('05 ~ '07) 약 268건 정도이다.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법제 하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조기 해결 노력이 우선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위해 수집한 2005 ~ 2007년도 언론분쟁 관련 민사 판례는 268건(항소심 등을 포함한 수치이며, 수집된 형사 판례는 81건이다.)이며, 자료는 법원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법원은 2007년 4월부터는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였으나, 이전 기간의 경우는 61개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만 등록된 상태로 일부 언론관계 판결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자세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참조).

8) 山本和彦/山田 文, 前揭書, 19面.

위의 도표에서 우리 행정형 ADR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행정형 ADR을 별도로 분류는 하나 행정형이라고 하여 완전히 다른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분쟁해결방식의 단계별 구분〉[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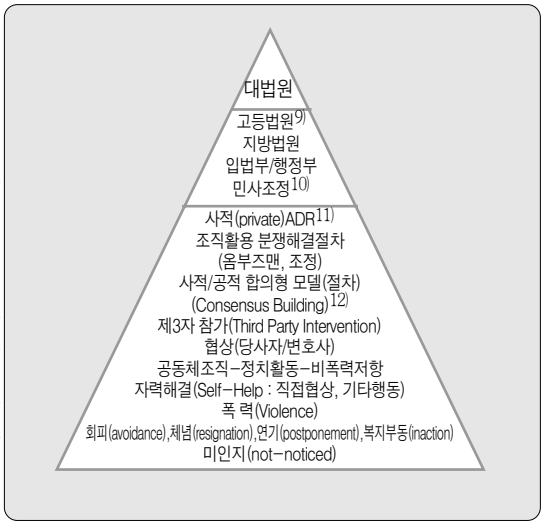

미국의 행정형 ADR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입법과정에서의 합의형성(negotiated rulemak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 도표에 표시하면 공적 합의형성 절차(Consensus Building)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는 관련당사자들이 결과를 더 잘 수용하고 규정내용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며 추후에 저항을 하거나 소제기를 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14]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행정입법과 같은 분야에 공적인 합의형성절차가 잘 발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공적인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적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15]. 다만 그 실효성, 활용도, 이용자의 만족도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사건에서의 ADR과 행정형 ADR의 구별

우리나라에서 행정과 관련된 분쟁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 하나가 행정사건에서의 ADR이고 또 다른 하나가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절차로서의 ADR이다. 후자에 속하는 것이 바로 행정형 ADR이다.

---

9) 미국의 항소심법원은 법률심이나 우리는 고등법원이 사실심이므로 아래 그룹으로 옮겼다.
10) 미국의 조정(Med), 중재(Arb), 조기중립평가(ENE), 약식배심(Summary Jury Trial) 등이 포함.
11) 미국식 분류에 의하면 이에는 조정(Med), 중재(Arb), 조정중재(MedArb) 등이 포함된다.
12) 정책결정에 장래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공동의 사실조사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말함; 김유환, 갈등대응체계의 진단과 개선방안,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집(지속위 자료집 2004-17), 2004, 60-62면.
13)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구조를 미국의 표를 활용하여 재구성해 보았다.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Menkel-Medow/Love/Schneider/Stemlight, Dispute Resolution, Aspen Publishers, 2005, p.17.의 도표 참조.
14) 이를 neg-reg라고 부르거나 regulatory rulemaking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이것은 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0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가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의 Section 2에 좀 더 자세히 규정되었다' Jacqueline M. Nolan-Harley, id at 230-233.
15)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절차(행정청이 일정한 행정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의견제출절차, 청문절차, 공청회 절차 등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외에 고충민원처리, 청원, 진정, 직권취소 절차도 두어 합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섭,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저스티스 제105호, 204-213면.

먼저 행정사건에서의 ADR은 다시 행정절차에서의 ADR,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ADR,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ADR로 구분할 수 있다.[16] 이들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절차의 특수성, 민사법에 대한 행정법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방식으로 다른 분야의 ADR에 대한 논의를 행정쟁송절차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냐[17]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18] 우리나라의 학설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상 조정에는 부정설이 많으나 긍정설이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고, 행정소송상의 화해에 대해서는 행정법관계의 특색을 둘러싸고 부정설과 긍정설이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심판상 조정 및 화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전 단계에 상호 조정을 하는 특색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19]

다음으로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절차로서의 ADR, 즉 행정형 ADR은 개별법에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활발히 이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고 효력에 관한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효력규정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행정형 ADR은 분쟁해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인 간의 분쟁을 행정청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지 내용이 행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단지 행정기관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 점에서 행정형 ADR에서 앞의 "행정형"이라는 수식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용어법으로 행정청이 주관하는 민간분쟁해결용 ADR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행정형 ADR은 분쟁해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인 간의 분쟁을 행정청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주는 것이지 내용이 행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 있어

5. 행정형 ADR 기구의 설치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된 경우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 설치된 경우,

16) 김용섭, 앞의 논문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213면.

17) 이는 결국 법원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민사조정제도를 행정재판의 분야에도 정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행정쟁송 실무는 그동안 행정재판상 조정제도를 정식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사실상의 조정"이나 "사실상의 화해"를 행해왔다. 이는 재판부가 처분청에게 처분의 감경이나 변경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형식을 것으로 실무상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운영실무 – 신모델 실무편람 –, 삼화인쇄주식회사, 2002, 392–393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이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므로 부정의 소지가 있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너무 많이 의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김희곤, 행정사건과 ADR,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과제(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7–88면.

18) 김희곤, 앞의 논문 행정사건과 ADR,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과제, 75–112면.

19) 김용섭, 앞의 논문 86–97면.

20) 유병현,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법조, 2004.6., 296–297면.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설치된 경우 등의 ADR기구가 있다.[21]

1)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된 경우

국토해양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조직된 위원회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된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위원회 위원은 1-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 · 검사 ·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한 자,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환경분쟁조정은 소송 이전 단계에 이들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절차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의 유형으로는 알선, 조정, 재정이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되어 발생한 다툼으로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를 두고 있다(제30조).

또 환경분쟁조정에서는 환경분쟁에서 자주 요구되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기 위한 감정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정책적으로 이해를 조정하므로 비용절감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절차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에 위한 제도[22]라는 특색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조정조서와 마찬가지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정(裁定)[23]은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의 재정에 불복신청을 중앙조정위원회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2)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경우

---

21) 전병서, 대체적분쟁해결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5, 101면.

22) 그러므로 환경분쟁조정에서 한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법적 성격의 분쟁과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23) 재정(裁定)은 제3자의 판단에 의한다는 점에서는 중재와 같으나, 사전에 재정합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절차나 재정위원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재와 차이가 있다. 재정위원회의 재정은 중재판정과는 달리 당사자를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제4절 제36조 이하에서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후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그 재정 문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소송이 중지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의 재정위원회는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24]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그 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 결정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의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이거나, 그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소비자기본법 제61조).

3) 민간단체에 설치된 경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4) 구별개념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위원회라는 명칭은 같이 쓰나 행정기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처리하는 각종 행정위원회는 행정 ADR의 위원회와 구별된다. 대표적인 행정위원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이상 행정관청인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25], 경찰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이상 비행정관청인 위원회) 등이 있다.

---

24)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25)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 등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면 비행정관청인 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조정기구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어 왔으나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실질적 중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Ⅱ. 행정형 ADR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행정형 ADR의 특징 및 현황〉 26)

번 호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의 임 기	비밀유지 규정	분쟁해결의 유형	수 락 기 간	효 력
1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15인 이내	3년	×	조 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2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15인 이내	3년	시행령 제119조의4-절차의 비공개	조정, 재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0인 이내	3년	×	조정(절차는 조례에 위임함)	×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4	공제분쟁조정 위원회	15인 이내	2년	×	조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18인	2년	×	심사?조정	30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6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9인	2년	법 제25조 절차의 비공개	알선, 조정, 재정	30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7	원자력손해배상 심의회	11인	×	×	조정	×	×
8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30인	3년	×	조정	15일	재판상 화해
9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15~50인	2년	×	조정	×	당사자 간 합의
10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30인	2년	×	조정	20일	재판상 화해
11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7~15인	2년	×	조정	×	재판상 화해
12	건강보험심의 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20인 (법20인 이내 시행령15인)	2년(3년)	법 제86조 비밀의 유지	심의	×	×

26) 함영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 24-26면.

번 호	위원회명	위 원 수	위원의 임 기	비밀유지 규정	분쟁해결의 유형	수 락 기 간	효 력
13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	9인 이내	2년	×	심의, 조정	×	×
14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15인	3년	×	조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15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15인	3년	법 제48조	조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16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	10인–20인	3년	×	조정, 알선	×	재판상 화해
17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15인–20인	3년	시행령 제19조	조정	×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18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30인	3년	법 제23조	조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19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15인–20인	3년	×	조정	×	재판상 화해
20	반도체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10인–15인	3년	×	조정	×	재판상 화해
21	언론중재위원회	40인–90인	3년	×	조정, 중재	×	조정–재판상화해, 중재–확정판결
22	환지심의위원회	20인 이내	×	×	심의, 조정	×	×
23	농작물재해보험 심의회	15인 이내	3년	×	조정	20일	재판상 화해
24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	5인 이내	2년	×	조정	×	×
25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5인–10인	2년		조정	×	×
26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11인 이내	2년	×		×	×
27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10인–30인	3년	×	조정, 중재	15일	단체협약
28	교원근로관계 조정위원회	3인	×	×	조정, 중재	×	단체협약
29	선원노동위원회	4인	×	×	심사, 중재	×	단체협약
30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15인	2년	×	조정	15일	재판상 화해
31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11인–15인	2년	×	조정	15일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32	광업조정위원회	10인 이내	×	×	조정	×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는 순수한 민간 ADR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행정형 ADR의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6] 그러나 민간 ADR 기구의 발달이 미약한 것에 대한 대안이 행정형 ADR의 강화로 이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민간형 ADR의 발전이 미약한데 행정형 ADR은 손쉽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나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된 경우는 행정청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지극히 사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형 ADR과 행정형 ADR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형 ADR의 이용이 미약하다면 그 내용이 민간형 ADR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형 ADR로 마찬가지로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형 ADR을 행정형 ADR로 보충하려고 하기 보다는 행정형 ADR은 행정형대로, 민간형 ADR은 또 민간형대로,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전반에서 이미 비대해진 분야가 행정인데 ADR마저 행정편의주의에 따르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분쟁해결절차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하향식의 통제방법을 고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형 ADR과 함께 행정차원의 지원과 기반조성이라고 할 민간형 ADR의 육성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형 ADR은 우선 기존의 장점을 적극 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일관성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행정청의 조직지원이나 자금지원을 받는 행정형 ADR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주로 조정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기관에 분산 · 설치되어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가 부족한 것, 그 절차와 법적 효력 등이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자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ADR 본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 등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

2. 대표적인 중재위원회의 이용현황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옆 표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분쟁 조정은 연도별로 접수건수에 다소의 변동이 있으나 조정에 의하기 보다는 재정에 의한 처리건수가 압도적인 경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이 환경분쟁에서 자주 요구되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기 위한 감정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정책적으

2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하),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백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572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이용현황〉 [28]

구 분	접수현황(건)			처리현황(건)				자진철회	처리중 (이 월)
	계	접수	전년이월	계	재 정	조 정	중재합의		
2001	184	154	30	121	68	7	46	10	(53)
2002	493	440	53	263	118	2	143	30	(200)
2003	550	350	200	292	87	–	205	81	(177)
2004	372	195	177	223	101	1	121	49	(100)
2005	266	166	100	174	100	4	70	18	(74)
2006	276	202	74	165	83	2	80	32	(79)
2007	275	196	79	172	126	3	43	13	(90)
2008	391	301	90	209	149	–	60	8	174
합 계									174

로 이해를 조정한다는 점과 함께 환경분쟁조정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에 위한 제도라는 특색과도 관련이 있다.[29]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裁定)은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의 재정에 불복신청을 중앙조정위원회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 현황〉 [30]

연 도	조정요청	조 정 결 정				기 타	성립률 (%)
		성 립	불성립	기 각	소 계		
2001	574	338	86	33	457	117	79.7
2002	632	434	108	40	582	50	80.1
2003	893	588	124	94	806	87	82.5
2004	1125	658	127	214	999	126	83.8
2005	987	545	121	183	849	138	81.8
2006	1026	607	125	185	917	109	83.0
합계(성립률 평균)	5,237	3,170	691	749	4,610	627	81.82

28) http://edc.me.go.kr/에서 자료 참조함.

29) 행정형 ADR과 유사한 행정사건에서의 ADR(공법 영역의 ADR)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가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한 분쟁 등을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행정사건에서의 ADR의 예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행정형 ADR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 이후에 행정사건에서의 ADR의 활용도 공법분야의 특성을 십분 감안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0) http://www.kca.go.kr/에서 인용함.

분쟁조정의 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분쟁조정성립률은 초기에 70%선에서 80%를 넘어서는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관료화함으로써 대체적 분쟁조정기구 본래의 장점을 상실하고 경직화하여,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외면하고 소액분쟁해결을 기피하며 분쟁해결을 지연시키거나 형식적인 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3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행정기구가 아닌 순수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그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6. 9. 28.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되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2007. 3. 28. 부터 시행되고 있고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7년 이후의 소비자분쟁조정의 통계에 대해서는 이들 새로운 제도의 활용과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이들 제도간의 상호 영향에 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3)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현황〉 [32]

구 분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연 도	신 청 건 수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결 정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계	5,666	2,030	167	157	(19)		1,036	(67)	149	40	2,087	(1,207)	63.84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 조정건수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언론중재위원회가 한 해 동안 처리하고 있는 언론분쟁사건은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1,0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비해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처리된 사건은 지난 3년간(2005 ~

31) 이성환, ADR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단체협의회 2002년 소비자의 날 기념 토론회 발제문.
32) http://www.pac.or.kr/의 통계자료 참조함.

2007) 약 268건 정도이다.[33]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법제 하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조기 해결 노력이 우선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비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해결은 언론중재제도라는 특수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언론분쟁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대개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유무, 권리의 범위, 책임의 소재 등을 놓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언론분쟁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중재는 이 두 가지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일도 양단식의 판결보다 상호 간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합목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언론분쟁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은 피해의 확산 가능성이다. 일반 민사 분쟁의 경우 대부분 고정된 피해의 규모를 두고 다투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는 피해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분쟁의 경우 피해는 시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분쟁 해결이 늦어질수록 피해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잘못된 보도로 인해 기업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경우, 보도를 재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기업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언론분쟁 해결의 성공적 요소 중 하나는 분쟁의 조기 종결이다. 이에 적합한 분쟁해결유형이 언론중재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종결 필요성이 언론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우리 사회가 언론중재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이처럼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종결 필요성이 언론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우리 사회가 언론중재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언론분쟁의 이러한 측면은 흔히 ADR이라고 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Altem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핵심적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진다. ADR의 핵심 요소로 분쟁해결비용의 경감, 사안의 비밀유지, 사안의 개별성 및 특수성 반영, 사건의 빠른 종결 등을 드는데, '헌법적 가치의 충돌에 대한 이익형량이라는 사안의 특수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사안의 조기 종결', '당사자 간의 합의',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적 특성이 있는 언론중재제도는 ADR의 성격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제도는 외형상으로는 ADR의 기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분쟁해결에서는 일정부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보았듯이 행정형 ADR제도 자체가 민간형 ADR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둘은 별개의 성질의 것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중재제도

33)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위해 수집한 2005 ~2007년도 언론분쟁 관련 민사 판례는 268건(항소심 등을 포함한 수치이며, 수집된 형사 판례는 81건)이며, 자료는 법원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법원은 2007년 4월부터는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였으나, 이전 기간의 경우는 61개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만 등록된 상태로 일부 언론관계 판결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참조)

역시 개인 간의 분쟁을 행정청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지 내용이 행정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34]

3. 문제점

행정형 ADR은 다양한 종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어떤 기관에 어떻게 분쟁해결을 신청해야 하는지 법률가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행정형 ADR은 그 다양성이나 수에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채로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작 문제는 행정형 ADR기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홍보하고 안내를 담당할 부서나 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위원회의 조직은 주로 고위공무원이나 한정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되어 분쟁해결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도 부족하다. 조정위원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참여도 부족하다. 또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어떤 종류의 위원회를 만들기는 해 두었다는 전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다 조정에는 시효중단효,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관계, 조정의 성립요건, 성립된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본적인 절차규정이 법률마다 상이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행정형 ADR 일반과 달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직권조정결정의 경우 동의하는 수와 이의하는 수가 거의 비슷한 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른 일반 조정의 경우 직권조정에 동의하는 수가 이의하는 수보다 많은 것에 비하면 독특한 성격을 가진 분쟁조정분야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이의비율이 일반 조정의 경우보다 높게 나온 배경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중재에서 조정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신청자가 스스로 취하를 한 경우(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 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피해구제율이 평균 63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정결정 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의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를 언론중재절차에서 피해구제를 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해도 좋은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현행 행정형 ADR에 대한 평가

1. 활용도를 중심으로 한 지원

34) 물론 언론중재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특별한 성격을 띤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행정형 ADR은 민간형 ADR과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다.

다양한 종류의 ADR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ADR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법원 연계형 ADR이나 민간형 ADR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ADR을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형 ADR이 가장 원칙에 충실한 모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민사조정법 등에 의해 실제 법원이 수행하고 있는 법원 연계형 ADR인 민사조정이 가장 왕성하게 이용되는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분쟁해결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특수성을 가진 많은 ADR들이 실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 특히 행정이 사회를 주도해 온 우리의 현실에서는 행정부문이 재원을 조달하고 조직을 구성하며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형 ADR이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형 ADR이 발달하여 각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그리고 아직은 ADR 발전의 초기인 우리의 실정에서는 행정형 ADR 방식으로 ADR 자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행정형 ADR기구의 다원성 · 자율성의 확대 방향

행정형 ADR을 행정에서의 ADR과 구별하여 행정부 만능으로 흐른다는 오해를 않게 하는 것도 중요. 행정형 ADR은 그 실질이 민간형 ADR과 다르지 않아

앞서 본 것처럼 행정형 ADR기구의 다양화는 관점에 따라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거나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혀 분쟁해결기구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 행정부처나 산하단체에 기구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미 설치된 이들 행정형 ADR기구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ADR기구의 활성화 여건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없애거나 통폐합하기 보다는 이들이 왜 잘 활용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행정형 ADR을 행정에서의 ADR과 구별하여 행정부 만능으로 흐른다는 오해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형 ADR은 그 실질이 민간형 ADR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자세로 잘 운영되는 기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 한다. 특히 잘 활용되고 운영되는 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 기구가 다른 기구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 결국 분쟁 해결의 효율성 증대의 관점에서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일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설립된 다양한 행정형 ADR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또 우선적으로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3. 행정형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성격

언론중재제도는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형 ADR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한 해 1,000건 정도의 사건을 담당[35] 하는 것은 다른 ADR 기구에서도 드문 활용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중재제도가 ADR 논의의 바탕이 된 '사회적 맥락' 이라는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언론중재제도는 구조상 여타 ADR과 구분되는 부분도 있다. 중재부 구성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재부장은 법원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것이 일반 다른 행정형 ADR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36]. 이는 분쟁 해결을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를 우선하면서도 현실적인 법적 기준 내에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Ⅳ. 결어 : 앞으로의 과제

1. 장기 과제 : 이용자들의 분쟁조정에 대한 인식의 개선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직권에 의한 피해구제기관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강하다.[37] 즉 법원에 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준비도 힘이 드는 데 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

또한 입법자도 이러한 피해구제기관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여 조정이든 재정이든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증거조사권을 인정하고 여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분쟁조정위원회에게 직권증거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곧바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해구제청구를 하면, 소비자보호원이 합의권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보호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방식들은 국민들이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우

35)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 중재청구건수는 2005년 883건, 2006년 1,094 2007년 1,057건, 2008년 963건 등이다.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5년 후반기 이후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36) 언론중재법 제9조는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 중재부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이 맡고 있다.

37) 유병현, 앞의 논문 우리나라 ADR의 발전방향, 298면.

유용하나 자율적이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제도의 본래의 역할을 저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조정은 국가나 조정기관이 앞장서서 후견인의 입장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절차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러한 자세에서 조정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조정기관의 직권결정과 그에 대한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우선은 효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판결절차에는 못 미치면서 판결절차를 흉내 내는 제도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와 같은 특성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의 기능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단기 과제

1) 홍보의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행정형 ADR 기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홍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둘 필요가 있으며 홍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행정형 ADR 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홍보 전담부서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부서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대국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 행정형 ADR 안내책자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 주무관청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무원이나 저명인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을 담당할 실무형 인사로 ADR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 있어

2)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

고위공무원이나 저명인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을 담당할 실무형 인사로 ADR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충분한 수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에서 조정위원의 수를 지나치게 소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형 ADR 기구가 실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3) 행정심판 요소의 완화

기존의 ADR제도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적 요소가 있다. ADR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분쟁의 해결을 당사자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식이 없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위원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현재의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절차의 진행이 당사자

합의를 목적적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당사자적 요소 강화 등

ADR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당사자합의 내지 동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ADR에서의 불복제도 등을 폐지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ADR전문가를 대폭 기용하는가 하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인 ADR절차를 법적 판단절차로서가 아니라 합의절차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5) 중립인 및 ADR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양한 행정형 ADR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ADR전문가에 대한 교육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하고 대학외의 다른 기구에서도 ADR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3. 제도적 측면의 정비

1) ADR 일반법 제정

현재 우리나라의 ADR 관련 법률들은 ADR 용어나 개념 및 절차 등에서 각기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이 ADR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ADR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38]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일반 민사소송절차나 행정쟁송절차와의 관계의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시효중단효 부여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조정신청 등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형 ADR의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염려 없이 행정형 AD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형 ADR을 신청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조정의 효력에 대한 규정의 통일

38) 이를 위하여 함영주, 앞의 법무부 보고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5-230면에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당사자 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상 재심사유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ADR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지 않나 한다. 아무리 양보해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에 법원에서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조정의 효율을 도모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다. 설령 단기적으로 조정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끝까지 설득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려갈 일이다.

결국 ADR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이 재판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동일한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속한 사건처리나 합의의 의사가 없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종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절차규정의 정비

재판과 달리 절차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ADR의 장점이므로 행정형 ADR에 관한 절차 규정을 무조건 통일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립, 조정위원의 의무 등과 같이 조정의 본질과 관련된 규정은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법률에 따라 조정 수락기간이 실로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도 조정수락기간에 관한 통일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당사자가 일정기간 내에 수락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ADR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당사자들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조정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의 보수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아닌 자는 대가를 받고 상담, 조정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109조와의 관계도 유연하게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민간 ADR 단체와의 제휴 여부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행정형 ADR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같은 행정기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형 ADR 기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민간단체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와 적극 제휴할 필요도 있다.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정 남 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박사
•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Ⅰ. 서 설

1. 현대언론분쟁의 특색 및 법적 함의

현대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 · 통신기술의 혁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 · 통신기술의 혁명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시켰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 인격권 등이 제한될 가능성은 그 만큼 더 높아졌다. 표현(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침해의 대립구도는 언론분쟁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반론권은 표현의 자유에 대응하는 권리이자, 미디어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이기도 하다.[1)]

언론 및 방송매체는 그 파급력 및 영향력이 매우 커서, 개인의 인격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도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9. 2. 6. 개정되고 2009. 8. 7.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법률 제9425호) 제5조의2에는 '사망자의 인격권보호'를 신설하였고, 인터넷포탈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그 구제가 어려워지자 인터넷포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권리구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통상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

1) Bethge, in: Sachs(Hrsg.), GG, Art. 5 Rdn. 164.

단으로는 금지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죄 등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고의 · 과실의 입증이 쉽지 않으며, 소송의 지연 및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간과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언론분쟁의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이다. 언론중재제도는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언론기본법의 폐지 후 1987. 11. 28.「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 과 방송법에 흡수되어 존속하였다. 그 후 정간물법이나 방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구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시키기 위해, 2005. 1. 27. 언론중재법이 제정 · 공표되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분쟁의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3]

2. 언론중재제도의 위상 및 기능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보도자료(2009. 2. 3. 자)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상담이 2,553건이었고(2004년 1,816건, 2005년 2,353건, 2006년 2,304건, 2007년 2,343건이었다), 상담신청의 피해유형으로는 명예훼손이 61.2%로 가장 많았다(신용훼손 3.2%,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침해 8.8%, 사생활침해 2.0%, 기타 24.8%). 상담내용의 유형으로는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손해배상 23.4%, 기타 15.3%, 추후보도청구 2.0%, 금지청구 1.4% 등의 순이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 상응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시키는 제도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정'(mediation)의 의미를 가졌다.[4] 그러나 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중재제도는 조정과 실질적 의미의 중재로 구분된다.[5] 특히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에는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arbitration)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81. 3. 31.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언론피해 구제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 · 중재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므로,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분쟁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시간 ·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언론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2) 성낙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 법과 사회, 제14호, 1997. 04, 6쪽 이하.
3) 언론중재제도의 연혁에 대해서는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해석,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통권 제94호), 2005. 03, 4쪽 이하; 한위수,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제26권 제4호(통권 제101호), 2006. 12, 5쪽 이하.
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4, 16쪽 이하 참조.
5) 한위수, 전게논문, 5쪽.

않는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청구권 ·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을 신속 · 간이하게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보장에 상응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언론중재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Ⅱ). 그리고 유사 분쟁조정제도와의 비교 · 검토를 통해 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특징과 유사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Ⅲ). 또한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등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언론중재법의 개정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Ⅳ). 결론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전망과 과제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Ⅴ).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중재

1. 개 관

현대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분쟁 및 갈등양상이 복잡다기해지고,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하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등장하였다.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소송절차의 지나친 형식화와 복잡화, 변호사보수의 고액화 등의 문제로 인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비자분쟁이나 환경분쟁 등 새로운 형식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해결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통상적으로 비형식성(Informalization), 법외화(Delegalization) 및 비법조화(Deprofessionalization)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6]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는 협상, 화해, 알선, 조정 및 중재 등이 있다. 우선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를 설득하여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절충해서 화해로 이끌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조정에는 알선(conciliation)이나 화해가 포함된다. 그러나 화해(settlement)는 주로 양 당사자의 호양에 의해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 중재(arbitration)는 일종의 '사적 재판'으로서 제3자(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7]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일도양단식(all or nothing) 해결방식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인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 방식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은 법원의 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에 의한 분쟁해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일종의 분쟁해결의 '민영화'(privatization, Privatisierun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

6) 강현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고시계 제39권 제7호(통권 449호), 195쪽 이하.
7) 이에 대한 상세는 졸고,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사법행정 제46권 제4호(2005. 4), 9쪽.
8) 이시윤, 전게서, 16쪽 이하.

한편, 조정에는 조정주체, 즉 조정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행정조정, 법원조정 및 민간조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원조정에는 민사조정[9]과 가사조정으로 구분된다. 민간조정은 비정부기관(NGO)나 소비자단체 등이 조정인이 된다. 한편, 행정조정은 행정기관이 조정인이 되며, 주로 행정부 산하의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 오염 등 환경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환경상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행정조정은 다시 사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사인과 행정청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그리고 행정청 상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10]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 ·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이다.[11]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는 '행정형 ADR'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중재위원(40인 이상 90인 이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위촉된다. 다만,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언론중재법 제8조 제1항),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독립된 법정기관으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대국가의 행정모델은 전통적인 계층적 피라미드구조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강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12], 행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는 민간부문이 활용되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1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정법상의 분쟁 조정제도는 민간부문이 활용되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며, 언론중재제도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추세에 부응

2.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1980년 분쟁해결법(Dispute Resolution Act)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에 제정

9) 민사조정에 대해서는 1990. 9. 1.부터 시행되는 민사조정법이 적용된다. 언론중재법도 조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조정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9항, 제10항).

10) 류지태, "행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의 비교연구", 고려법학 제42호, 2004, 4쪽 이하.

11) 황해봉, "행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와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I", 법제 제571호(2005. 07), 18쪽.

12) 그러한 의미에서 소위 "협력적 법치국가"(kooperativer Staa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문헌은 졸고,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환경법연구 제25권 1호, 2003. 9., 376쪽.

13) 황해봉, 전게논문, 9쪽.

된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에는 조정 이외에 중재(arbitration), 간이심리(minitrials)[14], 교섭원조(facilitation) 및 옴부즈맨의 이용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이 도입되었다.[15] 1990년 중반에는 환경청이 슈퍼펀드(superfund), 수질환경보전법 등 약 30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중재를 사용하였다.[16]

행정분쟁해결법에 의하면, 행정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는 상근 또는 비상근의 연방공무원 또는 직원이나, 분쟁해결과정의 당사자가 동의한 사인이 담당한다. 알선인, 교섭원조인 또는 조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립적 제3자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7]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동의는 분쟁의 쟁점이 명확하게 되기 이전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도 이루어진다.[18] 중재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된 후 30일이 되면 종국적 결정이 된다. 종국적 결정은 중재절차의 당사자에 대해 구속성을 가진다.[19]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

한편, 미국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에는 협상(negotiation), 조정, 중재 및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52조 이하). 방송 및 통신과 관련된 미국의 규제기관으로는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이외에 정책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1934년 통신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선 · 위성 및 케이블 등 주 사이 또는 국가 사이의 통신을 규율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5년 임기이다. 대통령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21]

⑵ 일 본

일본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 신속 · 간이한 행정분쟁해결수단으로 행정불복심사제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22] 이러한 일본의 행정불복심사제도는 우리의 행정심판제도와 대동소이하며,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쟁송'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 · 중재 등 본래적 의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행정형 ADR'로서 공해등조정위원회, 국민생활센터 등이 있다. 특히 공해등조정위원회는 공해에 관한 분쟁을 신

14) 간이심리는 주로 기업 사이의 분쟁해결에 사용되며, 화해절차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2002. 8), 183-184쪽.
15) 이에 대한 상세는 강현중, 전게논문, 195-196쪽 참조.
16) Alfred C. Aman, Jr./William T. Mayton, Administrative Law (2nd ed.) 274.
17) 5 U.S.C. § 573.
18) 5 U.S.C. § 575.
19) 5 U.S.C. § 580.
20) 5 U.S.C. § 581.
21) 상세는 졸고,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통권 610호(2007. 7), 285쪽 이하 참조.
22) 大橋眞由美, 行政紛爭解決の現代的構造, 弘文堂, 2005, 248-249면.

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법 제3조), 종전에는 총리부의 외국이었으나, 중앙성청의 개혁에 의해 2001년부터 총무성의 외국이 되었다.[23] 공해분쟁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는 조정, 중재 내지 재정 등이 있다(동법 제4조). 한편,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분쟁처리를 위한 기구로서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분쟁해결수단으로는 알선이나 중재 등이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54조).

그러나 일본에서도 2001. 6. 제출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강조되었고, 그 후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2001. 12. 이른바 "ADR 검토회"가 설치되었다.[24]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서 2004. 12. 법률 제151호로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과 함께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제도를 설치하고 아울러 시효중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그 편리함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분쟁당사자가 그 해결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국민의 권리이익을 적절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를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쟁당사자를 위해 제3자가 개입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정의하여, 동법은 민사상 분쟁을 대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참조).

일본에서는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강조되었고, 이후 검토 작업을 거쳐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3) 독일

독일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비교적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소위 'ADR운동'이 확산되자, 독일도 그러한 영향으로 실무상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조정을 행정소송 내의 조정과 행정소송 외의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 내의 조정(법원조정)은 하급심법원을 중심으로 그 실현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25] 독일에서 조정은 가족법, 경제법, 건축법 및 환경법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26]

아직 독일에는 통일된 미디어법전(Mediengesetzbuch)이 없다. 다만, 방송분야에 대해서는 주간방송협약(RStV: Rundfunkstaatsvertrag)이 있고,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통신법(TKG: Telekommunikationsgesetz) 등

23)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는 공해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에는 공해심사회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는 大橋眞由美, 전게서, 250면 이하.

24) 한귀현,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102면.

25) Ortloff, Europäische Streitkultur und Mediation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NVwZ 2007, S. 33ff. 그 밖에 상세한 문헌 및 논의내용은 졸고,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사법행정 제46권 제4호(2005. 4), 6-20쪽 참조.

26) 독일의 조정제도에 관한 내용은 Stelkens/Bonk/Sachs(Hrsg.), VwVfG, 7. Aufl., 2008, Rdn. 42ff.; Gottwald, Alternative Streitbeilegu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Deutschland: Wege, Umwege, Wegzeichen, FPR 2004, S. 163ff.; Tochterman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inf?hrung in die alternative Streitbeilegung, JuS 2005, S. 131ff.

이 제정되어 있다.[27] 방송에 대한 규제는 주미디어관리청(Landesmedienanstalten)이 담당하고, 국가의 법적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한편, 통신에 대한 정책은 연방경제기술부(BMWi)가 담당하고, 규제는 통신우편규제청(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이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연방경제기술부 소속하의 연방망(네트워크)관리청(Bundesnetzagentur)이 담당하고 있다. 연방망관리청은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기치 하에 전기 · 가스 · 통신 · 우편 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방송과 통신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통신법은 3차에 걸친 우정개혁을 통해 1996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28]

언론분야에서 ADR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통신법 제124조에는 조정절차(Mediationsverfahre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통신우편규제청은 양 당사자 사이의 통신법상의 분쟁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경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29]

3. 언론중재의 유형, 절차 및 내용

(1) 조 정

(가) 조정의 의의

언론중재법상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인해 언론사와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사이의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분쟁을 제3자(중재부)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를 설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년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883건에서 2006년 1,087건, 2007년에는 1,043건으로 조정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전체 조정청구 중 손해배상청구는 2005년 141건(16.0%)에서 2007년에는 349건(33.5%)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0]

(나) 조정의 절차

조정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피해자[31]와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언론피해자가 언론피

27) J. Petersen, Medienrecht, 3. Aufl., § 1 Rdn. 18.
28) 이에 대한 소개는 졸고,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통권 610호(2007. 7), 290-293쪽 참조.
29) Koenig/Loetz/Neumann, Telekommunikationsrecht, 2004, S. 224.
30) 언론중재위원회, 2007 연간보고서, 30쪽.
3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위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기준이 문제된다. 즉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조정신청의 방식은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3항). 구술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 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후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전자우편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 경우 조정신청서의 접수일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한 날로 한다.

또한 신청인은 조정절차의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 신청취지의 변경과 청구병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 이는 언론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을 병합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에 도모하고, 일거에 언론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신청취지의 변경 및 청구의 병합을 가능하게 한 규정은 언론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효과적 구제를 가능하게 해

조정신청은 관할 중재부에서 담당하며,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수개인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만약 조정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언론사가 2회에 걸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소멸 후 3일 이내에 기일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다) 조정의 결정 및 효력

조정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언론사의 2회에 걸친 불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언론중재법 제23조). 그러나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중재부는 각하결정을 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라) 직권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간주를 포함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법 제22조). 따라서 직권조정은 이의신청에 의해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등 위헌확인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32] 한편, 2009. 2. 6. 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중 재

(가) 중재의 의의

언론중재에 있어서 중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의 제정 전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정'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중재신청 시에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재는 제3자(중재인)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언론중재법은 고유한 의미의 '중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중재의 절차

중재절차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상의 이송에 관한 규정과 법관의 제척 · 기피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는 중재결정이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준사법적 기능이므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척 · 회피에 관한 결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담당하고, 그 결정에 대해 쌍방 당사자는 불복하지 못한다. 또한 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특별히 요하지 아니한다(언론중재법 제24조).

(다) 중재결정의 효력

중재제도는 중재인에 의한 사적 재판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5조). 다만, 이러한 규정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필요적 전치주의가 폐지되고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

32) 헌재 2006. 6. 2005헌마165등.

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등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침해가능성은 낮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에서, 중재는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절차에 강제로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만 개시되어, 중재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5조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위 2005헌마165등).

Ⅳ. 유사 분쟁조정제도와의 비교

1. 유사 ADR제도

(1) 환경분쟁조정제도

헌법재판소는 중재는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절차에 강제로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만 개시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고 결정

(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전문지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9조, 제30조). 이에 따라 제정된 환경분쟁조정법(1997. 8. 28, 법률 제5393호)[33]은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환경 분쟁의 알선 · 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하의 분쟁조정기관이다. 즉 환경분쟁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 또는 지방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알선,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16조 1항).

(다) 환경분쟁조정의 수단 및 절차

환경분쟁조정법에는 알선, 조정 및 재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당

33) 동법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 8. 1, 법률 제4258)이 전문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의2). 그러나 이러한 합의권고가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환경분쟁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25조).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의 수단 중 알선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분쟁의 쟁점을 정리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하는 분쟁조정수단으로서, 3인 이내의 위원(알선위원)이 행하며, 알선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동법 제27조). 조정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면 알선 중인 분쟁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29조 제2항).

조정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조정인, 조정기구)가 중개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환경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구가 된다. 조정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들에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쌍방의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며,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낙을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해 수낙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33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동법 제35조 제3항, 제4항).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재정은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정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준사법적 성질을 가진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속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42조). 재정신청은 당해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시효중단 및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동법 제44조). 또한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관련 집단분쟁을 위해 1997. 8. 27. 전면개정을 통해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규정을 대폭 보강하여,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이하 참조).

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가) 소비자분쟁조정의 의의 및 특징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그 의견을 조율해서 화해로 이끄는 조정의 하나이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는 그 밖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강조하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이 경우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그리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57조).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독립법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도 역시 행정형 ADR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으로 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정위원은 3년 임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신분의 독립성을 비교적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동법 제61조, 제62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63조).

(다)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청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2항).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 ·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동조 제3항),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54조). 분쟁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이외에,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소위 '집단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내용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수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동법 제66조, 제67조).

⑶ 노동쟁의조정제도

(가)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노동쟁의조정제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

다만, 노동쟁의조정제도는 자주적 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적 조정 ·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또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의 조정과 긴급조정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동법 제71조 이하).

(나)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위원회의 설치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 · 재심을 위해 노동위원회 산하에 조정위원회와 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56조). 한편, 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설치되며,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동법 제64조, 제65조).

(다) 노동쟁의조정의 수단, 절차 및 특징

노동쟁의조정의 수단에는 조정과 중재가 규율되어 있다. 조정은 관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은 일반사업의 경우에 10일,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 제54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는 단독조정을 허락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60조, 제61조).

중재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그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동법 제62조, 제63조).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69조).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70조).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이하에서는 긴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의 공표 시에는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79조).

2. 언론중재제도의 특징 및 유사제도와의 차이점

이상의 고찰에서 언론중재제도는 다른 유사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언론중재도 사인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제도와 유사점을 가지나, 언론분쟁의 대상은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충돌하는 기본권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며, 언론매체는 그 파급력이나 피해의 광역성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언론중재는 다른 유사제도에 비해 준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조정 외에 '중재'의 효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중재는 종래 '조정'의 의미로 이해되었으나, 강제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어 고유한 의미의 중재제도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중재를 위해 제

척 ·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셋째, 언론중재의 효력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즉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나, 중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노동쟁의조정의 경우에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 밖에 언론중재의 조정은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 이외에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직권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포함시킨 것은 소송경제에 부합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를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심리기간이나 방식 등에 제한 있는 중재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언론침해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지면이나 시간할애 이외에 금전지급의 부담을 언론사들이 기피하는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34] 그러나 2005. 7. 28.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진 후, 2005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141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318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349건으로 손해배상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5]

Ⅳ.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그 구체적 내용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등 위헌확인[36]에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언론중재법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 8. 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언론중재제도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언론중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34) 이에 대한 상세는 양삼승, 전게논문, 7-8쪽 참조.
35) 언론중재위원회, 2007 연간보고서, 46쪽.
3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⑴ 적용대상의 확대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언론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37] 등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추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적용대상의 범위는 확대일로에 있다.

⑵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개정 언론중재법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2조 제3항),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중재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포털 등을 조정 · 중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직권조정결정에의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해

⑶ 중재결정의 취소

개정 언론중재법은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및 중재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소송에 의하여만 가능하나,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⑷ 정정보도청구의 소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등 위헌결정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간이한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여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반

37) 개정법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정의하면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18호).

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⑸ 시정권고

개정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해 삭제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등 위헌확인에서, 시정권고제도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권력행사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Ⅴ. 과제와 전망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의 언론중재제도는 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선구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언론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중제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임에 틀림없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를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시행된 해인 2005년 이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언론중재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추가하였는바, 정보 ·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언론분쟁의 증가 가능성과 언론중재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특히 이러한 매체로 인해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의 역할은 크다고 보인다.

다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신속 ·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이러한 제도적 장점이 반드시 사법정의를 보장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언론분쟁은 기본권의 충돌, 즉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구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익형량이 아닌, 실제적 조화의 원리 내지 최적화명령(Optimierungsgebot) 등과 같이 양 기본권의 최적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중재절차의 지나친 사법(절차)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제도의 지나친 사법화는 오히려 권리구제수단의 중첩과 그로 인한 구제의 지연, 법원판결의 예단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상 중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비록 정정보도청구소송 · 반론보도청구소송 및 추후보도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 명확성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 등 법치주의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2002. 8), 171-205쪽.
- 강현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고시계 제39권 제7호(통권 제449호), 195-200쪽 이하.
- 류지태, "행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의 비교연구", 고려법학 제42호, 1-19쪽.
- 성낙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중재", 법과 사회, 제14호, 1997. 04, 6-33쪽.
-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해석", 언론중재 제25권 제1호(통권 제94호), 2005. 3, 4-18쪽 이하.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4.
- 정남철,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 통권 제610호(2007. 7), 263-303쪽.
- 정남철,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사법행정 제46권 제4호(2005. 4), 6-20쪽.
- 정남철,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환경법연구 제25권 1호, 2003. 09, 375-400쪽.
- 한귀현,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 한위수,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제26권 제4호(통권 제101호), 2006. 12, 5-20쪽.
- 황해봉, "행정법상의 분쟁조정제도와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I", 법제 제571호(2005. 07), 5-33쪽.

[일본문헌]

- 大橋眞由美, 行政紛爭解決の現代的構造, 弘文堂, 2005

[독일문헌]

- Gottwald, Walther, Alternative Streitbeilegu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Deutschland: Wege, Umwege, Wegzeichen, FPR 2004, S. 163ff.
- Koenig/Loetz/Neumann, Telekommunikationsrecht, 2004.
- Stelkens/Bonk/Sachs(Hrsg.), VwVfG, 7. Aufl., 2008.
- Tochtermann, Pet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inf?hrung in die alternative Streitbeilegung, JuS 2005, S. 131ff.
- Ortloff, Karsten-Michael, Europ?ische Streitkultur und Mediation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NVwZ 2007, S. 33ff.
- Petersen, J., Medienrecht, 3. Aufl., 2003.
- Sachs(Hrsg.), Grundgesetz, Kommentar, 3. Aufl., 2003.

[미국문헌]

- Alfred C. Aman, Jr./William T. Mayton, Administrative Law (2nd ed.), 2001.

기업보도와 법적 쟁점

김 재 협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업보도에 관하여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어서 공공성이 강하고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긴급성과 긴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하여 초래되는 위험이 아주 커서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훼손 침해에 관련된 보도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Ⅰ. 글 첫머리에

기업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있어 꽃으로 불린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기업의 지속적 활동 보장 없이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성공할 수 없다.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준다. 기업 활동에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환경파괴,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 고용 탄압, 부실 또는 저질 상품의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 침해, 지나친 이윤 추구에 따른 사회통합요소 저해 등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더구나 기업에게 무제한의 영업 자유 환경을 부여하면, 작금의 현상과 같은 세계금융 위기나 그에 버금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현대 기업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역할이 막대하고 중요함에 따라 정부권력이나 사회 권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공적 존재로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언론은 사회적 감시와 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 아래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보도에 관하여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어서 공공성이 강하고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긴급성과 긴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하여 초래되는 위험이 아주 커서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훼손 침해에 관련된 보도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명성이나 신용 등에 의해 시장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의 특성상 특정 기업에 대한 사실 오보나

신용훼손에 관한 기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그러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그 피해를 복구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보도로 기업이 망한 후에는 그 보도를 정정한다고 하여도 다시 예전처럼 살아나기가 어렵고, 해당 보도와 기업의 영업 실적 감소나 주가하락, 신용훼손 등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에도 그 손해의 규모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기업보도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기사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기업이나 그 기업의 특정 제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 기사에서 특정 기업이나 그 기업 제조 · 판매의 특정 제품에 관하여 업계 1위라거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최상의 상품이라고 언급한 경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은 자연히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다른 기업의 동종 제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뒤쳐지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심어주게 된다. 이러한 경우 타 기업은 그 보도 기사에 대하여 신용훼손 침해 등으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기업보도 관련해서는 익명처리가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익명으로 처리한 한 업체의 특정 상품에서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할 경우, 그렇지 않은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도 해당 보도로 인해 불신을 받아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와 같은 잘못 처리된 보도에 대한 사후 해결과정이 어떠한지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다른 한편 기자 등 언론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업이 그 존재나 목적, 활동의 성격상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적 존재로 되는 것이라고 지레 인식하고, 나아가 기업보도에 관하여는 공적 존재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면책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을 그러한 의미에서 공적 존재로 보는 데는 근본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언론의 면책기준 완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기자로 하여금 기업보도에 대하여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기업보도를 둘러싼 기업에 공적 인물의 성격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인 활동 영역에 따라 관련 기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것이 바로 기업보도에 관하여 언론의 면책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을 포함하여 기업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범위와 손해액의 사정방법, 언론의 면책기준이 다른 보도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기타 기업 관련 보도에서 위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와 이를 피하기 위한 기사 작성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기업보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기업보도에 관한 저널리즘은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독직사건 폭로기자(muckraker)이라는 용어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기업의 독점적 활동과 가격고정화에 대한 구조를 파헤친 미국 신문기자에게 붙였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당시 육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 위생을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안에만 급급하였다.[1] 그리하여 신문기자가 그 기업이 생산하는 통조림 쇠고기가 몸에 해로운 이유를 낱낱이 고발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결과 그 통조림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 언론 매체도 시간이 갈수록 경제면을 대폭 늘

1) 싱클레어(Upton Sinclaire)의 소설 정글(The Jungle)은 시카고 육류 포장공장에서 실제 일어난 악랄한 기업이윤 추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리고 있고, 특집 형식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오보를 게재함으로써 커다란 홍역을 치루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1998년의 통조림 포르말린 함유 보도사건을 들 수 있다. 번데기, 골뱅이 통조림 등에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말린을 첨가해 제조하여 유통시켰다는 보도인데, 이로 인하여 제조기업이 여론의 질타뿐 아니라 판매한 제품의 반품이 쏟아져 모두 도산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다행히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무죄판결[2]이 있었지만, 그 뒤 몇몇 업체에서는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충분한 수사 없이 발표한 검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기초로 윤색 없이 거의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관련 제조업자들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으면서도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 되었다.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이후에도 다이옥신 죽염사건, 쓰레기 만두소사건, 중국산김치 기생충알 오염사건 등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의 주목을 끄는 사건에 관하여 언론의 무분별한 경쟁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폐해도 자못 심각하였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보도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깊이 있고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 차분히 진위와 옥석을 가려서 정확한 문제점과 문제 있는 제품을 특정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언론이 진위가 가려지지도 않은 내용을 경쟁적으로 성급

정확한 문제점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언론이 진위도 가려지지 않은 내용을 경쟁적으로 성급하게 보도함으로써 관련 업체에 치명적 손실을 끼친 사례 많아

2) 실제로 WHO가 1989년에 펴낸 '환경건강기준'에 보면 자연 상태의 어류와 야채 등에서 상당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될 수 있다(갑각류 1~98ppm, 냉동대구 20ppm, 무 3.7ppm, 토마토 5.7ppm 포함)고 한다. 검찰에서 표본조사한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 함유량이 표고버섯에서 검출되는 양(일본약학회에서 1990년 펴낸 '위해시험법'에 표고버섯의 포르말린 함유량이 100~300ppm으로 표시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0.19mg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법원은 통조림제조업자들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3) 그 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 경로에 관한 조사 없이 특정 이동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이동쌀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감사결과를 성급하게 언론에 공표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는 소비자단체의 상품에 관한 공표 내용에 관한 명예훼손사건의 중요한 선례로 보면서, 대법원이 소비자단체가 시용품의 채취 시에 유통경로 조사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 비판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에 충실하려고 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의 법리에 무관심했다는 점, 소비자단체의 상품테스트 결과의 공표는 소비자들에 대한 위해상품의 경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한 점, 상품테스트결과의 공표에 있어서 그 시용(試用)으로 삼은 상품이 진품인가 위조품인가의 입증문제는 명예훼손에 관한 증명책임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상품의 외관을 보고 어떤 회사의 상품이라고 신뢰하며 상품의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갖지 않으므로, 그 회사 상표를 달고 있는 상품이 문제된 경우에 그것이 위조품이라는 것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하고, 먼저 시용으로 사용된 상품이 진품인지 위조품인지를 그 입증책임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나서, 명예훼손에서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은영, 이동쌀막걸리의 신용훼손사건, 법률신문 1998. 5. 22. 자. 법률신문사 참조).

히 보도함으로써 관련 제조업체에게 치명적 손실을 끼쳤음을 상기할 수 있다.

Ⅲ. 기업보도의 범위와 그 기준 설정의 필요성 등

1.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불명확성

언론종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업보도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어떤 범주의 보도가 기업보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생각건대, 우선 명확한 것은 보도 대상이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기업은 대체로 소유나 지배 주체의 따라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자본과 조직 구성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업 분류 방법과 기업보도에 있어서의 기업의 정의와는 바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분류와 관련하여 일응 구분 기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여하튼, 언론계에서 기업보도라고 하는 경우,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다. 그런데,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에 한정되는지 더 나아가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사업 활동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 모두를 포함하는지 사업 활동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상적으로 보면, 기업보도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규모의 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활동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기업인이나 임원 개개인의 사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 활동 중에도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노동운동 등 소비자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밀접하고 기업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분야는 이에 포함될 것이지만, 인사, 재무관리, 영업전략, 거래처나 수요자 등 고객과의 관계 등 기업에게 자유를 허여하여야 하는 분야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기업보도 구분기준의 필요성 등

언론계에서 기업보도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쓴다면, 막연하게나마 그 구분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보도에 있어 특수성은 무엇인지, 보도의 중점은 어디에 있는지, 언론의 면책 범위는 어떠한지, 잘못된 기업보도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보도의 경우와 다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한 검토를 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보도를 다른 보도와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기업관련 보도도 다른 보도와의 특수성은 내용상 경제적 측면이 강한 것일 뿐이고, 보도의 중점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언론의 면책 범위나 잘못된 기업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기준도 다른 보도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굳이 기업보도의 구분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기업보도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보도와 다른 면책기준이나 손해액 산정기준이 일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s)가 아닌 추정적 손해(presumed damages)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손해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

다. 이러한 추정적 손해 개념의 도입은 기업보도만이 아니라 일반 보도에도 모두 필요할 것이다. 또한 면책기준에 관하여도 기업보도의 개별적 내용에 따라 종래의 기준에 일부를 수정 적용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면 될 뿐이고, 별도로 기업보도에 특수한 면책기준을 마련할 당위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보도의 구분 기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3. 기업에 대한 공인 내지 공적 존재성 일반화의 오류

공직자 또는 공적 기관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를 일반인에 관련된 보도와 달리 취급하여 언론에 대하여 면책기준을 완화하여 주는 이른바 공인 이론은 그들의 활동이나 자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 비례하여 그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언론의 순기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다.[4] 즉 공적 인물 이론은 언론의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비교적 자유로이 허용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이론이다. 다른 한편 공인이론을 처음 주창한 미국에서는 공인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언론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인물 이론을 기업보도에 있어서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한지는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공적 인물의 이론이 도입된 배경과 근거 등과 기업 활동의 다양성과 특성, 기업 활동이 당해 기업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곰곰이 곱씹어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기업의 공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윤리적 기업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기업에 관련된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기업을 바로 공적 인물이라는 논리로 직결된다고 비약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되는 판결을 몇 개 소개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된 쟁의행위에 관한 언론의 비판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오늘날 기업의 공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윤리적 기업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기업에 관련된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기업을 바로 공적 인물이라는 논리로 직결된다고 비약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위수 등 편집, 언론관계소송, 재판실무연구 1,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중 전원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146-176쪽) 참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그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큰 규모로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현대자동차와 그 노동조합을 모두 공적인 존재로 보았다.[5)]

반면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정신과의사 운영의 병원 등 위반업소들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언론이 이를 보도함에 있어 그 의사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로 볼 수 없고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따라서, 기업이나 기업인의 공적 인물 해당 여부에 관한 논의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과 같은 차원에서 자질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보도에 있어 피해자로 지목된 기업이나 기업인의 활동 중 국민 경제생활, 생명, 위생, 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특정 활동에 국한하여 제한적 접근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보도에 있어 허용의 정도나 면책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도대상 기업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의 관점보다는 보도대상이 되는 기업 활동이나 기업관련 사항이 공적인 사안으로 공공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느냐의 관점이 더 중요한 요소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보도에 있어 보다 중시하여야 할 요소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공적 인물 해당 여부가 아니라 보도하려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특정 활동의 공공성 인정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기업보도에 있어 공공성 인정의 범위

기업보도의 공공성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반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기업의 특정 활동이 국민이나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조감하여 볼 수 있는 판결로 출판업과 관련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부지조성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가산업단지인 출판단지의 분양과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기업보도는 그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들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7426 판결).

기업보도 중 기업인이나 임원 개개인의 사적 활동에 관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기업 활동 중에도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노동운동 등에 관련된 분야 외에 인사, 재무관리, 영업전략, 거래처나 수요자 등 고객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보도도 통상 공공성이 부족하고 예외적으로 공공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기업인에 대한 범죄경력 보도는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고위 정치인 등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나 그 노동조합의 노사관련 문제나 제조 상품의 안전성, 국민건강 위해성 여부,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사설 금융업체의 사기성 여부와 그로 인한 서민 대중의 피해 실태, 항공, 교통,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활동의 마비나 대란 등을 둘러싼 문제 등은 당연히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Ⅳ. 잘못된 기업보도의 유형과 그 구제책

1. 명백한 오보로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우리 법원이 시민단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동

5) 그 같은 전제 하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당해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이 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적 인물 이론에 관한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차 연비향상장치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특정 제품은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제품은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비향상장치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방송한 것은 그 특정 제품에 대한 명백한 오보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에서도 오보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는 보도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신속보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검찰의 공식기자회견 내용을 과장 또는 윤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들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406 판결).[6]

2. 편파적인 홍보성 보도로 위법한 경우

오늘날 인간생활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경제 기사나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도 늘어나고,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기업이나 경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사도 기업이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기업 광고를 통해 조달되고 있어 기업보도의 상당 부분이 은연 중에 광고주인 기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측면으로 흐르게 될 우려가 있다. 그 경우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동종 업계의 다른 경쟁기업이나 상품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신용훼손 등으로 위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그 관련 보도에 있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한 보도로 된다. 그 경우 해당 보도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기업이 그 보도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3. 비실명으로 처리한 보도로 타 기업에 대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기업보도 관련해서는 익명처리가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즉 익명으로 처리한 한 업체의 특정 먹거리 상품에서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동일한 먹거리 상품을 제조 ·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도 해당 보도로 인해 불신을 받아 해당

기업인 중 국가 경제계에 있어 상당한 위치에 처한 사람은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호되어야 할 범주에 속함이 원칙이다.

6) 다만 이 판결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먹거리 상품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안전성 등에 관한 부정적 보도에 있어서도 실제 실험을 한 제품의 내역, 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경우 동종의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가 신뢰를 잃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기업보도가 모두 위법함은 자명하다.

결국 특정 제품의 안정성이나 위해성 등에 관련된 기업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범죄보도에 있어 익명보도 원칙과 정반대로 실명보도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업인 개인의 사생활 보도

기업인 중 국가 경제계에 있어 상당한 위치에 처한 사람은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호되어야 할 범주에 속함이 원칙이다. 개인의 사생활로 비공개 보호를 받아야 할 범주로는 대체로 병력 등 건강상태, 성형 수술 여부나 비만 정도 기타 내밀한 신체적 특징, 가정생활, 부부관계와 애정 관계, 임신 여부, 취미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는 그간의 유명 기업인에 대하여 결혼, 가정생활, 이혼 등에 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도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듯 하여 매우 안타깝다. 대중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는 분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대중의 호기심에 기대어 이를 일부러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듯 하여 안타깝다. 앞으로 이에 대한 언론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통계수치 분석에 있어 편견이 개입된 위법한 보도

기업보도에 있어 통계수치를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 수치 분석을 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기자나 언론사의 편견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통계수치의 분석이 편견이라거나 논리적 비약으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신뢰성 상실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프랑스의 판례가 일응 참고가 될 것이다. 의사들의 연간 치료활동 비율을 분석 · 비교해 본 결과 의사 1인당 진료활동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통계수치가 나오자 이를 바로 의사들의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한 기사에 대하여, 그 통계수치가 바로 의사의 직업 활동 불충실성, 불친절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기사로 인하여 독자나 환자에게 은연 중에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암시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에 대한 직업적 · 도덕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신용침해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프랑스 파기원의 판결도 있다(프랑스 파기원 1993. 10. 12. 선고 Barger er autres c. le docteur X... 판결).

6. 단순한 의혹제기로 위법한 경우

기업보도는 진실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 · 전문적 관점에서 예리한 분석을 한 뒤 객관적 시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 경쟁의 토대 위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평가되고, 경영의 효율성과 우수성에 따라 기업의 이윤의 규모가 결정되고 기업의 사활이 달려 있어, 다른 분야의 경우보다 더 정확한 사실 보도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보도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혹제기는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덧붙여 이러한 점으로 보아 기업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면책기준은 공공성을 띤 다른 분야에 대한 보도에 관한 통상의 면책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Ⅴ. 위법한 기업보도로 인한 손해액 등의 입증방법

위법한 기업보도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나 기업인은 당연히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그 기업보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외에 재산상 손해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그 경우 그간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정신적 손해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인정해 주고 있지만, 위법한 기업보도로 계획된 사업 차질, 매출 감소, 신용 추락, 거래처 상실, 금융지원 중단이나 금융위기 초래 등이 생겨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다는 기업 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본 자동차 연비 향상 장치에 관한 방송오보에 대하여 그 방송보도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그 보도 시점과 맞물려 연비향상과 매연 절감 장치의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거의 도산 지경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매출액의 감소가 위법한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다.[7]

기업에서 영업과 수익을 좌우하는 요소는 언론보도 외에 경기 침체, 복합적 시장 여건의 변화, 기술 환경의 발전과 변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 수 없이 많은 요소가 있다. 따라서 학설이나 판례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 이론에 의하면, 매출감소나 생산차질, 신용추락에 따른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언론보도 외의 다른 여러 요소가 그 손실이나 위기 초래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아울러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기업보도에 있어 의료 · 환경 · 제조물 책임 등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의 영업과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언론보도 외에 경기침체, 계절의 변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어 입증책임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있다.[8]

기업의 영업 환경과 수익에 관련된 요소는 개별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기술 수준, 인력 수급 관계, 노동 환경, 기업 내부의 단합 정도, 거래처와의 관계 등 기업 내부적 환경 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요소 외에도 금융, 시장, 소비자, 경쟁기업 등 기업 외부적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수시로 그 요소의 여건도 변화하는 것이다.

기업보도 관련, 그간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정신적 손해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인정해 주고 있지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한 경우 거의 없어

7) 윤재윤, 함석천, 언론분쟁과 법, 2005, 청림출판, 292쪽 참조.
8) 윤재윤, 함석천, 위 책, 291-292쪽 참조.

그러나 의료 · 환경 · 제조물 책임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초래된 손실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보도로 인한 재산상 손실의 경우처럼 그리 복잡다기하지는 않다. 따라서 의료 · 환경 · 제조물 책임 등의 사건의 경우를 들어 기업보도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의 완화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법한 보도의 시기와 내용, 해당 기업의 당해 상품의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의 정도와 추이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비록 그 매출액 감소 등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을지라도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당해 언론 보도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이나마 일응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고 그 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 인정되는 손해액의 정도는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s)가 아닌 추정적 손해(presumed damages)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요건 하에 미국의 추정적 손해의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로 이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2609, 42616 판결이 있으나, 이를 두고 대법원이 추정적 손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은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특정 의료기기 회사에 대하여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제보하고 서로 맞고소하게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제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한 사안으로, 그 제보자에 대하여 그 제보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성도 없어 그 의료기기 회사에게 무형의 손해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 9. 27. 선고 99가합89715, 2000가합50881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됨).[9]

Ⅵ. 기업보도에 있어 면책기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치적 인물이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주권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적 인물에 대한 자질 평가, 정책 검증 등에 있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아니라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있다. 그 인물이 그러한 정치적 활동이나 공직 활동을 수행할 위치에 있게 하는 선택을 직 · 간접적으로 국민이 한다는 민주주주의의 합의된 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혹보도가 대체로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이나 정치적 공무원의 선출시기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도의 긴급성도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보도와 관련하여서도 긴급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에 직결되고 일상적 삶의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상품이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서민피해로 이어지는 사기대출, 불법 다단계 사기 판매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인 국민이 당연히 그 위해성이나 안정성, 정상적 영업활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당위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기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10]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보도를 일별하여 보면, 대체로 보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보도의 긴급성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보도의 필요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것도 허다하다.

---

9) 다만 이 판결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은 아니다. 한편 제보자는 기자에게 허위 제보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다른 많은 점이 시사되어 있으나 이 글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 언급하지 아니한다).

10) 대법원도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에 관하여 보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가 보장되는 자유경제시장체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유시장체제를 저해하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보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보다 단순한 의혹제기가 자유시장체제를 저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이 많고, 그러한 유혹에 빠져드는 졸속 기사가 생겨날 우려가 많다. 따라서 기업보도에 있어서 단순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허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의혹제기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한 그와 관련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제품을 특정하여 보도하여야 한다(다만 동종 상품 모두가 위해 등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 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하여 보도하는 경우[11]에는 제품이나 기업의 특정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의 위법성이나 면책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확고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는 것이다.

공인에 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이나 면책기준도 위 기준에 따라 상당성의 법리를 보충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 주고 있다.[12]

한편 언론사[13]에 대한 비판기사의 허용 정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 같은 원칙 아래 다소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 주고 있다. 즉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업보도에 있어서 단순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고, 허용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11) 발암물질인 석면을 유출하는 건축자재 등, 다이옥신의 위해성과 그를 함유한 제품 등에 관련된 저간의 언론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12) 이에 관한 그간의 대법원 판결 등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전원열, 위 글 참조.
13) 언론사는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법리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14] 등 다수).

그런데 기업보도는 대체로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대한 검증 필요성, 비판의 자유 확대, 다양한 의견이나 여론 형성의 필요성, 다양한 가치관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한 열린 시각에서의 토론의 장의 활성화 등 표현의 다양성 확보와 자유로운 비판정신의 신장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기업보도 중 이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장과 분배 정책,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 대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환율 정책, 금리 정책, 금융구조 개선책, 민간경제나 환율, 금융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도, 정부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나 효율적 배분 등 경제 정책 등에 관련된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관한 기업보도에 관하여는 보도 내용의 공공성에 따라 가치관의 선택이나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앞서본 대법원의 언론의 면책기준에 대한 기본 원칙에 맞추어 완화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15]

그리고 특정 대기업의 고용 정책, 노동 정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분야에 관한 기업보도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그 정책이 사회적 · 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의 정도, 공공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종래의 공적 인물 이론을 유추 적용하여 그 면책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 평가, 성능 비교, 영업 능력 비교, 성장 동력이나 성장 가능성 비교 등에 관한 기업보도에 있어서는 그 보도 내용의 성질상 객관적이고 전문적 검증을 거친 진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생명이므로 종래의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에 관한 일반적 면책기준보다 오히려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책기준의 하나인 상당성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보도의 기초 자료의 수집이나 취재 형태와 취재자료의 충실성, 보도 내용의 충실성, 언론 보도의 의도는 물론 보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일별한 분류에 따르면, 결국 기업보도는 그 범위가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광범위하므로 언론의 면책기준에 관하여도 공적 인물 이론 등에서와 같이 일괄하여 모두 같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고, 기업보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종전의 원칙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으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치한 분류와 함께 면책기준의 완화나 강화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Ⅶ. 글을 마치며

기업보도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일별하는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가 많지 않고 관련 판결도 제대로 찾을 수 없어 종전의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밝혀 보았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쓴 것이나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니라 시론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 글을 계기로 관련 학자나 관련 종사자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기업보도에 관한 부분도 정치한 이론이 개발 · 정립되어 언론관계 법리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맺는다.

14) 다만 이 판결은 기존의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언론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평가받기도 한다(성낙송,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37쪽 참조).

15) 그러나 면책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로 공인 이론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2008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 동향

Ⅰ. 들어가는 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강행되었던 선진 취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미명아래 실시된 기자실 통폐합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의 언론과의 밀월기간이 역대 정부에 비하여 상당히 짧았으며 심하게 얘기하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윽고 2008년 4월에 방영된 MBC「PD 수첩」'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촛불시위와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고의적 오보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해당 방송사의 소송으로 번져 정정보도의 결정이 났으나 그 후유증은 아직도 커다랗게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소통의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가 서로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언론 · 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 · 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08년도에 우리 사법부가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결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의

성 선 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법무법인 해미르 미국변호사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프로그램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고찰하고,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적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광우병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본다. 이른바 광우병 방송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보도취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게재한 내용만이 아니라 보도의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

1. 개 요

원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8. 4. 29.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내보낸 내용에 대해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으며, 방송은 특정위험물질은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특정위험물질의 분류에 따르면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실적 주장과 논평 · 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의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2. 문제의 내용

MBC는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 중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하였으나, 일부 도축장에서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 downer cow)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였다.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2008. 4. 16. 사망하였는데 가족들과 주치의는 그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다.

③ 우리 정부는 2008. 4. 18. 미국 정부와 사이에,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 결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이전에는 뼈 없는 살코기의 수입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다.

④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⑤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⑥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⑦ 우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나, 직접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을 통하여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3. 판 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볼 때, MBC는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 ·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의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 중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광우병위험 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MBC의 주장과 같이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단 1회, 그것도 프로그램 끝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위 후속 보도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충분하게 보도가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이 발

견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종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와는 달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으로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으로 보았다. 즉 문제의 표현은 이 사건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고, 정정 내지 반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부분, MBC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부분은 정부의 협상 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것은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정정 내지 반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우선 쇠고기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소통의 부족이 과연 사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거리와 법원에서가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며 이 판결의 의의를 살펴본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경우 방송의 특성상 일부가 마치 전체에 대한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를 명하고, 반면 비판적인 의견표명의 자유를 인정하여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접근을 냉정하게 한 것으로서 법원의 고민이 엿보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명예훼손 소송

2008년 언론관계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이 주를 이루었다. 명예훼손 소송이 양적으로는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 동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첫째, 대법원 85다카29판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에 관하여 상당성의 법리가 제시된 이후 그 후의 판례에서도 상당성의 법리는 확고한 준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당성의 법리는 형법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인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언론의 면책범위를 확장한 판례이론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 특히 언론기관의 활동영역을 폭넓게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기관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상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사를 싣는 것이 어쩌면 본질적이고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거나 본인을 취재하기보다 제3자를 취재한 결과를 기사로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언론의 활

동공간이 넓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상당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으로 대법원은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에서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에서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를 근거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사안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둘째,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이른바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2008. 8. 13. 2008카기2967 판결에서 정청래(전 국회의원, 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가 요구한 반론보도

문을 기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인인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한 초등학교의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 ·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조선일보가 4차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4건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반론보도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 횟수와 동일하게 게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론보도청구 내용 중 보도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한 차례 반론을 게재하라"고 판결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별히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전형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공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Ⅳ.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

1999년 말에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 사주의 조세포탈 혐의 조사 및 구속과 이에 대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행태나 보도태도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사 간의 비판 내지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요즈음 언론매체가 미디어비평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비평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념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발하게 상호비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사 간의 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언론사 간의 상호비판 내지 감시활동은 언론이 하나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의 현실에서 언론계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경쟁 상대방 언론사의 언론보도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협한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비판, 때로는 경쟁에 치우친 악의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언론사 간 상호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고 독자나 시청자로부터도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고,[1] 언론사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있어 명예훼손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자유로운 언론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위축효과를 낳게 될 우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 언론사도 그 설립목적이나 감시와 비판, 여론형성 등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 또는 공적 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 존재 내지 공적 인물에 관한 법리를 이용하여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러나, 언론사 간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사나 그 소속 기자가 피고로 된 일반의 소송형태와 달리 언론사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는 점에서 유형적으로 구분이 되는데다가 언론사는 통상의 다른 공인과는 달리 스스로 반론 수단

1) 김재협, "언론사 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 기준", 『언론중재』2003년 겨울호, 16면.
2) 배병일, "언론사 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언론중재』2001년 겨울호, 4면.
3) 성낙송, "언론판례상 면책법리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2008년 겨울호, 35면.

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고, 언론 매체에 의한 공개적인 주장과 반박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으므로 보다 폭넓게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의 심사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4] 최근에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계속 선고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로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갑 방송사가 을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에서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나아가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며 개별적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정치 · 행정적 영역에서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의 법리를 그대로 언론사 간 상호 비판 및 감시활동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후의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갑 신문이 을 신문을 여당의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아니고, 강제투입부수만을 무가지부수로 보아 무가지 비율을 산정한 후 을 신문의 무가지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에서 위 2003다521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들 사이에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4) 김재협, "언론사 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언론중재』2003년 겨울호, 18-19면.

할 것이므로," 을 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갑 신문이 을 신문사의 사옥이전거부나 지하철 1호선이 을 신문사의 사옥을 우회하면서 급곡선으로 시공된 것이 언론권력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인한 것처럼 느낌을 주는 표현을 써서 기사를 게재하고, 을 신문사의 과거 친일행적이나 기자 대량해고 사태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 만평 등을 게재한 사건에 대하여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에서 역시 위 2003다521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한 후,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전 사주의 친일행적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친일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갑 언론사가 정치 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을 언론사를 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보도하는 기사 등을 게재한 사건에 대하여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위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상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종전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과는 달리, 명예훼손행위가 적시사실의 진실성이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을 벗어난 경우라도 악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아울러 악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사나 나아가 정치 · 행정적 영역을 비롯한 다른 생활영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상의 판례는 언론사 상호 간의 비판 및 감시활동에 있어서는 공적 존재인 언론사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치 · 행정적 영역에서 허용되는 특수한 심사기준과 유사한 개별적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 상호 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언론계 내부의 철저한 상호비판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수사적인 과장표현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가 있으므로 허용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V. 인터넷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8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열린우리당의 대변인 김현미가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으로 잘못 입력하여,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여옥 대변인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가 네이버에 이명박의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자, 피고 NHN은 그 제목을 '이명박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라고 축약하여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한 사건에 대하여 2008. 1. 16. 2006나92006 판결에서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므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선 위 3가지 기능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배포의 면에서, 네이버는 100여 개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루 평균 1만 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므로, 네이버는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편집의 면에서,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 사회 ·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 화제성 ·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며,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나 위 주요뉴스란의 공간적 제약으로 긴 제목을 축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네이버는 편집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취재의 면에서, 네이버가 자체 취재인력 없이 제휴 언론사들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게시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급변하는 사회 내의 모든 정보를 한 언론사의 취재 역량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네이버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이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들과 사이에 송고된 기사내용 그 자체에 대하여 수정 · 변경을 가할 수 없는 대신 그 기사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피고 NHN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인 다른 피고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내지 이에 관련된 사실의 보도는 물론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일반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취재시간의 제한이나 언론매체 간의 경쟁 과열 등의 사정으로 취재에 신중을 결하여 진실이 아닌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비록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 하더라도 당해 기사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기존의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기능을 갖추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언론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일단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송신기사가 게재되면 그 해당 인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NHN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적어도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Ⅵ.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전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MBC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사건은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

기 어려우나, 우선 쇠고기 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소통의 부족이 과연 사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거리와 법원에서가 아니라 국회와 언론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사실의 경우 방송의 특성상 일부가 마치 전체에 대한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를 명하고, 반면 비판적인 의견표명의 자유를 인정하여 의견 표명 또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접근을 냉정하게 한 것으로서 법원의 고민이 엿보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에 들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의 결과 2008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언론사 상호 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언론계 내부의 철저한 상호비판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수사적인 과장표현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가 있으므로 허용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8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헌법은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8년 언론관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정정보도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프라인과 동일한 책임을 계속 묻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은 해를 거듭하면서도 영원히 경종을 울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조정청구사건 954건 처리

위원회는 2008년 한 해 총 954건의 조정청구를 접수 ·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청구건수는 1,000건대를 넘어선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청구건수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비중 꾸준히 증가

이를 청구권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50.4%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청구가 34.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반론보도청구는 1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도입 첫해 16%(141건)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기관의 조정청구건수 대폭 감소

신청인 유형별로는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단체 18.8%, 회사 14.8%,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5.5%, 국가기관 3.4% 등의 순서를 보였다. 신청인 유형 중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국가기관 청구건수는 32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의 151건에 비해서는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서는 69건이 감소한 것이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청구 비중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2008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각 매체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이 가장 높은 58.1%(554건)로 나타났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19.8%(189건)와 16.5%(157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중이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청구건수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대비 9.4%p, 2007년 대비 5.7%p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접수 방문접수보다 근소하게 앞서

2008년 청구사건을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37.5%(358건)를 나타내 통상 가장 많은 접수유형을 차지해왔던 방문접수(37.1%, 354건)를 넘어섰다. 인터넷접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첫해인 2005년에 15.5%를 나타낸 후 2006년 22.9%, 2007년 29.8%를 차지해 해마다 7~8%p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율 72.9%로 위원회 설립이후 가장 높아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여 피해가 구제된 비율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피해구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은 2007년의 64.8%보다 8.1%p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954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2.1%(402건), 직권조정결정 5.5%(52건), 조정불성립결정 13.1%(125건), 기각 2.2%(21건), 각하 0.4%(4건), 취하가 36.7%(350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리결과 중 조정성립률의 경우 전년(34.4%)보다 7.7%p 높아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피해구제율 72.0%, 손해배상액 평균 약 333만원

손해배상청구 324건 중 115건(35.5%)이 조정성립되었으며, 18건(5.6%)이 직권조정결정, 51건(15.7%)이 불성립결정, 134건(41.4%)이 취하, 6건(1.8%)이 기각 · 각하되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이 약 333만 원, 최대액은 1천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 중간액은 275만 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액과 중간액의 경우, 전년에 비해 20~70여만 원 상승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사건 324건의 67.3%인 218건의 경우,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287건(88.6%)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등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는 34건(10.5%)이었다.

중재사건 10건 처리

한편, 위원회는 조정사건 외 쌍방 당사자가 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한 10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건은 손해배상청구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정정청구였다. 중재사건 10건 중 5건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4건은 명예훼손, 나머지 1건은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다.

시정권고 282건,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큰 폭 증가

또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제3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자체심의건 중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192(68.1%)건으로 개인적 법익침해 건수 90(31.9%)건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년도에 82건으로 41% 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적 법익침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954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이러한 청구건수는 2007년의 1,043건에 비해 89건이 감소한 것으로 1,000건대를 넘어선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청구건수이다. 다만 청구건수는 언론중재법이 시행 2년째를 맞이했던 2006년의 1,087건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데는 국가기관의 조정청구가 감소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한 해 국가기관의 조정청구는 32건에 그쳐 2006년의 151건에 비해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 69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9건의 국가기관 청구건수 감소분은 2007년 대비 2008년의 전체 청구건수 감소분 89건의 77.5%를 차지한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청구건수	759	883	1,087	1,043	954
전년대비 증감	35	124	204	△44	△89

2. 중재부별 청구건수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 \ 연도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서 울	709	65.2	644	61.7	607	63.6
부 산	42	3.9	25	2.4	24	2.5
대 구	31	2.9	32	3.1	30	3.1
광 주	55	5.1	63	6.0	46	4.8
대 전	29	2.7	41	3.9	32	3.4
경 기	113	10.4	84	8.1	108	11.3
강 원	14	1.3	14	1.3	15	1.6
충 북	13	1.2	23	2.2	19	2.0
전 북	50	4.6	65	6.2	39	4.1
경 남	20	1.8	37	3.5	27	2.8
제 주	11	1.0	15	1.4	7	0.7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63.6%, 지역중재부가 36.4%로 나타나 주요 매체를 대부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재부의 사건처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 1개 중재부의 처리건수는 평균 101건으로 이는 지역 1개 중재부의 평균 처리건수 34.7건에 비해 약 2.9배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중재부 중 경기중재부의 경우에는 2008년 한 해 108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해 서울중재부 평균 청구건수보다 오히려 많았다.

경기중재부에 이어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광주중재부와 전북중재부가 각각 46건과 39건을 처리해 비교적 높은 청구건수를 보였다.

3. 청구권별 청구건수

각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 50.4%, 손해배상청구 34.0%, 반론보도청구 13.3%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소폭(2.4%p) 줄어든 반면 반론청구는 약간(2.3%p) 늘어났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정청구나 반론청구 혹은 추후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해서 제기한 사건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가폭은 2007년 대비 0.5%p의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 대비 2007년의 손해배상청구 증가폭 4.2%p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연도 / 청구명	2006		2007		2008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546	50.2	551	52.8	481	50.4	1,578	51.2
반 론	211	19.4	115	11.0	127	13.3	453	14.7
추 후	12	1.1	28	2.7	22	2.3	62	2.0
손 배	318	29.3	349	33.5	324	34.0	991	32.1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3,084	100.0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건수

연 도 / 청구명	2006		2007		200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정 · 손배	198	65.6	232	83.8	211	72.8
정정 · 반론	57	18.9	19	6.9	17	5.9
반론 · 추후					1	0.3
반론 · 손배	16	5.3	12	4.3	12	4.1
추후 · 손배	10	3.3	5	1.8	13	4.5
정정 · 반론 · 손배	20	6.6	9	3.2	35	12.1
정정 · 추후 · 손배	1	0.3			1	0.3
계	302	100.0	277	100.0	290	100.0

2008년 병합청구된 사건은 모두 290건이었는데, 이중 정정과 손해배상을 병합청구한 것이 7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정 · 반론 · 손배 청구사건이 12.1%를 차지, 뒤를 이었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과 손해배상이 병합청구된 비율은 11.0%p 감소한 반면, 정정 · 반론 · 손배 병합청구된 비율은 오히려 8.9%p 증가했다.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2008년 청구된 954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단체 18.8%, 회사 14.8%,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5.5%, 국가기관 3.4%, 교육기관 1.5%, 종교단체 1.2%의 순서를 나타냈다.

신청인 유형 중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국가기관 청구건수는 32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의 151건에 비해서는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서는 69건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신청인 유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일반단체의 청구건수 비중이 회사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2007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 신청인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개 인	529	48.7	525	50.3	523	54.8
국가기관	151	13.9	101	9.7	32	3.4
지자체 · 공공단체	46	4.2	62	5.9	52	5.5
일반단체	172	15.8	145	13.9	180	18.8
종교단체	9	0.8	10	1.0	11	1.2
회 사	145	13.3	176	16.9	142	14.8
교육기관	35	3.2	24	2.3	14	1.5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2008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각 매체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이 가장 높은 58.1%로 나타났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19.8%와 16.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기존의 조정대상의 60~70%를 차지하던 신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온 반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율은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청구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청구사건의 비율은 2006년 대비 9.4%p, 2007년 대비 5.7%p의 증가폭을 나타내 조정청구 대상매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인터넷신문 대상 청구건수인 157건은 방송 대상 청구건수인 189건의 83.1%에 육박하는 것으로 인터넷신문이 이미 주요 조정청구대상으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 매체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신 문	752	69.2	634	60.8	554	58.1
방 송	216	19.9	250	24.0	189	19.8
잡 지	25	2.3	10	1.0	12	1.3
뉴스통신	17	1.6	30	2.9	33	3.5
인터넷신문	77	7.1	113	10.8	157	16.5
기 타		0.0	6	0.6	9	0.9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이를 매체 세부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의 청구건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청구건수는 지상파TV(158건)와 비교해 볼 때 1건밖에 적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인터넷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4.6%와 19.8%로 매체 세부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년에 비해 그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다.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에 대한 조정청구가 가능해져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7〉 매체 세부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터넷 신 문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TV	라디오	종합유선 방송				
954	235	189	130	158	4	27	12	33	157	9
100.0(%)	24.6	19.8	13.6	16.6	0.4	2.8	1.3	3.5	16.5	0.9

6. 주된 침해유형

조정대상 보도의 침해유형은 몇 가지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침해사항 하나만을 주된 침해로 분류하면 명예훼손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 이외의 인격권 침해 비율은 전체 대비 4.8%에 그쳐 2007년의 7.7%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2006년 5.5%에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한 것이다. 명예 이외의 인격권 침해 청구건 46건 중에서 초상권 침해가 63.0%(2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성권 침해가 많았다.

〈표 1-8〉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 주된 침해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명예훼손	1,004	92.4	953	91.4	899	94.2
신용훼손	17	1.6	2	0.2	6	0.6
초상권침해	48	4.4	53	5.1	29	3.0
음성권침해	7	0.6	12	1.2	10	1.0
성명권침해	1	0.1	3	0.3	4	0.4
프라이버시침해	4	0.4	11	1.1	3	0.3
기 타	6	0.6	9	0.9	3	0.3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이 침해된 46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상이나 음성 또는 성명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해 문제가 된 것이 대다수(40건, 86.9%)였다. 그밖에 동의는 있었지만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표함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가 4건, 보도내용과 무관함에도 자료화면으로 초상등이 공표된 사례도 2건 있었다.

〈표 1-9〉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40	86.9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4	8.7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4.3
계	46	100.0

8. 조정대상기사의 분야

2008년 조정대상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 등을 다룬 사회기사 비중이 70.5%에 이르렀으며, 정치 · 선거 관련기사 6.3%, 스포츠 · 연예기사 4.3%, 경제 · 산업기사 3.7%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 · 연예 관련기사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3.1%p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10〉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정치 · 선거	60	6.3
국방 · 외교	1	0.1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경제 · 산업	35	3.7
사회(사건/사고/고발)	673	70.5
보건 · 복지	28	2.9
스포츠 · 연예	41	4.3
레저 · 생활	7	0.7
환 경	4	0.4
종 교	33	3.5
노 조	28	2.9
교 육	16	1.7
미 디 어	12	1.3
기 타	16	1.7
계	954	100.0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방송매체를 제외한 신문 · 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기사의 형식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81.2%로 가장 많았고, 탐사 · 심층 · 기획보도 8.0%, 논단 및 칼럼기사 2.6%, 비평기사 2.5%, 사설기사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논단 및 칼럼 또는 비평기사를 모두 더하면 7.2%(55건)로 그 비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유형 기사들의 경우 주로 의견의 전제사실이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1〉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621	81.2
사 설	16	2.1
논단 및 칼럼	20	2.6
인 터 뷰	5	0.7
외부필자 기고	9	1.2
비 평	19	2.5
탐사 · 심층 · 기획보도	61	8.0
사 진	6	0.8
가 십	2	0.3
기 타	6	0.8
계	765	100.0

방송을 상대로 조정청구된 189건을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살펴보면, 뉴스가 68.3%로 가장 많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16.4%, 교양 프로그램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는 적지만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조정청구도 7건 있었다.

〈표 1-12〉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수	비율(%)
뉴 스	129	68.3
시사고발	31	16.4
토 론	1	0.5
교양정보	16	8.5
연예, 스포츠	3	1.6
다큐멘터리	7	3.7
기 타	2	1.0
계	189	100.0

10. 접수유형

2008년 청구된 954건을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358건, 37.5%)가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가장 많은 접수유형을 차지해왔던 방문접수(37.1%)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접수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터넷접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첫해인 2005년에 15.5%를 나타낸 후 2006년 22.9%, 2007년 29.8%를 차지해 해마다 7~8%p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용자 중심의 웹2.0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3〉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 접수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방 문	580	53.4	454	43.5	354	37.1
우 편	245	22.5	251	24.1	233	24.4
인 터 넷	249	22.9	311	29.8	358	37.5
구 술	13	1.2	27	2.6	9	0.9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제2장 조정처리결과 현황

1. 처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2.1%, 직권조정결정 5.5%, 조정불성립결정 13.1%, 취하 36.7%, 기각 2.2%, 각하 0.4%로 각각 집계되었다. 조정성립률은 전년에 비해 7.7%p 높아진 반면 불성립결정률은 5.5%p 낮아졌다. 조정성립률은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권 조정결정의 경우 동의율이 2007년은 40.7%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67.3%에 이르러 직권조정결정 10건 중 6~7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청구건수 (%)	처리결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100.0(%)	32.8	2.7	2.6	20.8	2.0	1.2	38.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여 피해가 구제된 비율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접수 · 처리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피해구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은 2007년의 64.8% 보다 8.1%p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 · 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954	25	929	677	72.9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조정건수 = 청구건수 - 기각 · 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조정결정 중 동의건수+(불성립결정건 또는 직권조정결정 중 이의신청건 또는 취하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건수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반론청구가 75.8%, 정정청구 72.8%, 손배청구 72.0%, 추후청구 70.0%로 각각 나타나 청구권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70.0%를 넘는 고른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각각 9.1%p와 8.9%p 상승했다. 정정청구의 피해구제율이 70.0%대를 넘어선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 있는 일이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2007년의 22.1%에 비해 13.4%p 상승한 35.5%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에 통상 80~90%대의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던 추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전년대비 10.8%p 낮아진 점은 다소 특이하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계속							
2006	정정	546	220	13	10			108	(1)	14	12	169	(90)	62.3
	반론	211	79	6	8			37	(1)	2		79	(42)	61.2
	추후	12	8					1				3	(3)	91.7
	손배	318	49	10	10			80		6	1	162	(115)	55.9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정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반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추후	28	7					2		2		17	(14)	80.8
	손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정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100.0(%)	45.7	3.7	1.9			12.5		1.7	0.4	34.1		
	반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100.0(%)	44.1	4.7	0.8			9.4		5.5		35.4		
	추후	22	11					2		2		7	(3)	70.0
		100.0(%)	50.0					9.1		9.1		31.8		
	손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100.0(%)	35.5	3.4	2.2			15.7		1.2	0.6	41.4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90.9%로 가장 높고, 국가기관 78.1%, 개인 75.7%, 회사 69.9%, 일반단체 69.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66.7%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하는 개인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이 2007년의 63.8% 대비 1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의 청구가 전체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상승도 눈에 띈다. 이 유형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66.7%로 전년의 53.2%보다 13.5%p 높아졌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6	개 인		529	163	20	15		93		16	2	220	(128)	60.9
	단체	국가기관	151	66	3	7		30		1		44	(35)	69.3
		지자체·공공단체	46	17	4	1		10		1		13	(8)	64.4
		일반단체	172	55	2	5		34		3	11	62	(36)	58.9
		종교단체	9	1				8						11.1
		회사	145	35				49	(2)	1		60	(34)	49.3
		교육기관	35	19				2				14	(9)	8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개 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단체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인, 조합대표 및 협회장, 학생 등이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고, 시민활동가, 교육자, 개인사업가 등도 평균보다 높은 75.0%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한편, 넓게 보아 공직자로 묶을 수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군인 · 경찰, 기초 · 광역 단체장 또는 의원의 경우, 평균 피해구제율이 66.1%에 머물러 전체 피해구제율 72.9%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사업가의 피해구제율 75.0%와 비교할 경우, 8.9%p 가까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조정결과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인과 사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 직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22	8	1		6				7	(6)	72.7
법조인	2				2						0.0
공무원	23	7	3		5				8	(4)	60.9
군인/경찰	38	9	2	2	4				21	(16)	71.1
기초광역단체장/의원	35	13	2		9				11	(7)	62.9
정당정치인	7	3							4	(2)	71.4
의료인	14	5			2				7	(5)	71.4
문화예술인	9	6							3	(3)	100.0
종교인	26	12		2	6		1		5	(5)	68.0
회사원	24	9	2	1	5				7	(5)	66.7
언론인	11	4			4		1		2	(1)	50.0
교육자	47	25	4		3				15	(8)	78.7
개인사업가	68	28	4		7				29	(19)	75.0
금융업종사자	1								1		0.0
학 생	11	7							4	(3)	90.9
시민활동가	15	12							3	(1)	86.7
조합대표협회장	25	14					3		8	(7)	95.5
기타	145	59	2	1	16	(2)	8		59	(50)	82.5
계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	100.0	42.3	3.8	1.1	13.2		2.5		37.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뉴스통신이 93.9%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80.4%, 신문 74.9%, 방송 58.9%, 잡지 5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피해구제율 72.9%와 비교해 본 결과,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은 전체 피해구제율보다 각각 21.0%p와 7.5%p 높은 반면, 방송매체와 잡지는 전체 피해구제율보다 각각 14.0%p와 22.9%p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 유형에 따라 피해구제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2007년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과 비교해보면 뉴스통신의 경우 28.4%p, 인터넷신문의 경우 15.4%p 각각 높아졌다. 2008년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가 전체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달하고 이 비율이 전년(10.8%)대비 5.7%p가 늘어난 것임을 감안해본다면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율 상승은 2008년 전체 피해구제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6	신 문	752	242	20	16		144		13	7	310	(193)	62.2
	방 송	216	57	8	9		66	(2)	2	5	69	(30)	46.4
	잡 지	25	17	1	1		2				4	(2)	80.0
	뉴스통신	17	6				1		2	1	7	(7)	92.9
	인터넷신문	77	34		2		13		5		23	(18)	72.2
	기 타	0											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신 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 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 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 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신 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 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 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 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음성권이나 성명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유형에서 90.0% 이상의 대단히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유형의 경우 전체 피해구제율 72.9%에 근접하는 72.4%의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초상권 침해유형은 그보다 약간 높은 75.0%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용훼손의 경우, 66.7%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6	명예훼손	1,004	318	20	25		213		20	13	395	(238)	59.3
	신용훼손	17	5	2			5	(2)			5	(4)	76.5
	초상권	48	27	6	3		5				7	(3)	75.0
	음성권	7	4	1							2	(1)	85.7
	성명권	1					1						0.0
	프라이버시	4	1				1				2	(2)	75.0
	기 타	6	1				1		2		2	(2)	7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5	(2)	60.0
	기 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명예훼손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용훼손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 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08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액의 평균은 약 333만 원, 최고액은 1,0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 중간액은 275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액만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중간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에 비해서는 75만 원, 2006년에 비해서는 125만 원이 증가했다. 소폭이나마 손해배상조정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권리구제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참고로, 조정액 평균 333만 원은 2008년 중재사건의 중재액 평균인 232만 원보다 약 100만 원이 많다.

〈표 2-8〉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분 / 연도	청구액				조정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10,000	3,000,000,000	109,545,629	25,000,000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9.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조정액을 살펴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10건 중 6건 꼴로 100~50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0~500만 원 사이의 분포율이 34.4%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 원 사이가 28.1%로 그 다음이었다. 그밖에 500~1,000만 원 사이는 18.8%, 1,0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미만이 각각 11.3%를 나타냈다.

2008년 조정액의 경우 2006년이나 2007년과 달리 200~500만 원 사이의 분포비율이 100~200만 원 사이의 분포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조정액이 소폭이나마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9〉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분 / 연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
2006	7	15	11	1	6	40
%	17.5	37.5	27.5	2.5	15.0	100.0
2007	4	19	15	9	5	52
%	7.7	36.5	28.8	17.3	9.6	100.0
2008	3	9	11	6	3	32
%	9.4	28.1	34.4	18.8	9.4	100.0
계	14	43	37	16	14	124
%	11.3	34.7	29.8	12.9	11.3	100.0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조정사건과 별도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신청한 건수는 10건으로 전년의 14건보다 4건 줄었다. 이를 주된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 침해가 5건, 명예훼손이 4건, 음성권 침해가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8년까지 접수 · 처리된 31건의 주된 침해유형을 보면, 초상권이 64.5%(2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초상권 침해가 다른 경우보다 인격권 침해여부를 가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구분 / 연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2008	10	4		5		1		
계	31	7		20	1	1	2	
%	100.0	22.6		64.5	3.2	3.2	6.5	

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2008년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보면 손해배상청구건이 대부분(90.0%)이다. 중재사건을 3년간으로 묶어볼 경우 전체 중재사건 31건 중 26건인 83.9%가 손해배상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의 배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필요해 보이는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가 위자료 산정을 중재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구분 / 연도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6	정정	1	1					
	반론	1	1					
	손배	5	5					
	계	7	7					
2007	정정	2	2					
	반론							
	손배	12	12					
	계	14	14					
2008	정정	1	1					
	반론							
	손배	9	9					
	계	10	10					

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2008년 손해배상 중재사건의 중재액 평균은 약 232만 원으로 중재사건의 청구액 평균 약 1,589만 원의 14.6% 수준이다. 중재 최고액은 4백만 원, 최저액은 90만 원이었고 중간액은 200만 원이었다. 이러한 액수는 2007년의 평균액 등과 비교해 볼 때 약 70~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08년 중재액 평균은 2008년 조정액 평균인 333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적은 것이다.

〈표 3-3〉 손해배상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구분 / 연도	청구건수	청구액				중재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5	10,000,000	30,000,000	22,000,000	20,000,000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12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2008	9	5,000,000	30,000,000	15,888,889	15,000,000	900,000	4,000,000	2,322,222	2,000,000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2건(청구건수 17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은 3건, 양당사자 모두가 이의신청한 것은 1건이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 결과는 인용이 5건, 취하와 기각이 각 1건, 계속이 5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쳐 법원에 자동 소제기된 사건의 1심 결과는 2007년의 경우, 인용률(인용건수/소취하 제외 소송건수)이 92.9%에 이르렀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현황 및 법원 1심 판결결과

구분 / 연도 / 건수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2006	24	6	6	8	2	2	4	20		16	4	4	
2007	21	6		4	10	1	1	17	3	13	7	1	
2008	12	4		3	4	1	3	8	1	5	1	1	5
계	57	16	6	15	16	4	8	45	4	34	12	6	5

※1심 결과에 나타난 인용건수 합계 34건에는 화해권고결정 8건과 강제조정결정 4건이 포함되어 있음

〈표 4-2〉 2008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구분 / 매체명 / 건수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각하	계속
국제신문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연합뉴스	1				1		1					1	
월간조선	1	1						1					1
장로교연합신문	1				1			1					1
하나로신문	1	1						1					1
함평신문	1			1					1	1			
해남타임즈	1				1		1			1			
MBC	4	1		2		1		4		3	1		
계	12	4		3	4	1	3	8	1	5	1	1	5

연도별 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08. 12. 31.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계	12,318	4,112	249	229	(27)	2,393	(272)	305	76	4,954	(2,642)	61.2%
	100.0%	33.4%	2.0%	1.9%		19.4%		2.5%	0.6%	40.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 중 재

구분 /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조정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계	31	31					

● 시정권고현황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제3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8. 12. 31.

구분 / 권고건수 / 연도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적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0															
1985	0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
계	5,477	717	133	1,826	1,033	289	1,004	325	150		4,936	97	16	251	174	3
	100%	13.1%	2.4%	33.3%	18.9%	5.3%	18.3%	5.9%	2.7%		90.1%	1.8%	0.3%	4.6%	3.2%	0.1%

가.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08년에는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건수가 192건(68.1%)으로 개인적 법익침해건수(90건 31.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년도에 82건으로 41%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적 법익 침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상세 묘사 92건(32.6%),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묘사 및 성 관련 선정보도) 73건(25.9%),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공개 48건(17.0%), 사생활 침해 30건(10.6%),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27건(9.6%), 목격자 · 신고자 · 피해자 신원공개 8건(2.8%),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나.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008년 한 해 동안 자체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결정한 282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지가 121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신문 111건(39.4%), 뉴스통신 30건(10.6%), 주간지 19건(6.7%), 월간지 1건(0.4%) 순이었다. 일간지 121건 가운데서는 지역일간지가 90건(74.4%)으로 집계돼 전년도(126건 중 105건, 83.3%)와 마찬가지로 중앙일간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인터넷신문이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된 이후 2006년 16건, 2007년 43건, 2008년 111건으로 해마다 시정권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년도에는 43건으로 일간지(126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11건으로 크게 늘어 일간지(121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 2008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08. 1. 1. ~ 2008. 12. 31.

구분 / 간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일간지	중앙	31	2		2		4	1	13	9	
	지역	90	1		27	5	6	11	26	14	
주간지	종합	10						5	2	3	
	지역	9	1		3		1	4			
월간지		1								1	
뉴스통신		30			10	2		3	8	7	
인터넷신문		111			6	1	19	3	43	39	
총 계		282	4	0	48	8	30	27	92	73	
		100%	1.4%	0.0%	17.0%	2.8%	10.6%	9.6%	32.6%	25.9%	

다. 신청심의 현황

2008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신청은 총 26건이 접수되어 2007년도 39건에 비해 13건이 감소했다. 매체별로는 방송 11건(42.3%), 일간지 6건(23.1%), 인터넷신문 4건(15.4%), 뉴스통신 3건(11.5%), 기타매체 2건(7.7%) 순이었으며, 침해법익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관련 18건(69.2%), 사회적 법익 관련 8건(30.8%)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6건 중 7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져 시정권고율은 26.9%를 기록했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7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 3건(42.8%), 방송 2건(28.6%),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각 1건(14.3%)이었다.

〈표 3〉 2008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2008. 1. 1. ~ 2008. 12. 31.

구분 / 간별		계	신청유형				처리결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타	시정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일간지	중앙	6	5	1			3			3	
	지역	0									
주간지	종합	0									
	지역	0									
방송		11	8	3			2	8			1
월간지		0									
뉴스통신		3	1	2			1	1		1	
인터넷신문		4	2	2			1			3	
기타		2	2							2	
총계		26	18	8	0	0	7	9	0	9	1
		100%	69.2%	30.8%	0.0%	0.0%	26.9%	34.6%	0.0%	34.6%	3.8%

"Guardian, Elton Jone과의 풍자적 표현 관련 소송에서 승리"

「Guardian」은 Elton Jone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명 인사를 비판하기 위해 기자가 풍자적 표현을 쓸 권리를 인정받았다. 언론에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The Sun」을 상대로 사상 최고의 명예훼손 보상액을 받아낸 적이 있는 팝스타를 상대로 언론이 승리한 것은 의외의 일이다.

Elton Jone은 Marina Hyde가 자신의 일기에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룬「Guardian」의 6월 5일자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기사는 Elton Jone의 '비상식적으로 사치스러운' 연례 자선 행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비용을 줄이면, 남는 것은 재단으로 간다. 나는 이것을 '자선 경제 (care-o-nomics)'라고 부른다"고 보도했다.

Elton Jone은 White Tie and Tiara Ball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자선기금으로 3천8백만 파운드 이상을 모았지만, 「Guardian」의 기사는 마치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조성 기금의 일부만이 재단으로 돌아가는 행사를 주최하고, 그의 재단과 재단이 지지하는 좋은 일들을 위해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유명 인사를 만나거나 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는 그릇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Hyde는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기사를 써 가중된 손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에서 Tugendhat 판사는 이 사건 판단은 맥락을 살펴야하며, 해당 기사가 신문의 뉴스란이 아닌 주말 섹션에 보도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기사가 'Elton Jone의 일기 엿보기' 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상식적인 독자라면 그것이 Elton Jone이 직접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lton Jone은 그 기사가 웃자고 쓴 것임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비열한 공격'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ugendhat 판사는 그 기사에 대해 '상식적인 독자라면 「Guardian」의 주말 섹션을 Elton Jone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판사는 '그 기사가 뉴스란에, 유머 없이 실렸다면 상식적인 독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Press Gazette 2008년 12월 15일자)*

"원정 소송을 이유로 기각 판결 함부로 할 수 없어"

Beatles의 John Lennon에 의해 'Magic Alex' 라고 불렸던 사람이 「New York Times」 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Eady 판사는 해당 사건이 '원정 소송' 중의 하나라며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판결은 잘못됐다며, 기사가 영국에서 발행되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원고인 John Alexis Mardas는 이곳(영국)에서 명성이 있는 만큼, 법정에서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Beatles' Apple Electronics사의 전 대표인 Mardas는 두 언론사의 2008년 2월 7일자 지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Beatles가 1967년과 1968년 긴밀한 인연을 맺었던 인도의 종교 지도자 Maharishi Mahesh Yogi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Mardas는 기사가 자신을 사기꾼이며 Beatles를 위한 어떤 가치 있는 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탁월한 발명가라고 비꼬고, Maharishi가 그를 방문한 한 여성을 그의 거처로 꾀어냈다는 루머를 퍼뜨려 Maharishi와 Beatles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이 자신의 명성에 미미한 손상을 입을을 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Eady 판사는 Master Leslie 고등법원 판사가 큰 규모의 재판에 얽혀 치룰 비용과 수고를 걱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원고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는 없으며, 또한 명예훼손적인 주장이 오래전의 사건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

라고 말했다. 판사는 또 기자는 명백히 그 주장이 독자들 사이에 화제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ady 판사는 현명한 조정을 통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재판을 막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은 소송 당사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해당 상황을 원정 소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ady 판사는 머지않아 인터넷 보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원은 관련법을 그 원칙에 따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ady 판사는 Mardas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과 법적으로 상당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의 논리를 세울 수 있다면, 그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원정 소송'을 비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원이 왜 사법 심사를 거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Mardas가 현재 (EU에 속해 있는) 그리스 주민이긴 하지만 1963년부터 1996년까지 여기서 살았을 뿐 아니라 영국 국적을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두 아들이 있고, 사법권이 미치는 이곳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과거에 다른 소송을 진행한 것처럼 그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피고의 변호인 측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해당 신문이 많이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영국법은 원고가 이 지역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실 증명과 보상을 요구할 관리가 있다고 본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이 사법권 관할 내의 것이라면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정된 판례라고 말했다. 단, 그는 미국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Press Gazette 2008년 12월 23일자)*

"BBC1 과 Radio Times, 사기 행위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배상금 지불"

Manchester의 한 치기공사(Dental Technician)가 자신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BBC」의 공식적인 사과와 5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BBC」는 그가 자동차 금융사기로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치과 임플란트 회사에서 근무하는 Mohammed Amar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들어 「BBC」의 프로그램 "Cars, Cops and Criminals" 2008년 7월 9일 방송분과, 15일 재방송분, 그리고 「Radio Times」 5월 11일 판을 고소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BBC」는 사과와 함께, 그에게 5만 파운드의 배상금과 이 사건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

David Eady 판사 주재의 고등법원 심리에서 Amar의 변호인 Victoria Shore는 해당 프로그램이 의뢰인을 급습해 체포하는 것을 방영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론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Amar의 이름과 얼굴이 노출되면서 신원이 알려졌으며, 프로그램은 Amar가 자동차 금융 사기와 관련 기소됐고, 자동차 사기와 연루되어 유죄라고 보도했으며, 「Radio Times」는 프로그램 편성표에서 사진을 게재하여 Amar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그의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에게 그 사진은 Amar가 도둑이며, 자동차 금융사기에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mar는 사실 기소된 적이 없고, 체포된 당일 날 풀려났으며, 그가 자동차 금융 사기와 관련된 도둑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BC」의 변호인인 Jacob Dean는 「BBC」는 Amar의 집까지 들어가 보도한 것을 포함, 해당 프로그램과 「Radio Times」의 보도가 끼친 손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2009년 1월 13일자)*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혁 시급"

「Guardian」의 Alan Rusbridger 편집장은 탐사 저널리즘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명예훼손법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ew York Review of Books」의 기고문에서, 그는 '명예훼손 소송 왕국' 인 영국의 '의심스러운 평판' 과 소송비용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언론사들이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담긴 기사들을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Guardian」이 9월 Tesco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Tesco는 「Guardian」이 대형 슈퍼 체인의 조세회피 계획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Rusbridger는 Tesco 사건과 관련, 기업 저널리즘이 악명 높게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 한다며 기업의 회계, 연례보고서, 소송 등에 나타난 정보를 다루는 훈련을 받은 기자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Tesco의 세금 경영에 관한 맨 처음의 보도가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슈퍼마켓 체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경험이 많고 회계에 능숙한 기자라도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Tesco의 소송 제기 이후, 어떤 신문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확장을 도모하는지에 대해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usbridger는 Guardian News and Media 그룹이 평가한 것에 기초, Tesco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양측이 결국 5백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8개월간의 공방전은 9월 신문사가 1면에 사과문을 개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해결의 정확한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1975년 한 보도에서 기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하자고 제안한 이래로 영국의 명예훼손법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기업들이 공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독자들이 보다 더 많고, 심도있는 보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복잡한 재계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의한 조세회피 방법이 점점도 복잡해지고 있지만, 언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진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어떠한 여론의 압력도 받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고문에서 이러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보도하는 것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좀더 보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심각한 금융 위기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언론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Press Gazette 2008년 12월 30일자)

법원, 실명보도에 이례적 보충발언(附言) - "피고인의 불이익에 배려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청소년보호육성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공립중학교의 한 교사가 자신의 체포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NHK」와 오키나와 현의 민간방송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후쿠오카(福岡)고법 나하(那覇)지부는 지난 해 10월 28일자 보도는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 1심 나하지법의 판결과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실명보도를 할 때는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례적인 보충발언(附言)을 했다.

판결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인 교사는 2007년 3월 소녀들에게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1월에 기소유예처분(불기소)을 받았다.

재판부는 4개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공공의 중대한 관심사이므로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높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은 보도의 정확성 ·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익명보도가 아

닌 실명보도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명보도를 할 때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체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 그치고 범죄인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체포된 사실을 보도했으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결과를 보도하지 않는 보도기관의 자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의 항소심판결을 보도할 때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보도기관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신문협회보 2008년 11월 4일자)***

잡지의 표지와 신문광고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週刊現代」의 기사와 광고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캐논과 캐논의 御手洗富士夫 회장이 발행원인 講談社를 상대로 2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2008년 12월 25일 표지와 신문광고의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 講談社에 200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7년 10월 20일호 '캐논 御手洗 회장과 731부대' 라는 제목의 표지와 신문광고이다. 판결에 의하면 잡지는 御手洗 회장의 숙부인 캐논의 초대사장이 전전(戰前)에 유독가스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는데 숙부의 지도교수 수제자가 구 일본군의 731부대의 창설자였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표지와 신문광고에 대해 "서점에서 잡지의 표지를 보면서도 기사를 보지 않는 사람과 신문에서 광고를 보더라도 본문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오해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의 생략이나 과장은 부득이하다"면서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부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것은 사회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9년1월20일자)***

영국의 법정취재 규제 완화 징조, 공소국 장관 "영상촬영 원칙지지"

보도기관에 의한 법정에서의 텔레비전 · 카메라 사용이 오랫동안 금지되어 온 영국에서 '규제 완화' 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온 데 이어 잉글랜드 · 웨일즈 지방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영국 내에서는 그 동안 정보화사회의 성숙에 따라 시민이나 미디어뿐 아니라 법조계에서까지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영국 공소국(公訴局)의 스타머 장관은 지난 1월 9일 잉글랜드 · 웨일즈지방의 법정에서 형사사법체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연설을 하면서 텔레비전 · 카메라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 사법의 투명성과 보도기관 사이의 협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연설 후 보도진에 대해 "재판은 가급적 공개되고 투명해야만 한다.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사례에서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나 카메라 사용은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 웨일즈지방의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은 1920년대 중반까지는 인정되었으나, 1925년 '형사사법법' 이 시행되면서 법정 내에서의 인물의 사진 촬영이나 출판을 목적으로 한 초상화 묘사(描寫)가 금지되었다.

(신문협회보 2009년 1월 27일자)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북스 부도설 및 구조조정 보도 관련 조정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합의)

중앙북스(신청인)는 신청인 회사가 부도설에 휩싸인 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북스는 경영효율을 꾀하기 위해 직원 일부를 '1인 출판 기업' 형태인 인프린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이는 구조조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다른 출판사는 A, B사로 소개하며서 유독 중앙북스는 실명을 거론했을 뿐 아니라, 실명이 함께 거론된 '21세기북스'는 해당 사 임직원의 인터뷰를 게재했으나 신청인 회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취재조차 하지 않아, 아무런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는 중앙북스 직원들을 취재하는 등 충분한 취재를 통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부도설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을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인프린트 방식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내보내기로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앙북스(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도서의 계절 사라진 출판계 위기의 계절'』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3일자 A20면)

내 용 : (전략) 최근 출판사 구조조정과 서점 부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발행부수 등 출판 관련 통계에서도 위기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게다가 출판사들은 종이값과 인쇄비가 오른 데다 환율까지 뛰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현재의 불황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보기엔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중앙북스 구조조정 단행

최근 들어 대형 출판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의 출자로 출범한 출판사인 중앙북스는 지난달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뒤 그들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내는 임프린트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10대 메이저 출판사 중 하나로 꼽히는 A사와 전통 있는 인문 출판사로 인정받던 B사에 대해서도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직원을 감축한 출판사도 여러 곳이다. '마법 천자문' 시리즈 1000만부 판매를 넘어선 21세기북스도 지난해 16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줄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앙북스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2008년 10월 23일(목)자 기획면(A20면)에 게재된 '독서의 계절 사라진 출판계 위기의 계절'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북스 구조조정 단행' 이란 소제목을 달고 "중앙일보의 출자로 출범한 출판사인 중앙북스는 지난달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앙북스는 최근 부도와 관련된 위급한 경영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기사에서처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 중앙북스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2008년 10월 23일자 A20면 「출판계 위기의 계절」 기사와 관련, 중앙북스가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중앙북스는 최근 위급한 경영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부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중앙북스는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을 기획출판 방식인 임프린트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경영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0일자 A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둥지, 경이로운 건축물'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합의)

모○○ 씨(신청인)는 KBS – 1TV 〈환경스페셜〉의 '둥지, 경이로운 건축물' 프로그램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모 씨는 피신청인 방송사가 제시한 저작권료 및 조건이 맞지 않아 방송사용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촬영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 담당PD가 자신에게 영상을 건네준 최○○ 씨가 영상의 원 소유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영상을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고 해당 영상을 프로그램에 방영하였고, 이후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그러나 원 소유자에게 승낙 확인을 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한다며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모 ○ ○
피신청인 : KBS – 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 – 1TV : 「환경스페셜 – '둥지, 경이로운 건축물'」 프로그램 (2008년 10월 8일 22:00)

내 용 : 프로그램 중 '검은 딱새' 관련 모○○ 씨 촬영 영상 3컷(25초간) 방영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2009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본 사건의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이후에 재방송, 인터넷 방송 등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스크롤에 <영상협조 : 모○○>라고 표시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듀스' 전 멤버 김성재 씨 자살보도 관련 중재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중재결정)

인기 그룹 '듀스' 멤버였던 김성재 씨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씨의 어머니인 육○○ 씨가 김 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육○○ 씨는 김성재 씨의 사망 사건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당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을 뿐, 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결정이 김성재 씨의 자살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정정보도 등을 요구했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과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해당 중재부는 중재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8.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 등 (2008년 10월 2일자)

내 용 : 지난해 11월 개그우먼 정선희와 결혼한 탤런트 안재환이 8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유서가 나오고 철판 위에 연탄 두 장이 피워진 것으로 미뤄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연예인 자살 사건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가수 유니는 지난해 1월 21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외할머니에게 발견됐다. 2년 만

의 새 음반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유니는 섹시미를 강조했던 2집 발표 이후 성형 논란 등에 관한 '악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가 자살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2월 10일에는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밝고 활달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정다빈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다빈의 죽음을 둘러싸고 당시 유족들과 소속사 측이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자살로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2005년 2월 22일에는 영화배우 이은주가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영화배우로서 꽃을 피울 나이에 전해진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그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우울증 때문에 생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에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1990년 2월에는 가수 장덕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으며 1995년 11월에는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호텔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이어 1996년 1월 1일에는 가수 김광석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으며, 1월 6일에는 사수 서지원이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연합뉴스에서 지난 9월 8일자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10월 2일자 <꼬리에 꼬리 무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에서 '1990년대에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1995년 11월에는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호텔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 1995. 11. 20 = 그룹 듀스 김성재 호텔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져'라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 되었고, 문제의 주사바늘 자국과 그 당시 사건 피고인이 동물 마취제 '졸레틸'을 모 동물 병원에서 사간 적이 있으며, 그 피고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 저녁에 찾아와 약물을 사간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는 동물 병원장의 자진신고로 타살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살이라고 잘못 보도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 보도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과거 13년간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오셨습니다. 저희 언론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서하며 좀 더 세세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2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에 24시간 동안 게재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을 2009년 1월 14일까지 이행을 완료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홈페이지 상단에 <별지2> 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9월 8일자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10월 2일자 「꼬리에 꼬리 무는 연예인 자살사건」제하의 각 기사에서 탤런트 최진실 · 안재환의 자살과 관련, 90년대 이후 자살한 연예인 현황을 보도하면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95년 호텔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故 김성재의 모친인 신청인은 김성재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난 바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살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였고, 다수의 언론사가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를 전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대해졌다면서 2008. 12. 24. 당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액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385)을 하였으나, 조정 계류 중에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해 취하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분쟁은 당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1. 8.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건 중재신청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는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를 한 후 <별지3> 기재 '중재합의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 중재부는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규칙 제34조에 따라 중재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중재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양 당사자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신청사항, 당사자 간 합의내용, 당사자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8.

〈별 지1〉

1. 제 목: 故 김성재 母 "아들 명예 되찾고 싶다"

2. 내 용: 지난 1995년 11월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로 활약하다 솔로로 데뷔한 김성재가 숙소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그 후로 만 13년이 넘게 흘렀지만 고(故) 김성재의 어머니 육○○ 씨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풀리지 않은 의문에 속이 타는데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마다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더 가슴이 찢어진다. 지난해에도 최진실과 안재환 등 연이은 연예인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냈다.

육 씨는 "그동안 일부러 TV와 신문 등을 안 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안재환, 최진실 씨 사건에 너무 가슴이 아파 인터넷을 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성재의 이름이 다시 너무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자살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든 언론이 합세한 듯 자살로 몰아가고 있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못 알려져 있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왜 연예인의 죽음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명칭으로 바꿔가며 성재의 이름이 거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족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절대 아물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처럼 생각될 때마저 있습니다"

육 씨는 "안재환, 최진실 씨의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충분히 알 거 같다.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싶었다. 연예인의 죽음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왜곡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난 1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왔으나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뜻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재는 당시 스태프와 숙소로 사용하던 호텔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 성재는 오른손잡이예요. 오른팔 주사바늘 자국이 있는 그 부분에는 스스로 주사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다 간신히 한 번 정도는 스치듯 잘못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8바늘을 자기가 놓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다 부검 결과 주사용 동물 마취제가 몸에서 나왔는데 그게 약물중독, 복용으로 둔갑했어요. 성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듀스의 김성재는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우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육 씨가 그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 삭여온 분을 이제라도 풀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이 성재를 사랑해주는 이들 때문이다.

그는 "성재는 절대로 자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사실로 각인되어질까 두려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싹텄다"고 밝혔다.

10여 년 침묵 속에 지내는 동안 육 씨는 또 한 번 가슴을 크게 쓸어내리는 사건을 겪어야했다. 형을 따라 연예인의 길로 들어섰던 성욱 씨가 가수와 뮤지컬(그리스) 배우로 활동하다 2005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동안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회복 후 화상환자가 겪어야 할 마음의 병이 아주 심했던 거죠. 부디 빨리 심신의 건강을 되찾길 바랄 뿐이에요"

성욱 씨는 주변의 격려로 이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항상 웃는 아이였던 성재도 하늘에서 '다 용서하고 이해하자'고 할 거에요. 제가 감히 용서는 못 해도 이해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와서 범인을 찾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성재가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사실을 제대로 밝혀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육 씨는 인터뷰 내내 김성재의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의 학창시절, 귀국해 한국에서 듀스로 활동하고 솔로로 데뷔해 활동할 때까지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때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때로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성재가 세상을 떠난 그때는 너무 놀라 차마 울 수도 없어서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성재 이야기를 잘 안 한다"며 또다시 눈물을 훔쳤다. 육 씨는 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에 아직도 방황하는 유족들의 심적,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정확한 검증을 거쳐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연예인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깨우쳐 주고 싶

다"고 덧붙였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고

〈별 지3〉 별지1 참조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연합뉴스 : 『故 김성재 母 "아들 명예 되찾고 싶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1일자 인터뷰면)

내 용 : 〈중재결정문 중 별지1 참조〉

'여자소년원의 희망고백' 프로그램의 초상권 침해 등 관련 조정신청 (손해배상 합의)

SBS – TV 〈뉴스 추적〉의 '미안해 엄마, 여자소년원의 희망고백' 프로그램이 여자소년원에서 생활하는 김선희(가명)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한 김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서○○, 장○○ 씨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자,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초상과 사생활이 노출되어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은 취재차 방문한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방송에 나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해 촬영하였으나,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방송돼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초상권 사용에 관한 확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송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신청인들에 손해배상액 각 1,500,000원 씩 지급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서○○, 장○○
피신청인 : SBS – 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 – TV : 「뉴스추적 – '여자소년원의 희망고백'」 프로그램 (2009년 1월 7일)

내 용 : 우리나라 유일의 여자 소년원인 '안양 소년원'. 이곳에는 폭력과 절도, 성매매 등의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10대 소년 2백여 명이 국가의 통제 아래 생활하고 있다. 대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뉴스추적에서 소년원생들의 일상을 한 달간 밀착 취재했다.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라, 학교 같은 곳"

흔히 '소년원'하면 '소년 교도소'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취재진이 체험한 소년원은 일반 학교에 가까웠다. 단, 사회에서 격리된 채 엄격한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달랐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취침, 식사, 운동은 물론 목욕도 단체로 해야 한다. 사회에서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낯선 단체생활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무너진 가정, 상처받는 아이들

남자친구와 함께 취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입소한 선희(19). 선희는 현재 임신 6개월의 예비엄

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으나 어린 나이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은 선희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각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1.서○○, 신청인 2.장○○에게 2009년 2월 20일까지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들에게 위 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본건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액 지급〉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 관련 조정신청 (정정보도 및 사과 합의)

김무성 의원은 주간신문인 일요서울이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이 동향인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도하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자신은 단 한 차례도 박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구설수에 오른 사실도 없으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성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후원금 관련 음해성 왜곡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를 요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보도 내용에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사과를 하기로 합의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조정31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무 성(국회의원)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서울 : (1)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7일자 2~3면)
(2)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5일자 2~3면)

내 용 : (전략)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이 소원해졌다는 소문과 관련 또 다른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은 정치적 스타일이 다르다"며 "박 전 대표가 물이라면 부산 출신인 김 의원은 불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김 의원의 경우 박 전 대표가 없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박근혜', '박근혜'라고 얘기한다"며 "박 전 대표는 그런 점 역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스타일의 차이가 박 전 대표와 소원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으로 지목했다.

정가에서는 둘 사이가 소원해진 단초는 지난 경선 때 재산가인 김 의원이 경선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캠프에 제공하지 못해 패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고조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음해성 소문으로 박 전 대표와 관계가 더 악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됐다.

소문의 내용을 보면 부산 출신의 태광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같은 동향인 김 의원이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부산 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 회장은 부산에서 IMF 위기 때에도 신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며 "통상 정가 인사들과 만날 때 마다 500만 원씩 현찰로 건네주곤 했다는 말은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라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 · 현직 의원 2~3명이 더 연루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무성 의원에 관한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1월 4일자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이라는 제목의 두 건 기사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하여 김무성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향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4일자 "친박 측, '정치 스타일이 다를 뿐…' 일축" 및 1월 25일자 "'일단 연기' 박근혜 청와대 참석 두고 장고" 두 건의 기사를 통해 김무성 의원이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무성 의원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금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 시 사실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김무성 의원에게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서울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미네르바, 나라사랑청년회 가입 활동 보도 관련 중재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 중재결정)

나라사랑청년회는 중앙일보가 신청인 단체에 대해 지난 대선 때 MB퇴진 운동을 했으며,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도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보도하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나라사랑청년회는 자신 단체가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20~30대 직장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결코 정치단체가 아니며, 이 단체 회원인 박○○ 씨 역시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가 아님에도, 해당 언론사가 사실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단체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했다.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8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9. 1. 21.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 도 내 용

중앙일보 : (1)『대선 때 MB퇴진 운동 단체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1면)

내 용 : '미네르바' 박○○(31) 씨가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9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 박 씨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가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박 씨는 또 검찰에서 시사월간지『신동아』에 기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라는 인물과의 인터뷰 등을 실었다. 박 씨는 "이 잡지사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 관리자를 통해 기고 의뢰를 했지만 나의 정체가 드러날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동아 송문흥 편집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면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미네르바, 나라사랑청년회 가입 활동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0일자 1면에 "대선 때 MB퇴진 운동 단체/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 박○○ 씨가 지난 대선 때 MB퇴진운동을 전개한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미네르바' 박○○ 씨는 이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단체 회원들은 "청년회는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과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20, 30대 모임으로서 결코 정치단체는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결정문

사건번호 : 2009서울중재8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보도문을 2009년 2월 2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부제목('노무현 토론방' 도 참여…)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우측 하단에 <별지2>기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09년 1월 10일자 1면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 – 미네르바, 회원 가입해 활동」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 씨가 '나라사랑청년회'라는 사회운동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으며, 이 단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퇴진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박○○ 씨가 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긴 하였으나 '미네르바' 박○○ 씨와는 동명이인일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과 이 단체는 20, 30대 직장 청년들이 정치적 활동 외에 동아리 활동,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건강한 청년단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2009년 1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0)을 하였다가 2009년 1월 21일 조정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한 다툼을 당 중재부의 중재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 21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검찰 수사결과를 전재하였으나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구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음을 당 중재부에 밝혔다.

한편 신청인은 '미네르바' 박○○ 씨는 '나라사랑청년회'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나라사랑청년회'가 20~3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밝히길 원한다는 의사를 당 중재부에 전해왔다.

판단하건대, '나라사랑청년회'에서 활동했던 박○○ 씨는 1969년 1월 13일생으로 30대 초반인 미네르바 박○○ 씨와 동일인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신청인 또한 자신의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 제목 및 본문을 통해 신청인 단체를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해당보도를 접하게 되더라도 신청인 단체를 정치활동에 국한된 단체로 인식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한 신청인 단체의 반론보도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 박○○ 씨가 '나라사랑청년회'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정보도하도록 하고, '나라사랑청년회'는

단순한 정치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취지로 반론보도함이 마땅하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당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하도록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협의사항, 실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별 지1〉

1. 제 목: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본보 지난 10일자 1면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대선 때 MB 퇴진 운동 단체인 <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이 단체에서 활동한 박대성 씨는 동명이인이며 미네르바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회원들은 "청년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20~30대 모임이다"고 밝혀 왔습니다.

〈별 지2〉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 참조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4일자 2면)

내 용 : 〈중재결정문 중 별지1 참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1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보도의 정당한 범위

공인의 공적 업무는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나,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한 보도라도 상당성(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을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해찬 씨가 총리 재직 당시 폭설피해 상황을 설명 받는 자리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피고 프런티어타임스는 당시 이 전 총리가 폭설현장을 방문해 현장방문은 하지 않고,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했으며, 이 전 총리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단순히 시민의 제보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자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보도에 대한 범위는 넓게 인정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제보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반복한 점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보인다"며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은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임(공공성)과 보도내용이 사실임(진실성)을 인정받거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상당성)가 있었음을 인정받으면 면책을 받게 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성을 부정했다.

대법원(2부)
2008. 11. 13.자 판결(2008다53805)

사 건 : 2008다5380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이 해 찬

피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1870 판결
판 결 선 고 : 2008. 11. 13.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05. 12. 21.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폭설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예정하고 있었을 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 · 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수인의 범위 및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08. 7. 2.자 판결(2007나53805)

사　　건 : 2007나6187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해 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합8882 판결
변 론 종 결 : 2008. 5. 14.
판 결 선 고 : 2008. 7. 2.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1)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영의 인터넷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위 기사는 네이트, 드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원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나. 기사 게재 이후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프런티어타임스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 정읍의 폭설피해 현장 확인차 정읍 ㅊ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은 뒤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날 식탁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측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으며 저녁식사 자리에 놓여있는 병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다. 보도대상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1)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18:40경에는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정읍시 소재 ○○식당(기사 속 ㅊ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2) 그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와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정읍역을 출발하여 23:55경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⑶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 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 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는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한 행사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공직자에 대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 측에 의해서 그러한 명예훼손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술병이 놓인 식사 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피고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법원 제25민사부
2007. 6. 13.자 판결(2006가합8882)

사 건 : 2006가합8882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해 찬
피 고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6. 13.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네이트, 드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나. 기사게재 이후의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는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프런티어타임스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 정읍의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정읍 ㅊ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은 뒤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날 식탁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 측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으며 저녁식사자리에 놓여있는 병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다. 보도대상사건 발생당시의 정황

한편,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18:40경에는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정읍시 소재 ○○식당(기사 속 ㅊ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 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

와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정읍역을 출발하여 23:55경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까지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여부

피고는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대상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별 지〉

사진설명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읍의 ㅊ식당에서 폭설피해보고를 받고 있다. 식탁 위에서 양주병과 음료수 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기사내용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전라북도 정읍을 방문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내의 ㅊ식당에서 시장, 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만을 받은 뒤 '양주파티'를 가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7시경 정읍에 도착했지만 폭설 피해현장 방문과 당초 예정돼 있던 정읍시청에서의 피해상황보고를 생략한 채 정읍시 수성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한 식당에서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 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며 "'양주파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이 총리의 피해지역 방문을 학수고대하던 한 시민은 "눈이 산처럼 쌓여진 무너진 집과 축사들을 총리가 돌아보게 되면 제대로 보상을 해달라고 간청하려고 했으나 식당에서 보고만 받고 돌아갔다"며 원망했다.

이날 이 총리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 길에서 2시간 넘게 추위에 떨던 정읍시청의 한 관계자는 "1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식당에서 보고받고 식사만 한 채 돌아갔다"며 아쉬워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의 '양주파티'와 관련, "이 총리가 지난해 10월 유럽순방 중에 폭탄주를 마시고 '조선, 동아일보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날은 폭탄주를 마시지 않아 '폭탄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4월 5일 강원 양양군 산불이 낙산사를 덮치고 있는 중에도 골프를 치고, 7월 3일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례2 검찰 기소 내용에 근거한 범죄 보도의 한계

검찰의 기소 내용에 근거해 범죄사건을 보도하더라도 "검찰은 … 사실을 밝혀냈다" 등의 표현으로 단순 기소사실을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 감사로 일했던 김○○ 씨는 해당 언론사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보험회사 전임직원들이 보험유치 대가로 조성한 비자금 중 13억여 원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횡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담당판사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 … 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며 상당성을 부정하고, 피고 언론사는 위자금 5백만 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에 원고가 상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자 판결(2008가단15443)

사　　건 : 2008가단1544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김 ○ ○
피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변 론 종 결 : 2008. 9. 30.
판 결 선 고 : 2008. 11. 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6. 18.자 사회면에 "퇴직보험 등 유치 대가 150억대 리베이트 오가"라는 제목 아래 원고에 관하여 "검찰은 구속된 한일생명 전 감사 김○○(49) 씨가 조성된 비자금 중 1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냈으며……"라는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검찰이 원고를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위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1심에서 2002. 12. 2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6. 3. 9.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확정사실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이 검찰의 기소사실이기는 하나, "검찰은……사실을 밝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사실이 확연한 사실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표현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도는 한일생명 전 임직원들이 보험유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사 제목도 위 리베이트 관련 보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보도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 ② 위 리베이트 관련 보도 역시 검찰의 기소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 리베이트 관련 공소사실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인정되어 원고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추후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4.자 2007카기6811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추후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보도내용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식자층이라면 결국 검찰의 기소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자금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국판결

Pennsylvania 주 취재원보호법은 일반대중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언론의 취재원 공개 거부 권한에 어떤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

- Castellani 대 Scranton Times L.P. 사건
- Pennsylvania 주 대법원
- 원고, 상고인 : Randall A. CASTELLANI and Joseph J. Corcoran
- 피고, 피상고인 : The SCRANTON TIMES, L.P., t/d/b/a the Scranton Times and the Tribune, and Jennifer Henn
- No. 60 MAP 2007
- 2008. 9. 24.

미디어 내용의 규율

[1] 명예훼손 – 공판예비절차(pre-trial procedures) – 증거개시(discovery) (§ 11.1205)

뉴스 취재

정보 공개의 강제 – 취재원의 공개(Disclosure of sources) – 민사소송절차(In civil actions)(§ 60.0303)
정보 공개의 강제 – 법률상 특권(취재원보호법, shield laws)

Pennsylvania 주 취재원보호법의 해석상, 신문 기자와 그 취재원 사이의 정보교류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자에게 그 취재원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범죄-사기의 예외(crime-fraud exception)는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취재원보호법의 문언상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기자의 특권(reporters' privilege)은 원고가 언급한 다른 특권들과 유사하지 않으며, 대배심절차의 기밀유지라는 공익이 기자의 특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문보도(공직자들이 주 전체의 대배심절차에서 애매하고, 비협조적으로 증언하였다는 내용)와 관련한 익명의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Pennsylvania 주 항소법원의 판결 (35 Med.L.Rptr. 1097.)에 대한 상고사건.

신문사들을 피고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Lackawanna 카운티의 Pennsylvania 주 민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익명의 취재원의 정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항소법원이 위 판결을 파기하자 원고들은 이에 상고하였다.

상고기각판결 선고

CASTILLE 대법원장 : Pennsylvania 주의 취재원보호법(Shield Law, 42 Pa.C.S. § 5942)은 신문사를 그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상고인들은, 신문기자와 그 취재원 사이의 정보전달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위 취재원보호법의 해석상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신문의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은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한 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2003년 말 Pennsylvania 주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Lackawanna 카운티(County) 교도소의 불법행위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20번째 주 전체의 대배심이 소집되었다. 2003년 12월 2일, 상고인인 Randall A. Castellani, Joseph J. Corcoran, 당시의 Lackawanna 카운티의 다수당인 민주당 위원회 위원들은 적법하게 발부된 소환장에 따라 대배심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2004년 1월 12일, 피상고인 The Tribune(Scranton) and The Scranton Times(총칭하여 'The Scranton Times-Tribune')는 상고인들의 대배심 절차 방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가 1면에 실린 신문들을 발행하였다. 그 기사들은 피상고인 소속의 Jennifer Henn 기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각 기사 내용은 거의 동일하였다. The Tribune 기사의 표제는 "민주당원들의 대배심 절차방해: Corcoran, Castellani의 회피성 발언에 배심원들 격분, 취재원 관련 진술", The Scranton Times 기사의 표제는 "민주당원들의 절차방해: 취재원: Corcoran, Castellani의 대배심에서의 애매한 진술"이었다. 위 기사들은 상고인들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상고인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조사절차 관련자에 따르면, 상고인들은 배심원들에게 아주 비협조적이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위 관련자에 따르면, 상고인들의 증언은 배심원들을 매우 짜증나게 하여, 거의 상고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낼 뻔하였다"

"몇 달 동안 모든 종류의 자세하고, 특정한 정보와 증언을 청취하고 나자, 배심원들은 상고인들의 위와 같은 작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배심원들은 증언석에 있는 상고인들을 확 끌어낼 뻔하였다"

위 기사들은 위 조사절차와 관련된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위 기사들이 보도된 직후, 상고인들은 대배심의 감독 판사인 Isaac S. Garb에게 대배심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신문기자들에게 누설한 데 대해 제재를 가해달라고 신청하였다. Garb 판사는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불법누설행위라고 의심되는 행동을 한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다. Garb 판사는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특별검사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법무부의 어떤 직원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간략한 판결 (memorandum)을 하였다. 이 판결에서, Garb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위 신문들의 보도는 상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신문은 상고인들이 조사절차에서 애매하게 답변하고, 비협조적이며, 근본적으로 절차를 방해하였고, 배심원들이 상고인들의 행태에 격노하여 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낼 뻔하다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배심에 대한 증언 내용을 누설하려고 하였다면, 그 언론매체에 제공된 정보는 분명히 실제 행해진 증언내용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상고인들의 증언에 관한 보도는 상고인들의 실제 증언기록과 전혀 달라 위 증언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대배심 절차와 관련된 사람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그 정보제공자는 법무부 직원이 아니다[1]"

2005년 1월 7일, 상고인들은 The Tribune, The Scranton Times, Henn (총칭하여 '피상고인들')을 상대로 위 신문 기사는 허위이고 상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진술, 풍자, 암시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고인들은 더 나아가 위 기사의 취재원은 불법적인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취재원이 신문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신원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The Scranton Times-Tribune의 정책임을 환기시켰다.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고인들은 그들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절차진행에 협조적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배심원들의 의견진술 뿐만 아니라 Garb 판사의 간략한 판결까지도 언급하였다. 또한 상고인들은 그들이 위 기사의 취재원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피상고인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 상고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피상고인들은 Pennsylvania 주의 취재원보호법과 미연방 수정헌법상의 언론의 권리[2]를 언급하면서, 상고인들의 취재원 공개 요구를 거절하였다. 상고인들은 Lackawanna 카운티 민사법원에 위 공개에 관한 강제명령을 신청하고, 피상고인들에게 취재원의 신원을 묻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냈으나, 피상고인들은 또다시 위 취재원보호법과 언론의 권리를 언급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1심법원은 양당사자로부터 준비서면을 제출받고 위 강제명령에 관한 심리기일을 진행하였다. 2005년 6월 3일, 1심법원은 상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상고인들에게 그들의 2004. 1. 12.자 신문기사의 취재원을 공개할 것을 명하였다. 이 법원의 Robert Mazzoni 판사는, 취재원보호법과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에 부여된 권리도 그 권리의 행사가 대배심제도와 Pennsylvania 주 헌법에 따라 개

1) 독립된 특별검사가 2003년의 Lackawanna 카운티의 대배심 조사절차에 관한 유사한 기밀누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2003년 9월 18일 소집된 카운티의 대배심원단은, 비록 원래 그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ackawanna 카운티 교도관들의 죄수에 대한 학대행위를 조사하였다. 특별검사는, 교도관들에 대한 범죄혐의는 Lackawanna 카운티 지방검찰청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상고인 Henn에게 제공된 대배심절차에 관한 비밀정보에 근거하여 고소된 것이므로, Lackawanna 대배심의 공판회부를 불허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된 후에 임명되었다. 위 신청자는, Henn과 Lackawanna 카운티 지방검찰청 사무실 직원이 대배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또한 Henn은 위 교도관들의 대배심 출석 직후에 위 지방검찰청 직원을 Farley라는 바(bar)에서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문기사 외에도, The Scranton Times-Tribune은 위 카운티 대배심의 조사와 관련하여 Henn이 작성한 많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특별검사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Lackawanna 카운티의 대배심 감독판사인 Terrance R. Nealon은 위 공판회부 불허신청을 기각하였다. Nealon 판사는, 주 전체 카운티 대배심의 기밀누설혐의 뿐만 아니라 위 카운티 대배심의 기밀누설혐의와 관련된 사실들을 열거하고, 특별검사의 위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위 보고서에는 검찰청 직원이 Henn에게 대배심절차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Henn이 자발적으로 그 취재원의 정체를 특별검사에게 공개하였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Nealon 판사는 위 불허신청이 취재원보호법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Nealon 판사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배심절차의 기밀누설행위가 실질적으로 대배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위 보고서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불허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2)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에게 부여된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3] Mazzoni 판사는,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이 배심원제도의 근본취지를 보호할 필요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취재원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이 법원은 위 취재원보호법의 취지와 미연방 수정헌법상 언론의 권리를 인정하고, 언론매체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이 판결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 권한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언론매체가 대배심절차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배심절차의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실은 일간신문의 발행, 배포는 대배심절차를 훼손하게 된다. 언론매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보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사법제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침의 도구로서 기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기자가 범죄행위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취재 또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익명의 취재원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익명의 취재원을 통하여 대배심제도와 그 절차의 기밀유지를 훼손하는 것까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1심법원은 또한 이 사건을 이전의 취재원보호법 관련 사건과 구별하면서, 이 보도는 범죄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고, 대배심절차와 관련하여 누설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확대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배심절차를 위축시키고 그 기초를 위태롭게까지 한다고 설시하였다.

피상고인들은 중간판결법(collateral order rule, Pa.R.A.P. 313)[4]에 따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1심법원은 위 공개명령이 법률상 중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즉각적인 항소로 인하여 위 사안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간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을 수정하였다. 그 후, 항소법원은 먼저 공개명령이 중간판결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 이어진 항소법원의 심리 결과, 배심원단은 피상고인들에게 그들의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되므로, 1심법원의 공개명령을 취소한다는 평결을 내렸다.[6] 배심원단은 1심

3) Pennsylvania주 헌법 제1장 제1절(Article 1, Section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지킬 권리, 재산과 명예를 소유하고 지킬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천부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All men are born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and indefeasible rights, among which are those of enjoying and defending life and liberty, of acquiring, possessing and protecting property and reputation, and of pursuing their own happiness).

5) 중간판결의 원칙(The collateral order doctrine)에 따르면, 당사자의 청구가 (1) 본안과 분리되어 있는 임시적인 청구이고, (2) 당사자에게 너무나 중대한 권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3)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시까지 재심리가 연기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다주는 사안인 경우에, 항소심에 중간판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간판결법을 적용하여, 배심원단은 (1) 법원이 취재원보호법에 범죄-사기의 예외(crime-fraud exception)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본건 명예훼손 소송과 분리된 별개의 문제이고, (2) 취재원보호법에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취재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기자의 특권(reporter's privilege) -언론의 자유 및 언론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교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3)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위 공개명령을 시정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en v. Schwartz 판결에서 이 법원이, 증거개시 명령(discovery order)에 대한 항소가 본안판단의 대상과 분리된 특권의 적용과 관련되고, 본안 판단과 관계없이 검토될 수 있는 쟁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중간판결의 원칙에 따라 위 증거개시명령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배심원단은 설시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소송관계인들이 심리중인 사건의 명령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므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는 않는다.

6) 그들의 첫 번째 항소에 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상고인들은 1심법원이 위 명령을 수정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항소법원에 중간판결법에 따른 항소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였다.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잠정적인 증거개시명령은 중간판결의 원칙에 따라 항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복된 항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취재원보호법에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그 예외의 적용범위를 대배심의 기밀유지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선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배심원단은 법원 스스로가 신문기자들에게 범죄까지도 감추고 비밀로 할 수 있게 허용한 In re Taylor, 193 A.2d 181 [1 Med.L.Rptr. 2675] (Pa. 1963.) 판결과 위 취재원보호법이 취재원의 공개로부터 언론을 보호한다는 Taylor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Hatchard v. Westinghouse Broadcasting Co., 532 A. 2d 346 [14 Med.L.Rptr. 2000] (Pa. 1987) 판결에 구속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우리는 취재원보호법상의 권리가 대배심절차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1심법원의 판단을 일견 수긍함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에 의한 입법이 있거나 주대법원의 판례변천에 의하여 인정되기 전에는 1심법원과 같이 취재원보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은 예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당시 판사였던 (현 대법관) Debra Todd는 보충의견으로 대배심 기밀누설에 대한 범죄수사의 경우와 같이 위 취재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Henn이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그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은 명예훼손 소송이므로 상고인들은 그 범위 내에서만 취재원의 공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대배심의 기밀유지라는 공익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상고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은 취재원보호법이 언론매체와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대배심절차의 기밀을 누설하였다고 주장되는 신문기사의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들인 언론사를 보호하는지 여부이다. 위 쟁점은 법률문제에 해당하므로 우리의 심리범위는 그 전반에 이르고 우리의 심리기준은 새로이 정립된다. Commonwealth v. Davidson 595 Pa. 1, 938 A.2d 198, 203 (Pa. 2007).

위 취재원보호법은, 미연방 대법원이 그 관심을 미연방 수정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에 돌리기 훨씬 전인 1937년에 제정되었다. N.Y.Times v.Sullivan, 376 U.s. 254, 279-80 [1 Med.L.Rptr. 1527] (1964) {공직자(public official)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Curtis Pub'g Co. v. Butts, 388 U.S. 130, 164, [1 Med.L.Rptr. 1568] (1967) {현실적 악의가 요구되는 범위를 공인(public figures)까지 확장하였다}; Getz v. Rovert Welch, INc, 418 U.S. 323, 345-46, 350, [1 Med.L.Rptr. 1633] (1974) {사인(private individual)이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법률은 언론매체에 대한 비밀정보교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일반원칙 - 뉴스를 취재, 편집, 보도할 목적으로 신문사, 통신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 잡지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재판절차 또는 정부기관의 조사절차에서 그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b) 예 외 - 위 (a)항의 규정은, 그것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관련되어 있는 한에서는, 그 방송국이 뉴스를 보도한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 정확한 녹음, 영상자료, 원고, 실제 방송의 인증등본 등을 조사를 위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다.

42 Pa.C.S. § 5942. 197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1978년에 그 효력이 발생한 현재의 취재원보호법은 위 1937년 제정법의 조문을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상고인들은 Henn과 그녀의 취재원은 대배심법(the Grand Jury Act)을 위반하였고 이는 범죄를 구성하므

로, 피상고인들에게 취재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7] 상고인들은 또한 이 사안은 취재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문기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와는 다르고, 신문기자와 취재원 간의 정보교류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법원은 위 취재원보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범죄-사기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고인들은 기자의 특권(reporter's privilege)을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the attorney-client privilege) 및 사제-고해자 관계에 기한 특권(priest-penitent privilege)의 유추에 의해 설명한 위 Taylor 판결을 언급하면서, 기자의 특권이 범죄-사기의 예외가 인정되는 다른 특권들에 비하여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상고인들은 법원에 취재원보호법의 경우에도 해석상 범죄 - 사기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법원은 하급심 법원들과는 달리, 취재원보호법의 절대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사기 또는 범죄를 행해왔던 경우에는 취재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고, 또한 이 법원은 이미 이전에도 취재원보호법 문구의 단순한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는 법률해석을 이용하여 취재원보호법의 문구가 명백하고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고인들은 취재원보호법에 관한 Taylor 판결의 해석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재원보호법의 문구 자체도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헌법적 적용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대법원이 취재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점점 좁히는 계기가 된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이후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엄격한 입증책임을 항소법원이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상고인들은 만약 취재원보호법이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로부터도 위 피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취재원보호법은 명예에 관한 권리와 같이 Pennsylvania 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Hatchard 판결의 판단까지 언급한다.

상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취재원보호법이 불법적인 정보교류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Pennsylvania 주 대법원의 선례는 없다고 하면서 Taylor 판결이나 Hatchard 판결 모두 이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고인들은 이 사건과는 달리 Taylor 판결이나 Hatchard 판결의 사안은 모두 기자가 직접 가담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정보교류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 취재원보호법이 기자들에게 범죄를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한 Taylor 판결의 폭넓은 해석을 언급하면서, 상고인들은 Taylor 판결이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정보교류에 관한 것이지 그 정보교류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선례가 없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상고인들은 이 사건의 사안을 법원이 변호사 - 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에 관한 법률의 절대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 - 사기의 예외를 인정한 Nadler v. Warner Co., 184 A. 3 (Pa. 1936) 판결의 사안과 비교하면서, 법원이 회계사-고객 간, 남편-아내 간, 사제-고해자 간, 정신과의사-환자 간 관계에 기한 특권 등 그것이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재

7)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고인들은 대배심법 4549항(Section 4549 of the Grand Jury Act, "비밀유지의 선서를 한 모든 사람은 만일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정모독죄로 처벌된다")과 형법전 5101항(Section 5101 of the Crimes Code, "누구든지 무력, 압박, 공적의무의 불이행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법 또는 행정절차를 방해 내지 침해한 자는 2급 경범죄(misdemeanor of the second degree)로 처벌된다")을 언급하였다.

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유사한 성질의 모든 특권에 관하여, 그 적용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취재원보호법의 예외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상고인들은 취재원보호법이 오로지 '은밀한(confidential)' 정보교류만을 보호한다고 설시한 Commonwealth v. Bowden, 838 A.2d 740 [32 Med.L.Rptr. 1257] (Pa. 2003) 판결을 언급하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과 취재원보호법상의 기자의 특권은 모두 은밀한 정보교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또한 위 각 특권의 취지 역시 그 당사자 간에 거리낌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상고인들은 The Scranton Times-Tribune에게 이미 두 번이나 사법절차를 통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정보의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취재원보호법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을 전혀 해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취재원보호법이 아무런 가치 없는 불법적인 정보교류를 보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사기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고인들은, 취재원이 신문사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The Scranton Times-Tribune의 정책까지도 언급하였다.

상고인들은 또한, 대부분의 다른 주(state)의 경우에도 상고인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 정보교류가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재원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고인들은 36개의 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그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오직 10개의 주만이 기자의 특권에 관한 절대적인 문언적 해석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절대적인 취재원보호법을 인정하는 주들도 취재원공개를 요구하는 자가 기자와 취재원 간의 정보교류 자체가 범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까지 기자를 취재원의 공개 요구로부터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8]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1 Med.L.Rptr. 2617] (1972) 판결을 언급하면서, 상고인들은 미연방 대법원 역시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하여 기자의 특권(reporter's privilege)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연방법원들도{가장 최근에는 In re Grand Jury Subpoena, Judith Miller, 397 F.3d 964 [33 Med.L.Rptr. 1673] 판결을 포함하여} 그 소송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은 취재원보호법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다. 또 상고인들은 대배심절차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Henn의 익명의 정보원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허구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피상고인들이 이 사안에 취재원보호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계속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이를 허용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상고인들은 요컨대, 기자가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적인 정보의 출판 또는 공개에 대한 민 · 형사 소송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취재원보호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기자의 특권에 내재된 공익은 기자가 의도적으로 범죄 또는 사기에 가담한 경우에까지 확장

8) 상고인들은 주로, 기자가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기자의 익명의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의 Califomia 주의 선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Mitchell v. Superior Court, 690 P.2d 625 [11 Med.L.Rptr. 1076] (Cal. 1984) 판결 참조. 상고인들은 또한 주 증거법상 기자의 특권(reporter's privilege)이 함구령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한 검사의 신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에 대한 법정모독죄의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Farr v. Superior Court, 99 Cal.Rptr. 342 [1 Med.L.Rptr. 2545] (Cal. Ct. App. 1971) 판결을 언급하였다. 상고인들은, 위 Farr 판결의 결론은 25년 후에 In re Willon, 55 Cal.Rptr.2d 245 [24 Med.L.Rptr. 2121] (Cal. Ct. App. 1996)에 의하여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상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취재원보호법이 (1) 취재원의 신원 및 (2) 취재원의 신원 공개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 요구도 거절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반박한다.[9] 피상고인들은, 이 법원이 제정법률의 근본취지에 따라 법조문을 해석할 권능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문 자체를 개정하거나 법조문의 명백한 의미까지 변경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상고인들이 이 법원으로 하여금 취재원보호법의 명백한 규정을 무시하고 그 대신 만약 주의회가 의도하였다면 그 법조문에 명백히 포함시켜 개정하였을 의미로 임의대로 해석하도록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상고인들은 이 법원의 취재원보호법에 관한 선례에 따르면 상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고 한다. 첫째로, 피상고인들은 법원이 Taylor 판결을 통하여 상고인들의 주된 청구-취재원의 정보제공이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재원보호법이 그 취재원을 신원 공개로부터 보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한 바가 있다고 한다. Taylor 판결은 기자가 직접 범죄 또는 사기행위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의 사안과 다르다는 상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상고인들은 Taylor 판결은 바로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주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상의 권리는 설령 취재원보호법에 따라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의 증거를 은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어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둘째로 피상고인들은 취재원보호법이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 완전히 적용된다고 하면서 위 소송의 피고인 신문사의 취재원에 대한 공개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 법원의 Sprague v. Walter, 543 A.2d 1078 [15 Med.L.Rptr. 1625] (Pa. 1988) 판결을 상고인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명예훼손 소송에 당연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권리인 Pennsylvania 주 헌법상 명예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재원보호법은 그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피상고인들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피상고인들은, 위 Hatchard 판결이 명예훼손 관련 법률의 헌법적 적용으로 취재원보호법의 명백한 법조문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인들의 위 견해와 동일한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피상고인들은, 상고인들의 위 주장은 결국 Pennsylvania 주의 법원들이 대배심절차의 기밀유지와 같은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 마음대로 해석상 예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논리로 귀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록 법률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원보호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대배심법(Grand Jury Act)의 기밀유지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익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배심절차의 기밀침해는 상고인들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피상고인들은 다툰다.

피상고인들은 나아가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취재원보호법의 명백한 문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상고인들의 견해와는 반대로, 피상고인들은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과 취재원보호법은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피상고인들은,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에 대한 범죄-사기의 예외는 위 특권이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코먼로

9) 참고인인 ABC 방송은 Pennsylvania주가 취재원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후에 이를 취재원보호법으로 구체화한 기나긴 헌정사의 초기인 미국의 독립과 공화국의 초기를 상기시키면서, 취재원보호법의 위 절대적인 보호에 관한 피상고인들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참고인은 또한, 취재원보호법은 1937년에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그 예외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가 없다고 하였다.

(common law)상으로 인정되고 있던 것인 반면에, 취재원보호법에 대한 범죄-사기의 예외는 코먼로상의 선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위 법률에 명시된 문언과 입법취지를 우선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상고인들은 상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취재원보호법의 명백한 문언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어떤 법률에 예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그 이외에 다른 예외는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는 법률해석원칙마저도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다툰다.

상고인들의 다른 관할법원의 사례에 대한 언급에 대하여도, 피상고인들은 기자의 특권에 관한 위 다른 법원의 판단을 이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Judith Miller 판결과 같은 연방법원의 판결들은 연방법상의 기자의 특권에 관한 것이지 Pennsylvania 주의 절대적인 취재원보호법상의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상고인들이 제시하는 위 Califomia 주의 선례들은 기자에게 절대적인 특권을 인정하는 Pennsylvania 주의 취재원보호법이 아니라 기자에게 법정모독죄로부터의 면제만을 인정하는 Califomia 주의 취재원보호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피상고인들은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피상고인들은 어떠한 관할의 항소법원도 절대적인 취재원보호법에 예외를 인정한 바 없다고 다툰다.[10]

마지막으로 피상고인들은 상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허위가 입증된 바도 없고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반박한다. 피상고인들은, 대배심제도의 기밀유지의무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기밀유지의 선서를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The Scranton Times-Tribune은 범죄혐의자가 될 수 없고, 게다가 그 취재원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상고인들은 또한 대배심절차에 대하여 출판 또는 보도하는 것 자체는, 설령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가 기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의 주장대로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The Scranton Times-Tribune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심리는 마쳐졌다. 우리가 이 사안에 또다시 취재원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문언적 법률해석의 원칙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Hatchard 판결의 설시와 같이, 이 사안은 법률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이전에 행해진 취재원보호법의 해석뿐 아니라 그 법률의 원문 자체를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 "법률의 문구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는 구실로 위와 같은 법률문구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

In re Taylor, 193 A.2d 181 [1 Med.L.Rptr. 2675] (Pa. 1963) 판결에서, 대배심원단은 1962년에 Philadelphia 시 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련된 범죄 및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그 직후, The

10) 사실 피상고인들은, New York 주 항소법원이 이 사건 이전에 동일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그 주의 취재원보호법의 취지는 취재원의 기자에 대한 대배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취재원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Beach v. Shanley, 465 N.E.2d 304, 310 [10 Med.L.Rptr. 1753] (N.Y. 1984) 판결 참조. 게다가 상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상고인측의 참고인은 15개 주(14개 주와 Columbia 특별구)의 관할법원이 취재원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어떠한 법원도 그 정보제공행위 자체가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재원보호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Philadelphia Evening Bulletin은 대배심 조사절차의 상황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The Bulletin의 전 · 현직 부장과 편집자는 대배심에 소환되어 그 보도의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위 언론인들은 취재원보호법에 근거하여 대배심원단의 몇몇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였고 그들은 법정모독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의 상고심에서 이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은 범죄혐의의 조사를 위한 정보공개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공익 내지 공공복리에 이바지하는 취재원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또한, 취재원보호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언론매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언론매체가 정부정책의 감시자 및 공익의 수호자로서 시(city), 국가(nation), 주(state)의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Taylor 판결을 한 법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취재원보호법의 명확한 원문 내용에 따르면 언론인이 범죄를 감추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을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 사제-고해자 관계에 기한 특권 등 공공정책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특권들과 비교하였다. 위 법원은, (1) 취재원보호법상 '취재원(source of information)'은 사람(individuals)과 문서(document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2) 위 특권은 어떠한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3) 위 언론인들은 법정모독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약 25년 후 Hatchard v. Westinghouse Broadcasting Co., 532 A.2d 346 [14 Med.L.Rptr. 2000] (Pa. 1987.) 판결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텔레비전방송국이 방송되지 않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취재원보호법에 근거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Taylor 판결의 폭넓은 해석을 더욱 발전시켰다. 문언적 법률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위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상의 '취재원(source)'이라는 용어가 사람과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Taylor 판결의 결론을 고수하면서도, 취재원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의 단순한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 언론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제공의 보장-를 고려하였다. Hatchard 판결의 사안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위 Taylor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법원은 만약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정보원이 밝혀지지 않은 미방송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취재원보호법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면, 취재원보호법은 명예에 관한 기본권과 같은 Pennsylvania 주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본적인 가치와 양립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결국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의 입법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진술을 한 사람이 그 전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보호하는 바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중에서 정보원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정보만을 보호하는 바를 의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에 관한 Taylor 판결의 해석을 제한하여, 최소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서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수집한 방송되지 않은 문서는 그 문서의 정보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거나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없도록 그 문서가 편집된 경우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Hatchard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정보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 소송의 피고는 취재원보호법을 들어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Hatchard 판결이 위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Taylor 판결의 해석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보호법에 따른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 -취재원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취재원의 정체가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요구를 하

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된다-은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1년 후 Sprague v. Walter, 543 A.2d 1078 [15 Med.L.Rptr. 1625] (Pa. 1988) 판결에서, 법원은 다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법원은 취재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로부터 바로 익명의 취재원의 신뢰성이나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유효성까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취재원보호법의 명백한 문언에 따르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법적 절차, 재판절차, 정부기관의 조사절차에서도' 그의 취재원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위 문언의 뜻은 명확하고 그 취지 역시 명백하다. 문언의 취지는 취재원의 기밀성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위와 같은 명백한 의미를 받아들여 문언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Commonwealth v. Bowden, 838 A.2d 740 [32 Med.L.Rptr. 1257] (Pa. 2003) 판결에서, 한 기자는 취재원보호법에 근거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기자에게 제공한 공판예비절차의 진술(pre-trial statements)을 공개해달라는 Commonwealth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Bowden 판결에서 법원은 Hatchard 판결 및 Sprague 판결의 해석과 같이 문서(documents)도 취재원보호법상 보호되는 취재원(sources)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오직 그 문서의 제시로 인하여 정보제공자(a human source)의 익명성이 침해되고 그 결과 정보제공자가 언론매체에 자유롭게 정보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 하에서 Taylor 판결을 해석하였다. 위 사건의 경우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고 위 공판예비절차의 진술 역시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위 기자는 취재원보호법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가 기자에게 제공한 진술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11]

[1] 물론 위 사안의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owden 판결이 언급한 것처럼, 취재원보호법에 대한 Taylor 판결의 해석은 이 상고심의 판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취재원보호법상의 취재원(source)의 범위와 같이 취재원보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문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취재원보호법의 원문은 법이 취재원을 신원 공개로부터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취재원보호법에 관한 우리 법원의 선례들은 일관되게 위 법률이 취재원을 그 신원의 공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취재원보호법에 위 법률이 보호하는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명백한 문구와 모순되는 예외를 덧붙일 수는 없다. 취재원보호법은 1937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고, 그 중 2차례의 개정은 이 법원이

11) 그 정보제공자의 정체 및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이 위 Bowden 사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원은 미연방 대법원의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1 Med.L.Rptr. 2617] (1972) 판결에서 유래한 기자의 특권(reporter's privilege)을 적용하였다. 위 Bowden 판결에서 이 법원은, 비록 위 Branzburg 판결이 기자에게 대배심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미연방 수정헌법상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연방의 제3고등순회법원은 위 Branzburg 사건의 대법관 다수가 기자의 특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기자의 특권에 관한 제3순회법원의 Bowden 판결을 검토한 후, 이 법원은 제3순회법원의 United States v. Criden, 633 F.2d 346, 358-59 [6 Med.L.Rptr. 1993] (3d Cir. 1980) 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자의 특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3단계 심사를 적용하였다. 위 심사에 따르면, 기자의 특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 다른 곳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다 했고, (2) 그 정보는 오직 기자와 그 취재원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며, (3) 그 정보가 당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McMenamin v. Tartaglione, 590 A.2d 802, 811, aff'd, 590 A.2d 753 (Pa. 1991) 판결에서 위 법원은, 신문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기 위하여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또한 취재원보호법상의 기자의 특권은 기자와 익명의 취재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구별된다고 판시하였다.

Taylor 판결을 통하여 법률의 조문을 해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만약 주의회가 법원의 위와 같은 법률 해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취재원보호법에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였다면, 아주 쉽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이 어떤 법률상의 용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한 경우, 주의회가 그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후속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용어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해석을 의도한다). 취재원보호법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는 않은 하나의 예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자가 심사숙고하여 법률의 조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다른 예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비록 항소법원이 Hatchard 판결의 Taylor 판결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취재원보호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Hatchard 판결의 해석은 사실상 단지 위 취재원보호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속력이 없는 연방법률이나 다른 주의 법률이 종종 참고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취재원보호법은 취재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권에서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이 상고심에서 별다른 가치를 갖지 못한다. 상고인들에 의하여 언급된 판결들에서, 연방법원과 다른 주의 법원들은 그들의 고유하고 독특한 취재원보호법 또는 Judith Miller 판결과 같이 고유한 기자의 특권을 각 해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Pennsylvania 주 취재원보호법의 명확한 법조문만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 게다가 설사 다른 관할법원의 판례법이 이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인들은 취재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관할구역 내의 법원에서 그 취재원보호법의 해석상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상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재원보호법을 다른 증거법상의 특권들과 비교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는 취재원보호법이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을 비롯하여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떠한 다른 특권과도 동질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은 이와 대조적으로, 취재원보호법과 같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 각 특권 내지 보호는 그 고유의 독특한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취재원보호법은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반면,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은 변호사에게 그의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에 관한 증언적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을 보다 잘 변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Nadler 판결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을 남용함으로써 범죄 또는 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특권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취재원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와 유사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기한 특권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 반면, 취재원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언론매체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사실 취재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일반적인 증거법상의 특권 이론에 따라 구성하면, 언론매체가 보호를 받는 법익향유자(holder)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취재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일반대중이라고 판단된다.

대배심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만 취재원보호법에도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1심법원의 한정적인 해석도 정책적으로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법률

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배심법(the Grand Jury Act) 제4549조에는 대배심절차의 기밀을 유지하겠다고 선서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법정모독죄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배심절차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판시가 있다:

"그 이유는, (1)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2) 배심원단이 그 평의과정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또는 그의 친구들이 배심원단에게 청탁하는 것을 방지하며, (3) 대배심절차 또는 그 후 대배심의 기소에 따른 공판절차에 출두하여 증언할 증인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4)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5) 혐의 없음이 밝혀진 무고한 피고소인을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개나 유죄판결의 가망이 없는 재판절차에의 회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Mazzoni 판사는 취재원보호법과 대배심법의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한 다음, 취재원보호법은 대배심제도의 기밀유지를 통한 공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심법원은 위와 같은 균형을 깨고 취재원보호법에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언론매체에게 대배심절차의 기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는 대배심절차의 기밀유지에 관한 1심법원의 관점을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취재원보호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위 법률의 문언상 허용될 수 없다. 우선, 위와 같은 두 개의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법률상의 이익들을 조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의 문제이다. 더구나 언론매체의 필수적인 기능을 억압하는 것이 반드시 대배심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직 대배심절차의 관계자들만이 기밀유지 선서에 구속되고, 대배심절차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는 그에 관한 법관들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의무일 뿐이다. 상고인들이 주장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정보교류(criminal communication)'에 관하여도, 오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자만이 대배심절차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누설자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뿐 청취자가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상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상고인들이 명예훼손적인 정보에 따른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고인들이 정말로 범죄에 해당하는 정보교류에 있어 정보를 청취한 당사자였다고 하더라도, 대배심법을 위반한 것은 누설자의 발설행위이지 청취자의 경청행위는 아니다. 물론, 언론매체는 그들의 법률상 권리의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는 그 정보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불문하고 이를 보도할 권리를 가진다. 1심법원에 의하여 채용된 취재원보호법의 예외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언론매체의 보도를 위축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재원의 공개로부터 기자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를 숨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취재원보호법은 그러한 보호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Taylor 판결과도 상충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대배심법 위반의 범죄라고 주장되는 행위는 취재원보호법과 결부되지 않은 채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조사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피상고인 Henn의 대배심절차의 기밀누설의 혐의가 제기됨에 따라, 주 전체의 대배심원단 및 위 카운티의 대배심원단의 감독판사들은 위 기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들을 임명하였다. 특별검사들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감독판사들은 각 대배심원단에 기밀누설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비록 위 보고서가 관할구역 내의 검사 사무실과 법무부 장관 사무실

직원들의 범죄행위 여부만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12] 따라서 주 전체의 특별검사들의 조사결과도 위 기밀누설의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였고, 상고인들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명백하게도 Todd 판사(현 대법관)가 아래와 같은 보충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안은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대배심절차의 기밀유지라는 공익은 간접적으로만 주장될 수 있을 뿐이다.[13]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대배심제도의 완전성 회복이 아닌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론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라는 공익은 대배심절차의 기밀유지라는 공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14]

McCaffery 대법관은 반대의견으로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가지는 명예권의 보호라는 헌법상 권리가 취재원보호법상의 보호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위 반대의견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그 주장의 익명의 취재원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가능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colorable showing)만 하면, 위 소송의 피고인 언론이 그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 반대의견은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닌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가정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반대의견은 Garb 판사의 위 판단은 그 신문기사가 사실은 어떠한 취재원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러나 Garb 판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어떠한 특정한 판단도 한 바가 없다. 비록 Garb 판사가 그 신문기사의 내용이 상고인들이 대배심절차에서 실제 한 행동들과 불일치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그 기사의 취재원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허구임을 시사한 바는 없다.

더욱이 반대의견의 법률적 판단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법률적 논쟁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상고인들은 취재원보호법에 범죄-사기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정보교류가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할 만한 입증(prima facie showing)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상고인들이 취재원이 허위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위 반대의견이 제시한 허위의 취재원의 예외(fictional source exception)에 관한 주장을 한 바는 없다. 그 대신 상고인들은 만약 취재원이 허구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피상고인들이 계속하여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한다면 그 역시 법원에 대한 계속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범죄-사기의 예외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인들의 범죄-사기의 예외에 관한 주장의 기본 전제는 익명의 정보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가 범죄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정보교류에 실제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위 반대의견은 만약 어떤 정보의 취재원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

12) 대배심절차의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하여, Henn은 취재원보호법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위 카운티 특별검사의 질문에 따라 자발적으로 특별검사에게 취재원의 신원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13) 우리의 판단이 모든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익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개인의 명예에 관한 기본권은 Pennsylvania 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Hatchard 판결에서 취재원보호법의 해석을 구체화함으로써, 공개를 강제할 이익과 취재원보호법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이미 깨어졌다.

14) 만약 기자가 대배심의 범죄 수사절차에 관한 취재원의 기밀누설행위에 관련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취재원보호법과 대배심의 수사절차의 기밀유지 규정은 보다 직접적으로 상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이로써 우리가 취재원보호법의 절대적인 규정의 적용을 그에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제한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는 한에 있어서는, Sprague 판결과 Hatchard 판결의 견해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건들과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어떤 당사자도 우리의 선례를 파기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선례구속성의 원칙(stare decisis)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고려도 한 바 없다. 위 반대의견의 관점이 어떠한 사안에서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 취재원보호법이 취재원의 정체나 그 정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위 취재원보호법은 이 사건에서 발령된 바로 그러한 유형의 공개명령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위 취재원보호법을 시행함에 있어 범죄-사기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The Scranton Times-Tribune의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McCAFFERY 대법관, 반대의견.

본인은 다수의견이 명예의 보호라는 이 공화국 시민들의 기본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정중하게 반대한다. Pennsylvania 주 헌법은 천부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로서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를 인정한다. 우리 헌법은 또한 그 명예권이 침해된 각 개인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15] 본인 생각에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에 근거하여 상고인들에게 인정된 명예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 구제가 취재원보호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인은 이 사건의 특유한 사정으로 인하여 1심법원의 위 공개명령은 상고인들이 행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공개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법원의 Hatchard v. Westinghouse Broadcasting, 532 A.2d 346 [14 Med.L.Rptr. 2000] (Pa. 1987) 판결의 다수의견이 상고인들의 법적절차에 따라 명예권을 보호받을 천부적이고 불가침의 권리와 피상고인들의 취재원보호법에 따른 법률상 특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위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반대로 본인은 이 사안과 같이 명예훼손소송에서 공인(public figure)인 원고가 익명의 취재원이라고 주장되는 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가능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colorable showing)을 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재원의 정체에 대한 공개명령을 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16]

익명의 취재원이 대부분 내지 완전히 허구라는 상고인들의 의혹은 대배심절차에 관한 피상고인들의 묘사가 실제 이루어진 대배심절차의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15)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는 다른 헌법규정들에 의하여 박탈될 수 있는 권리(second-class right)가 아니다. Norton v. Glenn, 860 A.2d. 48, 58 [32 Med.L.Rptr. 2409] (Pa. 2004) 판결 참조.

16) Carlacci v. Mazaleski, 798 A.2d 186, 190, n. 9 (Pa. 2002) 판결에서, 이 법원은 소송기록 말소를 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ubi jus, ibi remedium)"이라는 법격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증거개시 절차에 관한 1심법원의 천부적인 권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필연적으로 상고인들에 대한 공개에 앞서 법원에서 비공개 심리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1심법원으로서는, 취재원의 부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colorable showing)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고인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않는다는 Garb 판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특히 Garb 판사는 대배심절차에서의 상고인들의 태도에 관한 피상고인들의 보도가 상고인들이 (1) 답변을 회피하지 않았고, (2) 비협조적이지도 않았으며, (3) 대배심의 조사절차를 방해하지 않았고, (4) 그들의 행위로 대배심원단들을 분노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5) 대배심원단으로 하여금 상고인들을 법정 밖으로 쫓아내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였다. Garb 판사의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피상고인들에 의해 보도된 명예훼손적인 기사 부분은 어떠한 정보원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고인들에게 피상고인들이 실제로 어떤 취재원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적인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요컨대, 본인은 이 법원의 Sprague v. Walter, 543 A.2d 1078, 1085 [15 Med.L.Rptr. 1625] (Pa. 1988) 판결의 결론에 반대하고, 어떠한 정보이든 정보원의 정체가 밝혀져 있는 한 그 정보의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Hatchard 판결의 결론 또한 수긍할 수 없다. 대신에 본인은 공인(public figure)에 해당하는 원고가 익명의 취재원이라고 주장되는 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가능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을 하였다면, 원고에게 그 취재원에 대한 공개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원고의 명예 보호라는 헌법적 이익은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자의 비밀유지의 법률상 이익보다 우선한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본인의 견해와 배치되기 때문에, 본인은 정중히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 Vol.36, No.45, pp.2460~2472
번 역 : 진 상 훈 (춘천지방법원 판사)

일본판결

지난 범죄 사건을 다시 보도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테러 등의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의 사회적 평가는 법적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하 「제1심 원고」라 한다) : 甲野太郎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하 「제1심 피고」라 한다) :
  ① (주)요미우리신문 도쿄 본사, 동 대표이사 상鼻卓雄
  ② (주)요미우리신문 오사카 본사, 동 대표이사 老川祥一
  ③ (주)요미우리신문 세이부(西部) 본사, 동 대표이사 小島 敦
- 대상사건 : 도쿄고법 2007(ネ) 제1004호
- 사 건 명 : 사죄광고 등 청구 항소사건
- 연월일등 : 2007. 6. 28 민사 제10부 판결
- 재판내용 : 취소, 자판(自判) · 상고
- 변론종결 : 2007년 4월 24일
- 원 심 : 도쿄지법 2004(ワ) 제27150호
- 참조조문 : 민법 719조 · 719조 · 723조

주 문

1. 원판결 중 제1심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원고의 전항의 부분에 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 원고의 본건항소 및 당심(當審)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제1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제1 항소의 취지

1. 제1심 원고

(1) 원판결 중 제1심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피고 요미우리 도쿄 본사, 오사카 본사, 세이부(西部) 본사는 각각 제1심 원고에 대해 515만 엔 및 이에 대한 2002년 1월 28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3) (주위적청구 · 主位的請求) 제1심 피고 요미우리 도쿄 본사는 금후 발행하는 요미우리 축쇄판부터 원판결 별지1 기재의 기사를 삭제하라.

(예비적청구) 제1심 피고 요미우리 도쿄 본사는 금후 발행하는 요미우리 축쇄판에 원판결 별지1 기재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 동 기사가 사실에 반하며, 제1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기(註記)할 것.

⑷ 제1심 피고들은 제1심 원고에 대해 제1심 피고들이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 조간 1면에 원판결 별지2 기재의 사죄광고를 게재하되, 제목을 15포인트 고딕, 그 밖의 부분을 10포인트 명조체의 각 활자로 할 것.

⑸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제1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⑹ 가집행선언

2. 제1심 피고들

⑴ 원판결 중 제1심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⑵ 제1심 원고의 전항의 부분에 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⑶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제1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 사안의 개요

1. 본건 사안의 개요는, 원판결의 「사실 및 이유」 제2의 모두(冒頭)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원심은, 제1심 피고들이 발행하는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원판결 별지1 기재의 기사에 의해 제1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제1심 피고 각각에게 35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인정하는 한도에서 제1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다른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특히 제1심 원고는 당심(當審)에서 상기 예비적청구를 추가했다.

2. 전제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쟁점 및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한편 원판결의 「사실 및 이유」제2의1 내지 3에 기재한 대로 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상기 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

설령 금후 발행하는 요미우리 축쇄판에서 원판결 별지1 기재 기사의 삭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기 예비적청구에서와 같이 주기(註記)를 하는 것은 제1심 피고에게 과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용이하게 인용할 수가 있다.

제3 판단

1. 본건사실관계

전제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증거, 변론의 전 취지 및 공지의 사실에 의하면 이하의 본 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⑴ 당사자

(가) 제1심 원고

제1심 원고는 국제테러조직인 일본적군의 최고 간부이며, 1972년 4월 레바논 베이루트로 출국, 아랍적군(후의 일본적군)에 참가했으며 파레스티나 게릴라 등과 함께 두바이 사건 및 다카 사건을 감행한 혐의로 국제수배 중이던 1987년 11월 도쿄에서 체포되어 1995년 12월 도쿄지법에서 항공기의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권법 위반 등의 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인 수형자이다.

(나) 제1심 피고들

제1심 피고들은 발행부수 약 1,000만 부에 이르는 일본 유수의 보도기관인 요미우리신문이다.

⑵ 와까오지(若王子)사건

若王子一郎 미쯔이(三井)물산 마닐라 지점장(이하 「若王子지점장」으로 한다)은 1994년 11월 15일 필리핀 마닐라 시 교외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유괴, 감금되었다가 미쯔이물산으로부터 범인 측에 고액의 몸값 대금이 지불된 후 1995년3월31일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若王子 사건」이라고 한다.

⑶ 일본적군에 의한 테러사건과 제1심 원고의 형사사건

(가) 일본적군에 의한 주요 테러사건은 ①텔아비브 ·

롯드공항사건(1972년 5월 30일 · 승객 등 살상) ②암스테르담 상공 일본항공기 납치사건(1973년 7월 20일) ③주 헤이그 프랑스대사관 점거사건(1974년 9월 13일) ④주 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 점거사건(1975년 8월 4일) ⑤인도 봄베이 상공 일본항공기 납치사건(1977년 9월 28일) 등이다.

(나) 제1심 원고의 형사사건은 두바이 사건 및 다카 사건 등 2건의 항공기 납치사건 실행정범, 여권법 위반 등으로, 1995년 12월 7일 도쿄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후 항소, 상고까지 했으나 2000년 4월 동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4) 본 건 기사까지의 신문보도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및 마이니치신문은, 1988년 9월 9일의 조간에서 일제히 제1심 원고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若王子 사건 때 범인 측으로부터 매스컴에 우송된 협박장이나 테이프의 투함지(投函地)와 제1심 원고의 체재지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적군이 若王子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경찰청 등 공안 당국의 견해를 보도하고, 동일 석간, 다음날 10일의 조 · 석간에도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이하 1988년 9월 9일 각 조간신문의 기사 이후 2002년 1월 27일 요미우리신문 조간의 본 건 기사까지의 사이, 위 3개 신문에 게재된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다고 한 전기 각 기사를 합쳐서 「본 건 기보(旣報)기사」로 한다.)

(5) 본 건 기사

(가) 연재기사 「안전 붕괴(meltdown)」

구 요미우리 신문사들은 9 · 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위기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테러사건들을 재검증하는 「안전붕괴」이라는 제목의 연재기사(이하 「본 건 연재기사」로 한다)를 2002년 1월부터 요미우리신문에 연재하기로 했다.

본 건 연재기사의 제1부 「테러와의 공방」은 11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제1회는 「나리다(成田)발 환상의 테러계획」, 제2회는「자금세탁 일본도 무대」, 제3회는 「바이오테러 대응 후수(後手)」,제4회는「유괴와 싸우는 교섭인들」, 제5회는「격렬 사이버전쟁」, 제6회는 「핵물질 사용의 공포」, 제7회는「마약 밀매에 활로」, 제8회는 「하루 600달러 북한에서 기술지도」, 제9회는「공작선, 쉽게 일본에」, 제10회는「스탠드지붕에 저격수」, 제11회는「마치 악의 벌떼군단」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나) 본 건 기사의 내용 (본 건 기사는 다음과 같은 ①~④기사로 구성된다)

도쿄판에 의하면 ①기사는 「경시청의 수사관이 홍콩의 금융가에 잠입한 것은 1987년 말. 임무는 若王子一郎(89년 2월 사망) 미쯔이물산 마닐라 지점장의 유괴사건으로 범인그룹이 손에 넣은 몸값 대금의 추적이었다. 그 일부인 50만 달러가 홍콩의 암시장 금융업자에게 건네졌다는 신뢰도가 높은 정보가 있었다. 이면(裏面)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업자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것은 일본적군 최고 간부인 甲野太郎 수형자(受刑者 · 51)라고 한다. 그는 그 해 11월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일본에 되돌아와 바로 체포되었었다. 수사관은 홍콩경찰과 함께 업자를 조사했으나 끝내 입을 열게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어 유괴된 사실, 범인과의 교섭을 영국의 위기관리회사에 의뢰한 사실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사화하고 있다.

②기사는 「결정적인 것은 甲野수형자가 체포될 당시 갖고 있던 대량의 복사된 항공권과 10달러 지폐였다. 그는 레바논의 베카고원에 갔을 때 정산을 하기 위해 항공권을 복사하고 있었다. "그것들을 추적했더니 그는 방콕을 거점으로 마닐라, 홍콩, 싱가포르 등을 전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베이징과 북한에까지도 발을 뻗치고 있었다"고 수사간부는 말했다.」는 내용이다.

③기사는 「중지(中指)가 잘린 손 모양이 들어있는 봉투는, 홍콩에서 일본의 매스컴에 보내졌다. 그 날 甲野 수형자는 봉투가 투함된 우체국 근처의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다. 그의 소지품에서는 호텔의 메모용지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④기사는 「그가 갖고 있던 수십 매의 10달러 지폐를 조사해보니 영국위기관리회사인 리숙스사가 준비해 두고 있던 몸값 대금의 지폐번호와 일치했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도쿄판과는 달리 오사카판과 세이부(西部)판에서는 제목과 기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도쿄판과 동일하다.

(다) 본 건 기사의 취재

(ㄱ) 취재의 개시 및 대상

본 건 기사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경부터 취재가 개시되어 경찰 관계자, 대사관 관계자, 미쯔이물산 관계자, 필리핀 수사당국 관계자 등으로부터 취재를 했다. 제1심 원고에 대해서는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았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1) 본 건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유의 보호와 보도의 대상이 된 자의 명예의 보호를 비교고량(考量)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 때 보도의 목적, 내용, 기술(記述) 등 보도에 관한 요소, 일반 독자의 읽기, 지식, 경험 등 독자 측의 요소, 보도의 대상이 된 자의 속성, 사회적 평가 등 대상자 측의 요소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이러한 고려요소를 근거로 본 건 사건관계의 쟁점에 대해 판단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 건 기사의 명예훼손성)

어떤 신문기사의 의미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사에 대한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일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의 문맥, 기사의 공표 당시에 일반 독자가 지녔던 지식 또는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인상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1988년 9월 9일 이후 2002년 1월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본 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의 사이에,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赤軍)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본 건 기보(旣報)기사가 요미우리(讀賣)신문 뿐 아니라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에도 게재되었다는 사실 ▲본 건 기보기사는 그 가운데 상기와 같이 관여를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도 있는가 하면 단정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어느 것이든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若王子 사건의 실행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본 건 기보기사는 사건발생 이후의 이른바 사건보도의 범주에 포함되며, 사건의 내용, 상황 등을 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본 건 기보기사 이후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찰당국의 발표나 보도, 그 밖의 사실의 공표가 없었고, 두바이 사건, 다카 사건 등의 형사공판기일에서 있은 제1심 원고의 전기의견진술만이 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본 건 연재기사는 미국에서의 9 · 11 테러사건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9 · 11 후의 세계 테러조직의 실태, 활동상황 등에 관해 과거의 테러사건 등을 재검증하여 보도한 것으로, 이른바 조사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어 독자에 대해 테러의 위험성과 대책, 교훈 등을 전달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기획의도를 가진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사실 ▲본 건 기사는 본 건 제4회 기사의 사이드기사로, 若王子 사건을 중심에 놓고 이 사건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음을 주요사실로 보도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①~④기사가 기재되었다는 사실 ▲이에 의해 일반 독자는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어

떠한 형태로든 관여했으며, 그 입증으로 若王子 사건의 범행그룹이 일본 매스컴에 우송한 협박장 등의 투함(投函) 및 미쯔이물산이 범행그룹에 지불한 몸값 대금의 자금세탁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 ▲제1심 원고는 일본적군의 최고 간부로서 일본적군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다수의 테러사건 중 두바이 사건 및 다카 사건에 다른 일본적군의 구성원, 파레스티나 게릴라 등과 함께 실행정범으로 관여하여 특히 다카 사건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이며, 이로 인해 기소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라는 사실 ▲제1심 원고는 상기 기소후인 1988년 9월 9일 이후 若王子 사건에 관여했었다는 본 건 기보기사의 대상이 된 자라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건 기사는 일본적군의 최고 간부인 제1심 원고가 흉악비도(非道)한 若王子 사건에 실행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여했다는 것을 보도한 것으로, 가령 관여했다고 보도된 자가 시정(市井)의 일반시민이면 그 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원고는 국제테러조직인 일본적군의 최고 간부로서 일본적군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테러사건 중 두바이 사건 및 다카 사건에 실행정범으로 관여했으며, 특히 다카 사건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자로 시정의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제1심 원고에 대해서는 상기 테러사건에의 관여 및 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판결의 존재와 집행에 의해 그 사회적 평가는 이미 저하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더해 본 건 기보기사에 의해 이미 若王子 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여했던 자라는 것이 널리 보도되어 일반 독자들이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된 자 이므로, 본 건 기보기사로부터 상당한 연수가 지나 보도된 본 건 기사 및 이를 구성하는 ① 내지 ④기사에 의해 제1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시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보호의 가치가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는 인정될 수 없다.

부언하면, ① 내지 ④기사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나, 이 기사들을 읽는 데 있어서는 분단(分斷)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若王子 사건과 제1심 원고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징빙적(徵憑的)사실로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맥으로서, 즉 본 건 기사는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가 관여했다는 사실의 적시를 형성한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본 건 기사 전체를 보고 제1심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유무, 정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① 내지 ④기사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1심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제1심 원고는 진술(갑4)에서 1987년 체포된 이래 1991년까지 접견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사히신문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고 본 건 기보기사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는 사회로부터의 객관적 가치이므로 당해인의 자인(自認) 등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심 원고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이상에 의하면, 본 건 기사는 제1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이로 인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쟁점(2) 및 (3)에 대하여 (본 건 기사의 진실성 및 상당성)

다음에는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른 요건의 존부(存否)에 대해서도 이하 판단한다.

(가)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 건 연재기사는 9 ·

11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테러사건 등을 재검증하면서 9 · 11후의 국제테러조직의 실태, 활동상황 등을 보도한 것으로, 독자에 대해 테러의 위험성과 교훈 등을 전달, 이해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기획의도를 가진 시의적절한 보도이다. 본 건 제4회 기사는 본 건 연재기사의 일환으로 요미우리신문 사회면 두 쪽에 나뉘어 게재되어 테러범죄 유형의 하나인 유괴사건 중 일본인이 표적이 되었던 과거 4건의 유괴사건을 집어내어 그 중에서 피해자 측에 서서 싸우는 유괴교섭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사이다. 또한 본 건 기사는 본 건 제4회기사의 사이드 기사로서 若王子 사건을 중심에 놓고, 여기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한 것을 주요사실로 보도한 것 등이 인정되어, 이들 본 건 기사를 포함한 본 건 연재기사의 기획의도, 내용 등으로 보아 본 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음이 인정되므로, 당해기사가 적시한 중요한 사실의 진실이 증명되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그것이 진실이라고 증명되지 않더라도 당해 기사가 적시한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되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본 건 기사 및 이를 구성하는 ① 내지 ④기사의 게재 장소, 체재, 내용 등은 전기와 같은 바, 이들 기사는 그 문맥상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가 관여했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있어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을 증명할 대상이 될 중요한 사실이란 ① 내지 ④기사 각각에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들 기사에 의해 일반 독자에게 상기와 같은 인상을 주는 사실, 즉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가 관여했다는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심 원고가 1987년 11월 21일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체포되었을 때 대량의 달러 화폐와 항공권의 사본 등을 소지한 사실 ▲달러 지폐번호가 若王子 사건에서 미쯔이(三井)물산이 범인 측에 지불한 화폐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 제1심 원고는 일본적군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두바이 사건, 다카 사건 등과 관련 무기징역판결이 확정된 사실 ▲경찰청이 경찰백서에서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도한 본 건 기보기사가 있다는 사실 ▲본 건 기사가 경찰 관계자, 대사관 관계자, 미쯔이물산 관계자, 필리핀 수사관계자 등에 대한 본 건 연재기사 취재반의 취재에 근거하여 집필되었다는 사실 ▲원심에서 제1심 원고로부터 제출된 압수품목록 교부서에 대해 취재기자가 경찰당국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 및 일본적군이 관여했음이 재확인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가 관여했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로 적시한 본 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음, 본 건 기사를 구성하는 ① 내지 ④기사를 검토한다. 본 건 기사와 이를 구성하는 ① 내지 ④기사의 문맥상의 구조는 전기와 같으며, ① 내지 ④기사에 의해 적시된 사실은, 본 건 기사가 적시한 중요한 사실인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가 관여한 사실의 간접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기사는, 若王子 사건에서의 인질 몸값 대금의 추적에 관한 경시청의 수사상황을 보도하면서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람이 제1심 원고라는 소문을 보도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실성 및 상당성의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②기사는, 제1심 원고의 체포 당시 소지품으로 대량의 복사된 항공권과 달러 지폐가 있었으며, 이 항공권

을 통해 제1심 원고를 추적할 수 있었다는 수사관의 말을 보도한 내용이다. 그 가운데 제1심 원고의 도항(渡航) 목적지로 북한을 지목한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으나, 북한은 제1심 원고의 도항 목적지의 예시(例示)의 하나에 불과하며, 이것을 제외하고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②기사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성 및 상당성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③기사는, 홍콩 소인(消印)의 협박장 등이 일본의 매스컴에 송달되었는데, 이 우편물이 투함된 우체국 근처의 호텔에 제1심 원고가 숙박하고 있었다는 사실, 제1심 원고의 소지품에서 이 호텔의 메모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등을 보도한 내용이나 이러한 사실들을 직접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홍콩 소인으로 협박장 등이 일본의 매스컴에 배달된 것은 1987년 1월 15일과 동월 30일이며, 한편 제1심 원고는 동월 8일부터 동월 15일까지, 동월 28일부터 동월 29일까지 홍콩에 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제1심 원고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다수의 소지품 중에 홍콩의 호텔 메모용지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심 원고는 봉투가 투함된 당시와 같은 시기에 홍콩의 어떤 호텔이든 숙박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점에 대해 제1심 원고도 진술서를 통해 상기 우체국이 위치한 홍콩섬의 호텔에 숙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홍콩의 다른 지구의 호텔에 숙박한 것 까지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호텔의 소재지와 동 호텔의 메모용지의 점에서 ③기사가 적시하는 사실과 증명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거론할 것까지도 없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한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③기사에 대해서는 진실성 및 상당성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④기사는 한 문장으로 된 짧은 것으로, 제1심 원고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수십 매의 10달러 지폐를 조사했더니 미쯔이물산이 의뢰한 영국의 위기관리회사 컨트롤 · 리숙스사가 기록해 둔 인질몸값 대금의 지폐번호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심 원고는 체포 당시 다수의 물품을 소지했는데 갖고 있던 미화 17,098달러 중에는 2매의 10달러 지폐가 있었음이 원심에서 제출된 압수품목록 교부서에 의해 판명된 사실 ▲若王子 사건 당시 미쯔이물산은 영국의 위기관리회사 컨트롤 · 리숙스에 범인 측과의 교섭을 위한 조언을 의뢰, 리숙사의 지시와 조언을 받아 몸값 대금의 삭감교섭을 했고, 또 범인 측에 몸값 대금을 주기 전에 넘겨준 10달러 지폐의 번호를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 ▲2001년 12월 9일 하야마(葉山) 기자가 미쯔이물산의 에시리(江尻) 전 사장으로부터 「경찰 관계자로부터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된 일본적군 소속원이 인질몸값 대금으로 넘겨준 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모리다(森田) 기자가 동월 19일 若王子 사건 당시 주 마니라 일본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서기관으로부터 미쯔이물산의 몸값 대금 교섭경위를 듣는 한편 제1심 원고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10달러 지폐의 번호가 몸값 대금의 일부와 합치된다는 것을 경찰청 전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 ▲동월 26일 모리다 기자가 전 서기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경찰청 전 간부를 통해 확인했다는 사실 ▲모리다 기자가 경찰청에 재차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제1심 원고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달러화폐 중 소액지폐(1달러 및 5달러)를 제외한 태반의 지폐가 몸값 대금으로 넘겨진 지폐의 번호와 같다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원고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10달러 지폐는 2매라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 증명사실은 ④기사와는 10달러 지폐의 매수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미쯔이물산이 영국의 위기관리회사 컨트롤 · 리숙스사에 범인 측과의 교섭 조언을

의뢰한 사실은 증명이 있으며, 이 증명사실은 ④기사와 합치한다. 또한 제1심 원고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10달러 지폐 번호와 몸값 대금으로 넘겨진 일부 지폐의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10달러 지폐의 매수(枚數)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리다기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10달러 지폐의 매수 면에서 ④기사의 적시사실과 증명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거론할 것 까지도 없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을 따르는 한 상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③기사에 대해서는 진실성 및 상당성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⑷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본 건 기사는 제1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본 건 기사 및 이를 구성하는 ① 내지 ④기사에 의해 적시된 중요한 사실인 若王子 사건에 제1심 원고가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실성 및 상당성의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 까지도 없이 제1심 원고의 본 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며 인정할 수가 없다.

3. 따라서 제1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제1심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함께 제1심 원고의 동 부분에 관련된 청구, 본건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 처 : 『판례타임즈』1279호 PP. 273~283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떡값 검사' 실명 공개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조한창 판사는 9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대표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녹취록의 내용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그 동안 충실하게 공무를 수행했던 점을 감안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표는 2007년 5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이른바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며 전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2009년 2월 9일

'독립군 토벌한 박정희' 역사서 명예훼손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원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유 모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4년 조선족 작가 류연산 씨가 쓴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 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에는 박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한 뒤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 씨는 2005년 이 책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의 경우 망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9년 2월 8일

"한겨레, 李대통령에 3,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경준 씨가 비밀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겨레는 계약서 내용이 김 씨 주장과 같다는 전제로 의견을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약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 · LKe뱅크 · e뱅크증권 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 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광운대 강연 등을 통해 4차례 이상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공언했음에도 같을 주장을 한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서 전화를 거는 등 구태가 재연된 사실에 주목하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년 2월 6일

대법원, 신문 제목의 융통성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2004년 총선시민연대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4년 9월 '정부가 565개 비정부기구(NGO)에 41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보조금 상당액이 200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했던 단체들에 지원됐다'는 내용으로 5개의 기사와 사설 한 개를 보도했다.

이에 총선시민연대를 포함한 19개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가 마치 정부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선시민연대에 5억 원을, 나머지 18개 단체에 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4개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며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다만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 운동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총선시민연대에 1,500만원을, 나머지 단체에 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한 기사의 본문을 보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과 '이들 단체가 낙선운동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이 구분돼 있고 이들 단체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 의견을 표시한 정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에서는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을 근거로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서,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했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문사가 기사의 제목을 달 때 다소간의 재량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이는 것"이라며,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아니면 제목과 본문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전체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문기사 제목의 특수성을 인정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의미 있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9년 2월 5일

나경원 의원 '애첩' 비유 박사모 회장에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애첩' '관기' 등에 빗대어 비난했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가 벌금형으로 기소된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씨는 나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전파성이 강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기혼 여성인 나 의원을 상대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써 비방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의원이 총리로 기용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소문에 대해 "박 의원이 어떤 '딜(deal·거래)'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 줘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정 씨는 나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나 의원을 '애첩', '관기'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동아일보 2009년 2월 2일

언론법제관련문헌

- 강명현(2008). 독립민영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다매체 경쟁 환경 하에서의 독립민영방송의 사회적 역할' 세미나 발제문**. 2008. 12. 19.
- 강승규(2009). digital convergence 시대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디어 발전법.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 포럼 주최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9. 2. 10.
- 김상훈(2009. 1월). 방송광고 심의제도 점검. **신문과 방송**, 통권 457, 116-119.
- 김성해(2008. 12월). 대외경제정책과 뉴스미디어, 한국언론재단.
- 김영욱(2009. 2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 **신문과 방송**, 통권 458, 30-35.
- 김영주(2009. 1월). 2009년 달라지는 미디어 관련법. **신문과 방송**, 통권 457, 112-115.
- 김지현(2009. 2월). 佛, 개정 방송법 논란 속에 공영방송 광고 부분 폐지. **해외방송정보**, 통권 732호, 67-73.
- 나은경 · 이준웅(2008. 12월). 댓글 문화 연구 : 온라인 뉴스 이용 양태의 변화와 담론 공중의 의미. 한국언론재단.
- 류신환(2009).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언론관계법 제 · 개정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발제문**. 2009. 2. 17.
- 문종대(2009). 방송규제완화와 경제적 효과분석. **제4차 미디어 공공성 포럼 발제문**. 2009. 12. 19.
- 박현수(2009).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성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9. 2. 10.
- 서명준(2008. 12월). 개인정보 유출 파문과 연방정보보호법 추진 논란. **방송문화**, 통권 327호, 64-65
- 성낙인(2009). 범죄피의자의 초상권과 언론보도의 자유. **한국언론재단 주최 '언론의 범죄피의자 언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발제문**. 2009. 2. 9.
- 송경재(2008. 12월).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세상의 빅 브라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문과 방송**, 통권 456, 74-77.
- 신태섭(2009). 언론관계법 제 · 개정과 방송 공공성의 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언론관계법 제 · 개정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발제문**. 2009.2. 17.
- 안창현(2009. 2월). 日, 북한영화 무단사용 방송사에 배상명령. **해외방송정보**, 통권 732호, 83.
- 양재규(2008. 12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3 - 기사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 살펴보기 : 기사는 저작물이다. **신문과 방송**, 통권 456, 130-133.
- 양재규(2009. 1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4 - 반론 보도 관련 법적 쟁점(1) : 반론보도는 호의가 아니라 의무다. **신문과 방송**, 통권 457, 140-143.
- 양재규(2009. 2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35 - 반론 보도 관련 법적 쟁점(2) : 반론보도는 타협의 수단이 아니다.

신문과 방송, 통권 458, 120-123.

- 윤석년(2009).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한국언론학회 주최 '방송법 개정안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발제문**. 2009. 1. 19.
- 윤석년(2009. 2월). 방송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방송문화**, 통권 329호, 48-53.
- 이범수(2009). 미디어렙 경쟁체제의 주요 쟁점과 운영방안.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성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9. 2. 10.
- 이용경(2009).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쟁점 진단.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 포럼 주최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9. 2. 10.
- 이진로(2008. 12월). 저널리즘과 산업의 위기, 법 · 제도 변화로 활로 모색. **신문과 방송**, 통권 456, 22-25.
- 이창섭(2009. 2월).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언론 자유의 한계. **신문과 방송**, 통권 458, 142-146.
- 임정수(2008. 12월). 승승장구하던 포털업계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신문과 방송**, 통권 456, 30-33.
- 전범수(2008. 12월). 방송 · 통신 융합 원년, 탈규제 · 경쟁원리 도입. **신문과 방송**, 통권 456, 26-29.
- 주정민(2009).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 **한국언론학회 주최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 세미나 발제문**. 2009. 2. 12.
- 지성우(2009).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9. 2. 5.
- 최민재(2008. 12월). 인터넷 공간의 사적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한국언론재단.
- 최민재(2008. 겨울). 연예인 자살 보도로 돌아본 자살 사망 보도의 문제와 대안. **언론중재**, 통권 109호, 90-97.
- 최진순(2009. 2월). 뉴스 저작권 성장의 관제. **신문과 방송**, 통권 458, 296-299.
- 한국언론재단(2008. 11월). 2008 해외 미디어 경영 : 미디어 기업의 생존 전략. 한국언론재단.
- 황 근(2008. 12월). 사이버 모욕죄 - 사회적 합의와 법적보완 전제한 규제는 필요하다. **신문과 방송**, 통권 456, 70-73.
- 황 근(2009).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워크숍 발제문**. 2009. 12. 2.
- 황용석(2009. 2월). 네이버 뉴스캐스트와 온라인 뉴스 시장의 변화. **신문과 방송**, 통권 458, 48-51.
- 황치성(2008. 12월). 갈등 보도의 새로운 접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도'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미디어 인사이트**, 통권 9호.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포털뉴스와 IPTV가 위원회 조정대상매체에 포함된 것이다. 또 인터넷매체에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관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조정신청방법이 '전자우편 등'에서 '전자문서 등'으로 바뀐 점 등도 눈에 띈다.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털뉴스 및 IPTV 등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 · 중재대상에 추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 · 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매체라 할 수 있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번 법 개정에서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 및 IPTV도 위원회의 조정 · 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의할 점은, 이들 새로운 매체가 조정 · 중재대상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정법은 언론의 범위를 여전히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다(법 제2조 1호). 따라서 이 조항은 포털뉴스로 대변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그 수행하는 기능 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체는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 · 교육 · 종교 목적의 홈페이지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신청사건의 특별 중재부 배정

종전 언론중재법은 기피신청사건(사건담당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중재위원을 심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중재위원만을 제외하고 기존 중재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피사건에 대한 심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재부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중재부(특별중재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법 제10조 제4항). 또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는 중재위원은 중재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스스로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에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본문 자체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 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

청구가 가능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또는 매개 중에 있는 기사이며, 이미 삭제되었거나 내려진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무상 새로운 형태의 정정보도청구가 자리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보도의 배열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할 의무 부과

종전 언론중재법에도 기사 보관의무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정도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역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8항). 그러나 전자기록 보관의무가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보관의 범위와 방법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는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지만, 자칫 보관의무를 부여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도 있는 위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특칙규정을 신설, 피해확산방지 및 일괄피해구제의 원칙을 도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 동안 위원회의 조정 · 중재절차가 다른 피해구제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기는 하였으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표시의무'는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포털사들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고, 포털의 통보가 있기만 하면 해당 언론사 역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법 제17조의2 제2항). 또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피해자가 먼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털사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3항).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유 명시한 서면 제출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다만, 언론조정중재규칙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가 마련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2조 제3항).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아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조정신청 시 보다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에 의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하자 있는 중재결정의 취소절차가 누락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중재결정취소도 가능하게 한 점도 변경된 내용이다. 또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정정보도청구의 재판방법을 본안소송에 의하도록 했다.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제도가 삭제된 점도 이번 개정법의 중요 사항이다.

정 리 : 양 재 규 조정중재팀장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9. 2. 6.
시　　행 : 2009. 8.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 라디오방송 ·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 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 보도 · 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언론 ·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 자유 · 신체 · 건강 · 명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 · 성명 · 음성 · 대화 · 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

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제6조 (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 지위 · 신분 ·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 ·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 · 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 · 부위원장 ·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 (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⑤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⑧ 제척 · 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제11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

③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절 조 정

제18조 (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

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 · 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 · 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 ·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09.2.6>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 (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 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 제35조 · 제39조 · 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9.2.6>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중재법」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제4절 소 송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민사집행법」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 · 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⑧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05헌마165 · 314 · 555 · 807, 2006헌가3(병합)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 (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 크기 · 시기 · 횟수 ·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 ·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28조 (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 ·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벌 칙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2.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부 칙 <제942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 · 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 · 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